

2014

# 북한 이해

2014

#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 I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11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14
제3절 북한의 딜레마	20

## II 북한의 정치 체제와 통치 이념

제1절 북한 정권의 역사와 정치 체제 형성	27
1. 소련의 점령 정책과 북한 정권의 수립	27
2. 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과 특징	29
제2절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35
1. 주체사상	36
2. 선군사상	40
3. 김일성-김정일주의	43
제3절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46
1.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	46
2. 노동당	51
3. 중앙 기관	63
제4절 북한의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71
1. 권력 세습의 정치 체제	71
2.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75

# III

##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	83
1.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과 목표	83
2. 북한 대외정책의 방향	84
3.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87
제2절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	89
1.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89
2. 탈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93
제3절 북한의 대외관계	98
1. 미국과의 관계	98
2. 중국과의 관계	106
3. 일본과의 관계	110
4. 러시아와의 관계	113
5.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116

# IV

## 북한의 군사 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27
1. 북한군의 형성 과정	127
2. 북한군의 성격	128
3.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129
제2절 북한군의 군사 정책과 전략	132
1. 정책 기초	132
2. 군사 전략	134
제3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38
1. 군사 조직	138
2. 군사 제도	142
제4절 북한의 군사력	147
1. 상비 전력 및 장비	147
2. 예비 전력	152
3. 핵 및 전략무기 개발	154
제5절 대외 군사 관계 및 대남 도발	159
1. 대외 군사 관계	159
2. 대남 도발	162

# V

##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제1절 북한 경제 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177
1. 경제 체제의 기본 특징	177
2. 경제 정책의 기초	183
3. 경제 계획의 수립과 추진	191
제2절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194
1. 거시적 현황과 과제	194
2. 경제 부문별 현황과 과제	200
제3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212
1. 시장의 활용과 통제	212
2. 제한적 개방	220
3.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225

# VI

## 북한의 교육과 문화

제1절 북한의 교육 제도와 학교생활	231
1.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	231
2. 교육 과정과 방법	245
3. 학교생활	252
제2절 북한의 문예정책과 실태	256
1. 문예정책	256
2. 문학예술의 실태	261
제3절 북한의 언론과 기능	272
1. 신문	273
2. 방송	276



# VII

## 북한의 사회와 주민생활

제1절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	285
1. 사회 계층	285
2. 계층 이동과 계층 구조	288
제2절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291
1. 북한 주민의 가치관	291
2. 하루 생활과 생애 과정	296
3. 조직 생활	299
4. 의식주 생활	305
5. 여가와 명절	310
제3절 북한의 종교	316
1. 종교관	316
2. 종교 실상	318
제4절 북한 주민의 일탈과 사회 통제	320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320
2. 사회 통제	326
제5절 북한의 인권	331
1.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331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336
3. 북한의 인권 문제 대응	338

## 표 Tables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37
표 2-2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56
표 2-3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57
표 3-1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103
표 3-2	6자회담 개최 현황	104
표 3-3	남북 수교현황 (2012년 12월 기준)	120
표 4-1	4대 군사노선	130
표 4-2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133
표 4-3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135
표 4-4	군 간부 양성 과정	145
표 4-5	북한 지상군의 정기 훈련 및 활동	148
표 4-6	남북 군사력 비교(2012년 1월 기준)	151
표 4-7	북한의 예비전력	153
표 4-8	북한의 미사일 제원	158
표 4-9	6·25 전쟁 초기 남북 양측의 전력 비교	165
표 4-10	6·25 전쟁으로 인한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166
표 4-11	6·25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166
표 4-12	1999년 이후 북한의 서해상 도발 주요 사례	170
표 4-13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71
표 5-1	총 공업생산액 중 소유 형태	179
표 5-2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장기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192
표 5-3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95
표 5-4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196
표 5-5	북한의 산업 구조 추이	199
표 5-6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200
표 5-7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202
표 5-8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204



표 5-9	북한의 재정 규모 추이	207
표 5-10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211
표 6-1	북한 교육 관련 법령	232
표 6-2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238
표 6-3	북한의 수재 교육 기관	244
표 6-4	북한의 소학교 교육 과정	246
표 6-5	북한의 중학교 교육 과정	247
표 7-1	북한 주민 성분 조사 사업	286
표 7-2	북한의 이념 체계와 주요 내용	292
표 7-3	북한의 주요 사회 조직	300
표 7-4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306
표 7-5	북한의 주요 명절과 기념일	313
표 7-6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과 범죄명	321

## 그림 Tables

그림 2-1	노동당 기구	61
그림 2-2	정권 기관	70
그림 4-1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	138
그림 5-1	대안의 사업 체계	183
그림 5-2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무역 추이	209
그림 5-3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213
그림 5-4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222
그림 5-5	북한이 추진 중인 14개 경제개발구	224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235
그림 6-2	북한의 학제	239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 조직도	261
그림 6-4	북한의 방송 체계	277

# I

##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제3절 북한의 딜레마

## Key Point

### 01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 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02

북한 체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령이 당과 국가 위에서 이른바 '수령의 유일한 영도' 아래 통치하는 수령 독재 체제다. 둘째는 국가와 협동 단체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계획경제 체제이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를 채택하여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셋째는 전체주의 사회로서 수령을 아버지로 여기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이한 형태의 사회주의 체제를 낳았다.

### 03

김정은의 북한도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체제의 생존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주력하면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개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 이중적 존재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 도발로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아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 상황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존재의 이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점에서 올바른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탈냉전 시대에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과 평화 및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북한 이해와 인식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 북한 이해의 시각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 주관의 인식, 편견, 감정에 따른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또는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도 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면서 공동 번영의 토대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 체제가 구축되지는 못하였지만 ‘적대적 대립 관계’에서 점차 ‘호혜의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 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협력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실체를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 환경과 북한의 현재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 예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 언론 매체는 북한 체제의 선전 도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 파악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보여 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의 눈으로 나쁘게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에 젖은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 관점으로 좋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 체제의 근본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보편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체제이다. 북한 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 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북한 체제의 특징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고, 소련군의 점령 정책은 북한 체제의 특징 형성에 직접 작용했다. 북한은 스탈린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소련의 지도 아래 1948년 단독 정권을 수립하였고,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이때 표방된 사회주의는 19세기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급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련에서 형성된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은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소련의 제도를 이식하여 일당 지배 체제, 국가소유 제도, 계획경제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회주의 제도는 북한의 역사 속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현재 자신의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20세기에 존재하던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북한만의 특수성을 띠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실시한 계획경제 제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수령 중심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방식은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성이다.

여기서는 북한 체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체제 전환과 개혁 이전의 소련 및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만의 특수한 정치·경제·사회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수령 독재 체제

북한의 정치 형태는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 체제이자 노동당이라는 1개 당에 의해 유지되는 일당 독재 체제다. 물론 1970년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 이념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시했으며,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 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 이념을 표방하게 되었고, 이후 이것은 북한식 수령 독재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고, 2009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는 주체사상 이외에 선군사상을 추가시켰다. 2012년 4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노동당의 최종 목표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각각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고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 유일의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갖춘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는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같이 강조되고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당의 유일 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 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 로동계급의 당



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 순결체로,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을 결정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sup>1)</sup>’을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 사회에서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자 ‘당의 최고 영도자’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 지위 및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 개인에게 한정된 호칭이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하고 1998년에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불렀으며, 김일성은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이 김정에게 이양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

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헌통치를 거쳐 김정일의 유일영도체제가 수립되었듯이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유헌통치를 통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 영도 체제의 수립을 시도하는 한편 대를 이은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 경제 체제의 특징은 20세기에 존재하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 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sup>2</sup>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말하며,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sup>3</sup>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생활비)이나 노동의 질 및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자세하게는 근로소득,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소유물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 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이며, 유일한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부문의 의사결정 권한과 그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 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은 20세기에 존재하던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 경제의 중앙집권화가 월등하게 높았다. 모든 세부 항목들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주의 체제나 1950~1960년대의 중국도 북한처럼 중앙집권화가 심하지는 않았다.

북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계획 집행의 감독을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sup>4</sup> 원칙을 강조한 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 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 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 기관이 국가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 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 작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난과 대기

근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장마당과 암시장 등)에 기대어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 이후 북한식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에 시장경제 성격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사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족 단위 영농이 가능하도록 ‘포전담당책임제(圃田擔當責任制)’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 전매제(專賣制) 도입 이후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의 지속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 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 개혁도 시장 활동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 조치였다. 2010년에도 시장 통제뿐만 아니라 계획경제 강화에 계속 주력했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통제 조치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빈곤 확대와 불만 야기를 초래했다.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을 묵인하면서 통제를 완화해 왔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장례 기간 직후부터 다시 외화사용 통제 등을 가하기도 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중앙으로 흡수하기 위해 외화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

###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북한 사회의 특징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체제이자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sup>5)</sup>’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이한 형태의 사회 체제를 낳았으며, 수령 숭배와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북한에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이상적 인간은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서 개인의 목표 가치보다 집단의 목표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공산주의식 인간이다.

북한에는 개념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혈육으로 구성되는 ‘보통 가정’과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다소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 방식’이 된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수령·당·인민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 간부와 하급 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나 배급량 및 임금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이러한 규범에 대한 신념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과 대기근 이후 기존의 출신 성분과 계급을 기본 토대로 하여 작동하던 사회 체제가 돈과 정보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양상으로 목격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관계망이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제3절 북한의 딜레마

지금까지 북한 체제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편으로 북한을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를 포함한 북한 체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 및 전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북한 체제가 대내외로 경험한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상황은 북한에 체제의 변화와 전환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 및 체제 전환으로 말미암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다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마저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 중심의 국제 질서에 적응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체제 전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오히려 기존 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경제 위기 극복과 체제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또한 북한은 국제 고립이라는 외부 상황과 심각한 경제난이라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에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북한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만으로는 자신이 직면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

지만 이러한 인식이 곧 개혁·개방으로 나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2014년 신년사에서는 “혁명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자”면서 핵무기와 경제 발전의 병진(並進) 노선을 강조하였다. 이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과 현재 체제를 더욱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체제의 유지와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외부, 즉 우리와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폐쇄되고 경직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는 지름길은 현재 북한 지도부가 직면한 딜레마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직면한 근본 딜레마란 이미 위기로 치달은 경제난의 극복과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성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근본 변화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길 경우 북한의 현재 지도부와 체제의 생존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은 총체 위기에도 개혁·개방을 적극 시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외부의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전략 속에 안주해온 측면이 강했다. 나아가 변화에 대한 대내외 압박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체제 유지 전략으로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북한 상황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주변국을 압박하고 때로는 유화 신호를 보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 전술로 경제 지원

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며,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북한에 근본 변화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북한은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와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내곤 하였다. 김정일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마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리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김정은이 김정일 사후 갑작스럽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권력의 안정된 장악과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를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로 북한은 핵문제로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즉 북한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이 핵문제를 통해 주변국들과의 흥정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원유 및 식량 등을 외부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아 개혁·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시한 세 차례 핵실험(2006.10, 2009.5,

2013.2)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대북 제재를 결의·실행함으로써 북한은 외부의 지원은커녕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오히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고 2013년 3월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 준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결국 북한은 체제 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또한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확립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강성대국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 공언하던 2012년이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이러한 딜레마가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Footnote

- 1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이 1986년 제시한 것으로,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 가기 위한 통치 논리다. 개개인의 육체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백과전서』(제3권), 1983, p.530.
-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경제사전』(제2권), 1970, p.118.
- 4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세부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 조직 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모든 부문과 단위의 계획이 국가의 통일된 계획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 부문과 기업소의 경영 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5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 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통 가족 개념을 사회적 의미로 확대시킴으로써 정권의 안정과 체제의 정당성을 구하려는 것이다.

# II

## 북한의 정치 체제와 통치 이념

제1절 북한 정권의 역사와 정치 체제 형성

제2절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제3절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제4절 북한의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 Key Point

### 01

광복 직후 북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을 벌였으나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다른 정파들을 제압하고 북한 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떠올랐다. 김일성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속된 숙청 작업과 당 권력 구조의 변화로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권력 승계를 공식화하였다.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장 중심의 권력 체제를 구성하였다. 2010년부터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북한은 현재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 02

주체사상은 그동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력 독점을 통한 1인 지배 체제 강화, 이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 이념으로 제시되었고,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한 북한은 2012년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 03

북한은 당과 군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 체계로 운영된다. 헌법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행정의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내각 총리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권한은 당과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 2009년 개정한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하였고, 2012년 헌법을 다시 개정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그 자리에 김정은을 추대함으로써 국가의 최고위직인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 04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선군정치의 가치 아래 1인 지배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였다. 김정일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에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추대되어 3대 권력 세습을 완성한 김정은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1절 북한 정권의 역사와 정치 체제 형성

### 1 소련의 점령 정책과 북한 정권의 수립

#### (1) 북한에서의 공산당 창당과 소비에트화

공산주의 체제로서의 북한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이후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 등장하게 된 원천은 소련군의 점령이었다. 일본 패망으로부터 소련군 주둔까지 북한의 정치상황은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소비에트화는 김일성과 그가 소속된 '88특별여단'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권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선 소련 군정은 북한 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 조직의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이미 조직되어 있었고,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서울의 조선공산당을 중앙으로 인정하되 평양에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을 둔다'는 소련 군정의 결정에 따라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여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결성을 결정하였다(1945.10.13). 같은 해 12월 17~18일 이틀 동안 개최된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또한 소련 군정은 1945년 11월 19일 ‘북조선 5도 행정국’을 창설하였다. 이 기구는 소련 군정 아래 중앙에서의 각급 인민위원회 지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조직됐다. 이처럼 소련 군정은 한반도 분할 점령 3개월 만에 북한만의 통치 조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구조의 실질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일찍이 단독 정권의 기틀을 다져 놓은 것이었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소련 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의 최고집행 기관이었지만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한편 1946년 4월경부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46년 8월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출범하였다.

## (2) 북한의 공산당 단독 정권 수립

소련 군정에 의해 1947년 2월 창립된 입법 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는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산당 단독 정권 수립 마무리를 위한 순서로 1947년 2월부터 국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9월까지 인민회의는 5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1948년 2월 7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임시헌법제정위원회가 작성한 헌법 초안이 제출되고 2월 10일 ‘조선임시헌법초안’이 발표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김일성에 의해 창설되고, 제2차 당 대회(1948.3)에서는 국내파가 약화되면서 김일성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기초하여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년 4월 29일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승인하였으며, 8월 25일 제1기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360명을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평양에서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572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최종 채택(1948.9.8)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발족(1948.9.9)시켰다.

## 2 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과 특징

### (1) 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통치 아래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기형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역사는 김일성 시대부터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긴장을 지속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왔다. 대체로 1956~1967년에 최고지도자 중심의 권력 집중과 혁명투쟁에서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중시하는 수령 중심 독재 체제가 형성되었다.

광복 직후 북한 지역의 정치 지형은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하는 구도로 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주의 진영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진영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파로는 허가이 등의 소련파와 김두봉, 무정 등의 친 중국 연안파 등이 파벌을 형성하였다. 여기에 김일성 등 이른바 항일 빨치산 유격대 세력이 경쟁에 가담하였다. 그와 같은 38도선 이북 지역에서의 정권 수립을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 아래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은 3년여의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면서 전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전쟁 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재건을 둘러싸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소위 종파사건<sup>1</sup>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주창한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한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시초프(N. Khrushcheyov)의 ‘스탈린(I. Stalin) 격하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 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외치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의 대외 자주성 강조는 그 후 주체사상의 성립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의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전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은,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작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사회주의화의 초석을 이루는 작업은 경제 생산 활동의 협동화로서 농업 협동화, 상공업,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말한다. 북한은 이들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생산 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 전쟁 이후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며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중동원의 정치 노선을 활성화하였다. 인민 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진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은 개인들의 근로 동기에서 이기심을 배척하려는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 상황 향상이라는 동기 부여로 인민 대중의 근로를 촉진시킬 수가 없던 북한의 처참한 전후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sup>2</sup> 등이 있다.

1960년대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 기반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로, 김일성은 권력 독점을 위한 단일 지도 체제 구축에 착수하였다. 김일성은 지속된 숙청 작업으로 일인 권력의 공고화, 주체사상의 강화 작업 등 북한 체제 내에서 결코 도전을 받을 수 없는 신 같은 절대 권력자의 위치로 자리를 잡아 갔다.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열린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후 북한은 절대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당과 인민 대중이 일심 단결된 형태로 수령 유일의 영도 아

래 통치되는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유일 체제화는 북한 체제에 안정성은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시대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대한 체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 정권과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 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그것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여 내각제로 출범한 1948년 헌법의 정치 체제가 반대파 숙청을 통해 김일성 유일 체제로 변화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유일 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주석제를 채택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1972년 헌법의 정치 구조에서 주석은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을 정도의 절대 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유일 체제를 구축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위한 체제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를 통한 당 권력 구조의 대폭 변화와 함께 1971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5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러한 후계 구도 속에서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부부장 및 조직지도부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사상담당 비서’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이 시기에 수령 절대주의 체제와 후계 체제를 구축하려던 김정일에게 기존의 지도사상·이념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러한 판단 아래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를 당 사상 사업의 총체적 임무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후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북



한 전반을 장악하게 된 1974년 4월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공포하고 주체사상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미래의 수령으로서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물론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공식 선포된 것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이는 후계 체제의 공고화인 동시에 혁명 전통의 계승 발전을 공식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조직을 재편하면서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 당 내 3대 권력 기구에 선출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둘뿐이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 세습의 완결을 통한 지배 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고자 ‘수령론’ 또는 ‘혁명적 수령론’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에 제시된 김정일의 주체사상 해석으로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있다. 이는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일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한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사상적 과제를 남기는 것이기도 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후 위기관리 체제로서의 김정일 시대 정치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으로 묘사된 과도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 단속 및 재정비 등에 주력하며 구축된 김정일의 정치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 중시 체제로서 김일성의 정치 체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등 선군정치를 기본 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 체제였다. 이와 같은 선군정치 체제는 김정은 후계 구도를 구축하던 2009년에 선군정치의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한 개정헌법에 반영되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 등장하였다.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한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 통제, 내부 통제, 결속 유도 등의 정치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2011.12.29)에서 김정은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 유훈(2011.10.8)에 따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2011.12.30)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각각 추대되었다. ‘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발표(2011.12.31)를 통해서도 김정일 유훈통치,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군·보위 기관의 김정은 선군 영도 결사 응위,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및 경공업·대외무역, 자주통일과 반통일 세력 척결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를 선언하고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세습을 완료하였다. 이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2012.7.15)에서 리영호를 해임한 후 ‘공화국 원수’에 등극(2012.7.18)함으로써 당권·군권·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한 김정은은 후견인 장성택을 처형(2013.12.12)하는 등 김정은 체제 공고화 및 유일 영도 체제 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2)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

북한 정치 체제는 당-국가 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서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는 ‘정치권력이 사회 내에서 광범위한 복종을 확보하여 안정된 지배를 지속하는 경우 그것을 형성하는 제도 및 정치 조직의 총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정치’(politics)란 사회 내의 권력·부·자원배분과 연관된 상호관계를 포함하며, ‘체제’(regime)란 정부의 변천에도 지속되는 ‘지배 체계’(system of rule)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북한 정치 체제는 ‘일당 지배 체제’ 성격을 띠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성에 더하여 지배 정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지배 체제라는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특성 및 정치 체제에 착상된 제도로서의 정부 형태를 규명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헌법과 함께 당의 독점적 위상과 지도적 역할을 반영하고 있는 당 규약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분석 틀에 따라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김정은의 정치 체제는 ‘주체-선군 사회주의’ 체제 또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체제

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논거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2009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2009 헌법 제3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함”(2012년 당 규약)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과거의 1998년 개정헌법과 노동당 규약(1980.10.10~14 노동당 제6차 대회 개정) 분석을 통해 김정일의 정치 체제를 ‘주체사회주의’ 체제 또는 ‘김일성주의’ 체제로 규정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1998 헌법 서문)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1998 헌법 제3조),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을 말해 주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1980 당 규약)는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정치 체제의 기본 틀은 당-국가체계 위에 신화 같은 존재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서 ‘수령-당-국가’라는 위계질서에 기초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을 권력 구조 차원에서 보면 주체의 핵심인 수령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를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특성이 북한 정권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 사상 체계,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로부터 현대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서 제도로 보장된 당의 지도성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 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국가’나 ‘당 독재 체제’라기보다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수령 독재 체제’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 제2절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북한 정권 초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던 김일성이 스탈린 사망 이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대주의와 종파주의 추방 논리로 제시한 주체사상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천명된 이래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 및 수령 1인 절대지배 체계를 정당화하는 억압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 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김정일은 1974년 이래로 주체사상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내세우며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종식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체제 생존을 위한 방어 논리로서 주체사상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 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으로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후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한 김정은은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 규약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주체사상

### (1) 주체사상의 성립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009년 개정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면서 주체사상은 이론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라는 명칭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에 접어들면서다. 주체사상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떨쳐내고 독자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 및 문화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에 입각한 대응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북한 주민의 대외적 주체의식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정치 분야로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소련 및 중국 내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일인독재 지배 체제의 비판을 촉발함에 따라 이 같은 비판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북한의 독재지배 체제 옹호에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교조주의자 대 수정주의자의 이념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을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 대응이 정치 이념으로 표출된 측면도 있었다.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내용	제기 시기	배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1955.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탈린의 사망</li> <li>• 당 내 남로당파 숙청</li> </ul>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56.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원조 감소 (5개년 경제계획 수립 차질)</li> <li>• 당 내 반 김일성 움직임 고조</li> </ul>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1957.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권 내 개인숭배 반대운동</li> <li>• 당 내 연안파, 소련파 타도</li> </ul>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1962.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분쟁 심화</li> <li>• 미·소 공존 모색</li> <li>• 한국의 5·16 군사정변</li> </ul>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제2차 당 대표자회(1966.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분쟁의 확대</li> <li>• 비동맹 운동의 발전</li> </ul>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1967.5.28),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확립</li> <li>•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li> </ul>
온 사회 주체사상화 강화	제6차 당 대회(198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자 세습 체제 공고화</li> </ul>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세습 체제 공식화</li> </ul>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일지배이념화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체제 출범</li> </ul>

## (2) 주체사상의 내용 변화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제와 유일사상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 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유일사상 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민 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 수령과 당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 영도 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 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실권을 장악한 후계자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수령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체사상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여기서 김일성 유일 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 세습의 완결을 통한 지배 체제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

초한 ‘수령론’ 또는 ‘혁명적 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없다는 ‘혁명적 수령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인민 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수령의 영도 아래에서만 개척되고 발전·완수될 수 있는 것이기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후계자를 받들어 나가는 데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령론의 핵심 논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 이상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의 해석과 체계화로 시작되었다.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강력한 축매제로 하여 체계화한 이론을 모색하게 된다. 수령과 인민 대중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는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과 수령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해 형성된 당, 국가, 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의 사회 체제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이 김정일의 해석이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중심적 이론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오직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만이 절대이고 무조건이라는 논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은혜, 의리, 충효의 교환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의 도덕과 주체사상의 논리를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령-당-인민 대중의 일심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의 전환기에 직면하여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논리 보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에 따라 체제 수호를 위한 대안 논리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된 주체사상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된 동유럽 사회주의와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설명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붕괴 가능성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눈앞에 들이닥친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실리에 부합하는 사고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념적 지배력을 띠는 주체사상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선군정치의 기치가 북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사회 구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후계자 등장 이후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 (3) 주체사상의 한계

북한의 주민들은 학습과 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사상을 일상화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 사회 건설의 기초를 이루며, 주체사상의 일상화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토대라고 주창한 것이었다. 또한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자 무오류의 사상으로서 현실에서의 실천성을 확보한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한 주체사상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실천의 유용성이 저하되자 언급 빈도가 낮아지기에 이르렀다. 그 대신 김정일의 권력 승계 이후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경제 난국 대처와 체제 안정을 위한 행동 강령 성격의 구호가 점차 정치적 기치로 활용되었다. 이는 주체사상이 유일한 최고 지도 이념이라는 공식 위상과 별도로 정책 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도 저하되었음을 말해 준다.

더욱이 극심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간혹 생필품 수급 체계 아래 사실상 소외된 개인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생존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 정당화 논리로 주체의 의미를 활용하는 풍조가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체의 기치가 실속 없이 공허한 구호로만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등장은 불가피하다.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된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 독점 및 이상화를 위한 정략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북한이 직면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부문의 위기 속에서 인민 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은 결국 일인 지배 체제를 지탱하고 강화시켜 준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수령론'의 근거에서 인민 대중은 당의 관료화로 말미암아 인민의 진정한 주체성을 담아 내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정작 수령이 지도하는 정당성을 점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 2 선군사상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군이 국가 제반 부문의 중심이 되는 정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 가동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던 1995년 초에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1998년에 북한 통치 기치의 핵심으로 정착되었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혁명 주도과 북한 사회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군의 영향력을 정치 및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투영시켰다. 군을 정치제도화한 선군정치 아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201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시기에 지속된

‘고난의 행군’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 환경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당이 주민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고 주민이 정권을 지지하면서 정통성을 부여해 오던 사회주의적 후원주의 체제를 와해시켰다. 선군정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에 부여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내면의 정통성을 제공하는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 극복과 정권의 정통성 만회를 위해 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위기 상황의 근본 원인이 개인을 신격화한 정치 체제에 있음에도 오히려 김정일은 체제 수호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 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택하였다.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침투가 원자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 아래 김정일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토대의 일환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 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군중시 사상’과 ‘붉은기 사상’을 제시한 것이었다.

선군정치는 군의 확대된 역할로 군을 주민의 삶 속에 직접 연계시키면서 주민의 군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중심 고리도 군대에서 찾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환 국면도 군인혁명정신에서 찾는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여기서 군인혁명정신은 수령 결사옹위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혁명정신을 의미한다. 또 이것을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인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게 하는 영도 방법이 선군영도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외교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북한의 불안이다.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 고립은 가속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은 자위 성격의 군사력을 강화해 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의 발현을 후원하는 내부 요인이었다. 우리와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보전하는 군사 부문의 자부심과 집착 또한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 김일성 지배 시기의 통치 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기에 추가된 통치 이념이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 지침으로 삼는다고 2009년 개정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서 자리 잡았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한 국가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수령 김일성의 빈 자리를 대체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대안적 논리가 필요했다. 이에 김정일은 체제 고수와 함께 주체사상의 수령 유일 체제 정당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선군사상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 원리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 이념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선군혁명 원리는 총대에 의해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로, 이른바 ‘총대철학’에 기초한 혁명 원리를 의미한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력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사선행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 나감에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또한 선군사상은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 방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 체계를 심화시킨 규범 원리를 구성한다. 선군사상에서는 혁명과 건설 과정에 당과 수령이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국가기구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방위원회는 수령 유일의 영도 아래 나라의 전 사업을 군사선행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시켜 지도·관리하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의 위상,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 등을 고려하여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북한은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 때 ‘공산주의’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바 있다. 반면에 주체사상이 유일

한 지도 사상임을 명문화하고 김정일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선군사상’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 삭제와 ‘주체사상-선군사상’의 유일지배 이념화는 결국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에 의한 전제 지배를 위한 이론의 정당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정권은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2003.12.22)를 주장한 이래 선군정치의 목적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통해 선군사상에 기초한 당·군대·인민의 일심 단결을 강조하는 동시에 4대 제일주의의 하나인 ‘우리사상 제일주의’를 ‘김정일 사상 제일주의’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결속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 왔다. 또한 북한 정권 지도부의 불안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민 의무에 기초한 애국심과 애국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1년 9월에는 일심 단결의 정신, 불굴의 강령군 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9·28 당 대표자회 정신’의 관철을 통해 당 영도체계 강화, 김정은 ‘3대 세습’ 공고화 및 체제 안정화 모색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경제 위기 및 외교 고립 속에서 체제 안정화와 정통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으며, 선군사상은 그러한 정치 과정을 관통하는 통치 이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세습 권력으로서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선택의 범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 3 김일성-김정일주의

이상과 같은 통치 이념의 변천 과정에 기초하여 북한 정권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를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고,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 지침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에 앞서 발표한 이른바 ‘4·6 담화’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

이라고 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동신문(2014.4.24)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 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서 사회 변혁을 위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 변혁의 주체인 인민 대중의 이익 옹호를 높이기 위한 지도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총대를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만능 보검으로 내세우는 선군혁명 사상을 밝혀 주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이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한 자주시대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 이념이 필요한 북한 정권은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사상의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하였다. 이는 사상·혁명 이념의 계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통성 강화를 위해 중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할 것이냐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제시한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였다. 김정은은 이른바 김정일 애국주의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 당 중앙위원회 담화(‘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7.26)’)에서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의 실천이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제4차 당 대표자회의에서의 당 규약 개정과 함께 체제 결속 및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을 위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2012년 10월 2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는 북한의 최고 통치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북한은 이를 통

해 핵심 권력 엘리트들의 파벌 형성이나 '제도' 등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부터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두혈통의 영원한 계승을 명문화함으로써 김정은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은 1970년대 이래의 김정일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 통치 이념의 유일한 해석권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 제3절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 1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은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대한 국가 기구는 공산당을 위해 인민 지배와 사회 변형을 위한 도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치 체계의 공통점으로는 첫째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1당이 국가와 사회를 영원히 지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오직 한 가지 가치 체계만을 주입함으로써 사회 교육과 통합을 위한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모든 정치 과정과 언론 매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율이 부여된 정치·사회 하부 체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넷째로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구성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를 조직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공산당의 정책결정 과정 및 조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임을 분명히 표방한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

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 집행,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 구분에도 노동당의 일당 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 원칙인 권력 분립이나 견제 및 균형은 의의를 두기 어렵다. 사회 내 부분 이익들을 대변하는 파당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한 다원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가 극도의 사회유기체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사회와는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1) 김일성 정권의 권력 구조

### 사회주의 헌법(1972) 이전의 권력 구조

통상 정권의 획득, 유지,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 정치에서 권력 구조의 공고화는 권력 투쟁으로 획득한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북한 정권에서 권력 구조를 규정한 것은 북한 정세에 바탕을 둔 정치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에 정치권력 구조를 규정한 것은 김일성의 이른바 ‘민주기지 노선’이었으며, 6·25 전쟁 이후에도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혁명의 지속성을 강조하였다.

애당초 북한 정권의 헌법은 1948년 수립 당시 분단된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의 정부를 정당화하는 내각제 성격의 헌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분단된 미완성 국가로 규정했기에 법치국가의 형성보다 혁명정당이 정치 과정을 전면 주도하는 쪽으로 노선을 택한 것이었다. 바로 이 논리에 의해 ‘노동당의 유일지배’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지금까지도 북한 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과 혁명투쟁에서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는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를 1956년부터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주노선’에 기초한 수령 절대주의의 권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인민 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수령은 당을 조직하고,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로 위상이 정해짐으로써



당이 완전히 수령에 소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2차 당 대표자 회(1966.10)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 사이의 당 권력 구조는 대변화를 겪었다. 특히 수령제가 국가 제도로 완전히 확립되는 데에는 “조선노동당은 국가의 혁명수행 및 당 건설에 있어서 유일 사상 체계를 당내에 확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1970년 노동당 규약 채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주의 헌법(1972)의 권력 구조

이상과 같이 김일성 독재 체제 공고화와 김정일 후계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 정지 작업을 토대로 북한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채택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권력 구조는 옛 소련을 모방하여 노동당 총비서가 내각수상을 겸하고 주권의 최고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원수를 맡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전 권력을 장악한 주석이 국가원수였다. 즉 헌법 제정 및 국가기구 개편으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국가주석은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원칙 아래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설치한 중앙인민위원회,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 사법기관인 재판소와 검찰을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전무력(全武力)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함으로써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1972년 헌법의 핵심은 주석의 ‘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으로 노동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인 김일성은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수반으로서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수령의 절대 권위를 확립하게 된 것이었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 수령의 의도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제도 장치로 규정될 수 있다.

### 노동당 제6차 대회(1980) 후의 권력 구조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북한 정권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권력 구조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게 된 것은 1980년 10월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북

한은 노동당 규약 개정(1980)을 통해 당 중앙기구를 정비·강화하였다. 당 중앙 조직의 경우에는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수령의 존재와 위상만 제외한다면 조직 면에서 중국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당의 지도’라는 불변의 원칙 아래 중국공산당이 군과 행정, 입법, 사법 기구 위에 군림하는 권력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김정일 후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 24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지도부 인선에서는 제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이들 중앙위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만 당내 3대 권력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모두 선임함으로써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한 셈이었다.

## (2) 김정일 정권의 권력 구조

### 1998년 헌법의 권력 구조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일성 유훈통치를 해 오던 북한은 1998년 9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하면서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력을 강화하는 권력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종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하는 권력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개편된 권력 구조의 특징은 첫째로 1972년 이전의 틀로 복원시키면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권력의 정점으로 격상시킨 점이다. 둘째는 원로 세대를 권력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전문 테크노크라트의 세대교체로 신·구세대 간의 조화를 꾀한 점이다. 셋째는 기능 분립을 통한 형식상의 집단지도 체제와 달리 내용상으로는 국방위원장 1인 독재 체제라는 점이다.

### 2009년 개정 헌법 및 2010년 개정 노동당 규약의 권력 구조

선군정치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어 온 북한 정권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을 계기로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국

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200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라는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선군정치의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는 김일성 독재 체제 공고화와 김정일 후계 체제 확립에 전념하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대 세습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은 2010년의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980년 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것처럼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 시킴으로써 마침내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 (3) 김정은 정권의 권력 구조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중심의 당적 체제 출범과 김정은의 위상 설정을 위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2012.4)에서의 김정은 중심 국가 체제와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수령’ 및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더욱이 장성택 숙청 이후 개최된 제13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한 것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변함없이 유지 시킴으로써 권력 구조의 안정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가 선군정치를 주도한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당 영도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분야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당 규약 27조)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 체제는 노동당 및 군대의 두 기둥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등 3개의 거대한 조직이 강력한 국가주의식 통치로 떠받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을 지탱시켜 온 핵심 배후는 역

시 ‘당’이라는 독재 조직이었다. 이 점은 북한 정권의 원천 기반인 북한군의 성격을 당 규약에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 2 노동당

### (1) 노동당의 형성 과정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과 북조선공산당

광복 직후 서울에는 이미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어 있었으며, 각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소련 군정은 “서울의 조선공산당을 중앙으로 인정하되 평양에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을 둔다”라고 결정하였다. 소련 군정은 이어서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10월 중순에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결성하였다. 이어 개최된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1945.11.15)에서 김일성은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가운데 ‘진정한 인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 지지 기반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해 “임시적인 중앙주권 기관을 창설할 것”을 제의하고 정권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 노동계급의 영도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 사회에서 통일전선, 대(對) 군중 관계 등을 주도할 만큼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던 북조선분국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1945.12.17~18)에서 공산당 세포조직, 군중 노선, 통일전선 노선 등을 강조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또한 여기서 김일성은 취임사를 통해 당의 기본 정치 노선으로 ‘선개혁 후통일’의 ‘민주기지 창설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을 중심으로 정치 일정을 전개하려는 의도로서 당시 소련 군정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남조선노동당 창당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은 1946년 7월 28~30일 열린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양당 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통합에 합의하였다. 이후 8월 28~30일의 창립대회를 통해 ‘북조선노동당’이 출범하였다. 당 강령과 당 규약 채택, 당 지도부 구성을 마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가 오늘날의 ‘노동당 제1차 대회’이다. 그때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과 상임위원 구성은 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 등을 다소 적절하게 안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견상의 정치연합성 권력 구조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는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조선공산당은 북조선분국이 북조선공산당으로 독립하고 이후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을 출범시키자 남한에서도 여운형이 당수로 있던 조선인민당, 백남운이 당수로 있던 남조선신민당과 이른바 좌익 3당 합당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46년 11월에 ‘남조선노동당’이 결성되었다.

## 노동당 창당

소련 군정이 1947년 2월 입법기관 창립을 시작으로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거쳐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함으로써 북한의 소비에트화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정부 수립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최된 노동당 제2차 대회(1948.3.27~30)를 기회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위상은 약화된 반면에 김일성의 당 내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노동당 제2차 대회는 앞으로 다가올 정권 수립과 합당을 위해 거쳐야만 할 정지 작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기에 당 지도부 구성에서도 국내파 약화와 김일성계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북조선노동당은 정권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에 당 대회 없이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함으로써 오늘날의 노동당이 창당되었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박헌영과 허가이가 각각 선출되었다.

## (2) 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북한은 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2010년 노동당 규약)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북한의 노동당은 수령의 사당(私黨)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당의 성격을 근로 대중의 정당에서 김일성 개인의 정당으로 변화시킨 것은 오늘날 집권 공산당들이 노동자 계급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세계 추세와 분명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은 이렇게 사당화한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을 다른 어떤 정치 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 독재 체제 틀 안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 대중에게 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전위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도 수령의 존재와 영도라는 점만 제외하면 북한의 노동당과 유사하다. 1954년 중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불변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도 입법·사법·행정기관은 존재하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은 없으며, 공산당이 인민해방군·국무원(행정)·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사법기관(사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198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은 인민에 속한다”(29조)라고 규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 사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군의 장악이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10년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당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의 권력 세습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에서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 사상으로 각각 내세우는 한편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당 지위의 독점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3부 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유일 수령의 영도 체제로 인해 실제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 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한다. 그 결과 수령은 인민 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문제는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당의 자율성은 그만큼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은 수령의 1인 독재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노동당의 위상은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 기관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하는 하급 기관에 불과하다. 요컨대 노동당은 생명체의 최고지도자인 수령과 인민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국가제도를 통해 실천하는 역할을 주로 관장하는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3) 당 조직 체계와 기능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체계는 사회주의식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 원칙에 입각하여 규제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

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고 표현되어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레닌(V. I. Lenin)이 자신의 독재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반대자들을 ‘인민의 적’이라는 미명 아래 숙청하는 데 활용한 제도이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를 당 내에 확보하여 당의 일사불란한 확실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령의 일인 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의 틀로 기능한다.

이처럼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비서국 산하의 전문 부서 가운데 ‘조직지도부’,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에 따라 당의 핵심 기능인 ‘당 생활지도권’을 장악한 최고지도자는 ‘생활총화’와 당 세포비서의 세포조직 활동으로 간부 동향을 파악·통제함으로써 수령 절대주의 체제 확립에 필수인 당권·군권·정권 기관을 장악해 나갈 수 있다. 결론을 말한다면 당 규약에서의 유일 지배 이념 강조, 당 총비서의 우월한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는 한편 최고지도자가 전권을 쥐고 있는 사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

노동당의 공식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당 대회다. 과거 소련에서 최고의 사회정치 조직이던 공산당의 최고 기구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였다. 중국 역시 당의 최고 권력 기관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다. 중국의 경우 전국대표대회 대의원 2,270명은 공산당 노선을 재검토하고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당 규약은 당 대회가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



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형식에 그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 대회는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 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 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30년간 당 대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북한 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는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 중앙위원회가 당 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제1차 대회	1946.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창립에 관한 보고</li> <li>· 당 강령·규약·기관지에 관한 보고</li> <li>· 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선거</li> </ul>
제2차 대회	1948.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li> <li>· 당 규약 개정</li> <li>·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li> </ul>
제3차 대회	1956.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li> <li>· 당 규약 개정</li> <li>·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li> </ul>
제4차 대회	196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li> <li>·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li> <li>· 당 규약 개정</li> <li>·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li> </ul>
제5차 대회	197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li> <li>·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li> <li>· 당 규약 개정</li> <li>·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li> </ul>
제6차 대회	198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li> <li>· 당 규약 개정</li> <li>·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li> </ul>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제 신설 및 김정은 부위원장 임명,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를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 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당 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총비서의 지위를 명기하고 당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당의 군 통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표 2-3.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제1차 당 대표자회	1958.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7~1961)</li> <li>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li> <li>당 조직 문제</li> </ul>
제2차 당 대표자회	1966.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li> <li>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li> <li>월남 문제에 관한 당 대표자회 성명 채택</li> <li>당 조직 문제(당 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직제로 개편, 선거)</li> </ul>
제3차 당 대표자회	201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li> <li>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li> <li>당 규약 개정(당 대표자회에도 당 규약 개정 권한 부여)</li> <li>당 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선거</li> </ul>
제4차 당 대표자회	201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li> <li>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 사상으로 명문화</li> <li>제1비서직 신설</li> <li>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li> </ul>

## 당 중앙위원회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들을 선출한다. 여기에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이전까지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 및 당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가 개최된 것이었다. 당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다가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총 124명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공식이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권력 기구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신설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소련의 경우에도 정치국은 공산당 내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 정치국의 위상 변화는 후계 구도와 맞물려 나타났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소집을 결정한 것이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및 확대회의에서 결정할 만큼 정치국의 위상이 복원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경우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사망), 김영남, 최영림(해임), 조명록(사망), 리영호(해임) 등 5명으로 조직된 바 있다. 중국의 경우도 최고 권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7명의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크게 다르다. 특히 후진타오가 장쩌민으로부터 당을 넘겨받은 2002년 제16기 1차 전체회의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은 사실상 ‘임기 10년’의 제도화된 권력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

##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당 내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권력 기구는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음에도 김일성과 오진우 사망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 체제로 전락함으로써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당 중앙위원회를 실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 비서국은 제4기 제14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66.10.12)에서 신설되었다.

당 비서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로서 2014년 7월 현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강석주, 오수용 등 9명의 비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국이나 비서국보다도 실권을 쥐고 있는 기관은 역시 당 비서국 산하의 19개 전문 부서 가운데 김정일이 직접 담당하던 최대 조직인 조직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 당 중앙군사위원회

2010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던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군 간부 인사권과 함께 군대의 지휘 및 군사 정책과 관련된 단독지시, 명령, 결정 등을 행사해 왔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부터는 상설 최고군사지도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폐막일인 2010년 10월 18일 당시 시진핑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차기 최고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권력 승계와 관련한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 강화 및 군수공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 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

북한이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이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께 승격되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 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북한 전역의 도·시·군 단위에 각급 군사위원회를 두었다.<sup>3</sup>

### 당 지방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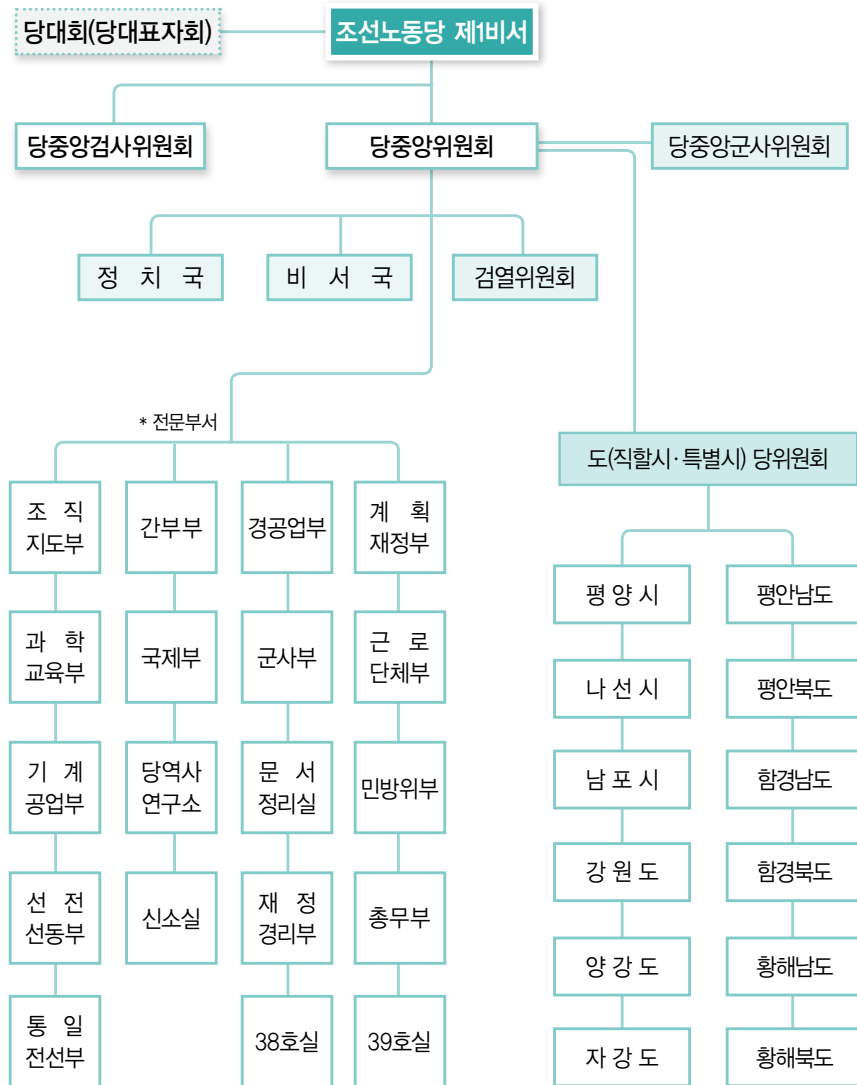
노동당의 지방 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 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 체제 형태를 취하면서 북한 전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각급 당 위원회는 상·하의 당 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 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절대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 같은 중첩 위계 구조는 당의 조직력 강화에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에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약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시·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와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최하 기층 조직인 당 세포가 존재한다.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 구조들을 운용하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 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 위원회의 책임비서에게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2-1. 노동당 기구

\* 당대회 1차 1946. 8, 2차 1948. 3  
3차 1956. 4, 4차 1961. 9  
5차 1970. 11, 6차 1980. 10

\* 당대표자회 1차 1958. 3, 2차 1966. 10  
3차 2010. 9, 4차 2012. 4



출처: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14. 5.

#### (4) 행정, 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

##### 당-정 관계

북한의 권력 구조는 권력이 집중돼 있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의 정부 기관 통제는 통상 당 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 장치와 더불어 정부 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를 당 내에 설치하여 견제하고 사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책을 추진한다. 추진된 정책은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 당-군 관계

군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2010년 9월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당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 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부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을 파견한다.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 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한편, 당 지도부의 실질적 관할 하에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군 내에 조직되어 당의 군부 통제기능을 보강한다.

물론 이러한 당-군 관계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변화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1998년과 2009년의 개정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면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총정치국을 통한 북한군 전체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에 의한 군 통제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 당-사회단체 관계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 단체 가운데 다수가 실제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는 준국가 단체 성격을 띤다. 북한의 소수 정당이라 일컫는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도 유명무실한 단체로서 기껏해야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 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노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하여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사실상의 준국가기관으로서 노동당의 지휘 체계 내에서 제한된 범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3 중앙 기관

오늘날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 강령을 시행하는 중앙 기관으로는 최고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입법기구로서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 사법 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선군혁명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및 국가 전반의 무력·국방건설 사업 지도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 제위원장은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하는 위치에서 국가의 전반 사업 및 국방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지닌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결정된 것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행정 관련 사업 대부분을 주도하고 관리한다. 사법 기관으로서의 검찰소는 사회주의식 준법성 확립을 위한 법 준수 여부 감시와 체제 수호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판소는 노동당의 사법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철저하게 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율 판단은 불가능하다.

### (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국방, 대내정책, 대외정책, 사법안전, 경제정책)의 하나로 설치되었으며, 국가주석이 국방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당시 국가주석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 사법 기관인 재판소 및 검찰을 지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령 유일의 영도를 철저히 보장한 제도 장치로서 당연히 주석의 '지도'는 헌법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은 중앙인민위원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의 개정 헌법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의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하여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2009년 헌법 개정에 이르러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차츰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가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은 역시 국방위원장 중심 체제를 공표한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가 국가주석이 지도하는 체제였다면 김정일 시대는 '국방위원장'이 전권을 장악한 체제였다.

국방위원회는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1인의 제1부위원장(공석), 4인의 부위원장, 5인의 위원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들의 임

기는 5년이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규정을 신설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제1부위원장직은 폐지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제13기 제1차 회의(2014.4.9) 결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3명(신규 최룡해), 위원 5명(신규 장정남, 조춘룡)을 선거로 임명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전반 지도, 국방위원장의 명령 및 국방위원회의 결정·지시·집행의 감독,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 임무와 권한이 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하며,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또한 외국과의 중요 조약 비준 및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한다.

## (2)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공식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국정 전반 사항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 한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사회주의권인 옛 소련이나 중국의 입법 기구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입법기구이던 ‘소련최고회의’는 헌법상 매년 2회 열리게 되어 있었으며, 간부회의의 특별 요청이나 연방공화국의 요구 또는 대의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중국의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헌법상 최고권력 기관으로서 대의원 임기는 5년이며, 매년 3월 한 차례 대회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제91조)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최고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성원 임명 및 최고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의 기능을 한다. 이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 조약의 비준·폐기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등 의제로 헌법 서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업적을 서술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각각 명문화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부문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공포 안건을 처리하였다.

2013년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3.31) 결정 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헌법 개정, 법령 신설, 인사 개편 등 총 8개 의안을 토의·결정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4.1)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헌법·당 공식 노선 채택에 이어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 채택, ‘우주개발법’ 제정 및 국가 우주개발국 신설, 박봉주 내각총리 재기용 등으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이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해 우상화를 법제화하였다.

제13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2014.4.9)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향후 운영을 위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예산·결산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를 비롯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구성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은 권력구조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설치·폐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비준·폐기, 외교 대표의 임명·소환 결정·발표,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등 대외 일반 사업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한다.

북한은 1948년 단독정권 수립 당시 명목상의 최고국가권력 기관인 소련의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를 모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설립했다. 1936년에 채택된 ‘스탈린 헌법’에 따르면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사실상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법령을 해석하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령’을 공포할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까닭에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소련공산당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음에도 상임위원장은 소련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다음 서열에 놓일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소비에트화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상과 권한도 소련의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와 거의 동일하게 된 것이었다.

### (3) 내각

내각은 최고 주권의 행정 집행 기관이자 국가 전반의 관리 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4년 7월 기준 7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의 총 4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원래 내각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줄곧 행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러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내각수상직을 맡고 있던 김일성이 국가주석이 된 권력 구조의 변화 속에서 내각의 명칭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인물에게 수상을 맡기기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편이 더 낫겠다는 판단 아래 ‘정무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1998년 헌법에서 ‘내각’의 명칭을 부활시켰다. 그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 및 권한 이양에 따라 정무원의 ‘행정집행기관’ 기능에 ‘국가 전반 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내각의 수장은 내각총리다.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 기관이자 관리 기관으로서 내각의 지도 아래 해당 부문의 사업을 장악하고 지도·관리·추진한다.

#### (4) 사법 기관

##### 검찰 기관

북한은 헌법에 검찰 기관의 구성, 임무, 내부관계 등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검찰 기관에 있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 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 감시와 더불어 체제 수호를 담당하는 통치 기구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검찰 기관은 최고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최고검찰소는 검찰 사업을 통일하여 지도하며,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 업무 수행의 일체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 정책 및 법령 해석의 통일성 확립, 당 지도 체제 강화 등에 활용된다. 최고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검찰소가 각각 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 재판 기관

북한 재판 기관의 구성은 검찰 기관과 동일하게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 밖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 및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북한의 최고재판 기관으로서 하부 기관의 재판 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 사업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 기관은 노동당의 사법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완전히 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율과 중립에 따른 사법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군과 국가안전보위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예컨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된 장성택 처형의 경우에서 보듯, 3급 2심제를 채택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림 2-2. 정권 기관



출처: 통일부, 「북한권력기구조», 2014. 7.

## 제4절 북한의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 1 권력 세습의 정치 체제

#### (1) 세습 체제 구축

북한 정권은 수령 독재 체제와 세습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독점 단일 지배 체제를 구축한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는 부자 권력세습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당·반혁명 종파 행위라는 명분으로 도전 세력들을 숙청해 나갔다. 숙청의 핵심 논거로 제시된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계속혁명론과 수령론에 기초한 후계자론이었다. 그것은 결국 세습을 둘러싼 권력 투쟁과 정치적 숙청 과정을 거쳐 유일 체제 구축 및 후계 체제 공고화를 정당화하는 정치 체제로 구체화되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후 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와 내각 등에서 업무 경험을 쌓고 31세에 당 조직지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3대혁명소조운동<sup>4</sup>’ 등을 이끌다가 1980년의 제6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당 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과 군 양자를 주도하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후 대외 핵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김정일은 1980년대에 북한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 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양양’,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이 있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91



년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김정일이 주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은 군사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듬해 1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나아가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후 199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마저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군통수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위상에 걸맞게 자신의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3년여의 체제 정비작업 이후 1997년 말에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9월 개정 헌법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올라섬으로써 김정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심각한 경제난과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소 안정된 권력 기반 위에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김정일은 사망하기 전까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체제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 (2) 김정일의 정치 체제

1964년 대학 졸업 후 30년간 체험한 당 사업으로 후계자로서의 통치 역량을 구축한 김정일의 세습권력 정치 체제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차별화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띠고 있었다.

첫 번째는 독특한 1인 지배 체제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사회주의 국가 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1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 기능을 수행하는 이념 체계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 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군사 우선주의이다. 통상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 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

선행의 정치”를 의미한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 세력으로 군대를 규정하고 있다. ‘선군후로(先軍後勞)’, ‘총대가정론’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는 북한의 대표 구호들이다.

선군정치론은 나아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쟁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을 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관병일치’, 군사 일꾼들과 정치 일꾼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지도 아래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 구호도 선군정치와 맥을 함께한다.

선군정치의 기치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군부는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활동을 확장하는 등 영향력을 사회 내에 증대시키고 있다. 군부는 주요 건설 사업에도 자체 병력을 투입하는 등 역할을 주도하며 수행하고 있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 물길 공사,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은 군 주도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건설사업이다. 선군정치는 침체된 북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훈련으로 안정된 군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서 노동 의욕을 상실한 북한 주민들을 산업 현장에 재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이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북한 핵 위기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어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김정일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북한 사회가 작동해 가는 가운데 군부의 영향력도 점차 증대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세 번째는 위기 극복과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내세운 ‘강성대국론’이다.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 체제의 위기 시대를 넘기면서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 주민의 결속과 재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논리다. 북한은 그동안 스스로 사상 강국, 정치 강국, 군사 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 강국 건설로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선전해 왔다.<sup>5</sup>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 연결되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반작용성 구호라고도 할 수 있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책이 올바른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의 기초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종자론’을 내세우는 것도 개혁과 개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양면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 (3) 김정은의 정치 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 국면을 열어 나갈 세 가지 방도를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는 당을 중심으로 군중을 단결시켜 일심 단결을 이룩하여 정치사상 진지를 다지고, 정치·군사 부문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군력 강화를 위해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군기’를 확립하고, 조선인민내무군 장병과 노동적위군 대원의 전투정치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방공업 부문에서 첨단 무장장비를 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방도로 당에 의한 군의 통제와 충성군대 육성 노력에 역점을 두는 한편 당 조직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당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는 김정은 통치 체제의 특징이며, 2012년 4월 노동당 규약과 헌법을 개정하면서 가속되었다. 2013년에 들어와서는 당의 기층 조직인

당세포의 강화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1.28~29), ‘전군 당 강습지도일꾼회의’(2.22), ‘3대 혁명소조원회의’(2.27) 등을 개최했다.

이처럼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기치 아래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함으로써 체제 결속과 내부 역량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대미 및 대남 등 대외 관계 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면서 체제 생존의 힘든 해법을 찾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난국을 자력으로만 극복하기 힘든 실정어서 외부의 광범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교 환경 개선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며, 북한이 향후 외교 고립과 경제 난국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2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 (1) 3대 세습과 김정은의 등장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신체제는 후계자 지명, 후계 체제 형성 및 공식화 단계를 거쳐서 구축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 독점, 군부 숙청 등으로 세습권력을 공고히 다져 나갔다. 김정일 사후의 북한은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해 2008년 8월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시작된 세습 절차를 후계자 지명 및 3대 세습 체제 구축 작업을 토대로 마무리했다. 3대 세습에 기초한 김정은 체제 구축과 우상화 작업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2010년 초부터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 ‘발걸음’을 대규모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는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하여 당과 군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

서 당 지도 체제를 개편하고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정은은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된 군 열병식에 등장하여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이처럼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2010년 10월 5일 군인들의 협동훈련 참관을 비롯하여 2010년 말까지 38차례 공개 활동을 하는 등 권력 세습을 위한 후계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한편 북한은 제3차 당 대표자회 개최 1주년을 맞아 일심 단결의 정신, 불굴의 강행군 정신, 계속혁명의 정신 등 ‘당 대표자회 정신’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의 관철을 통한 김정일 영도력 및 당 영도체계 강화와 김정은 3대 세습 공고화 등 정치적 목표 달성에 주력해 왔다.

김정일 사후 안정된 체제 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 통제, 내부 통제, 결속 유도 등으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 과정에 몰두해 왔다. 그에 따라 북한 정권은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에서 김정은을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하였고,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김정일 유훈통치,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 군·보위 기관의 김정은 선군



영도 결사옹위,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및 경공업·4대선행부문·대외무역 향상, 자주통일과 반통일 세력 척결 등을 강조한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발표(2011.12.31)하였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의 안정 유지를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일련의 결정들에 포함된 정신은 궁극적으로 2012년 4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 선언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 정신에 따라 북한 정권은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에 추대함으로써 ‘3대 세습’을 완료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은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은에게 이미 부여된 당·정·군의 최고 직책과 함께 리영호의 해임 및 김정은의 공화국 원수(2012.7.18) 등극을 당 정치국 회의(2012.7.15)에서 발표함으로써 공고화된 권력에 기초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3대 세습은 그 어떤 독재 체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권력세습이다.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세습 군주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북한이 아무리 자신들의 정권을 ‘인민 자신이 세우고 그들이 운영하는 인민의 정권’이라고 선전해도, 수령의 지위가 세습되고 주민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 북한 정권은 일인 독재와 일당 독재가 결합된 혼합독재 정권의 일종에 불과하다.<sup>6</sup>

## (2) 김정은 지도 체제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가 현재와 같이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개최를 통해서였다. 김정은 체제는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규약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고, 조직 문제와 관련 직제는 물론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도와 이념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 주도의 권력 체제 특성에 맞추어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및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통상 항일 빨치산인 혁명 1세대, 3대혁명소조 지도 세대인 혁명 2세대, 3대혁명소조 참가 학생 세대인 혁명 3세대로 나뉜다. 현재 80대인 혁명 1세대는 권력 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50~60대의 혁명 3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핵심 엘리트 집단으로 떠올랐다.

대체로 김정일 정권 말기에 재편된 북한의 핵심 권력층은 전문성을 갖춘 김정일

의 측근세력으로, 김정일과 젊은 시절부터 친분을 다진 대학 동기나 당 조직지도부 동료들, 후계 체제 구축을 도울 엘리트 집단을 다수 포함하는 50~6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1960년대 후반 이래 김정일을 보좌해 온 측근들로, 당 정치국과 비서국 및 국방위원회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최근에는金正은이 세대 교체 차원에서 당·정·군 내 40~50대 간부들을 대거 발탁함으로써 1인 독재 체제의 공고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계층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는 주석단 서열, 직책, 현지도도 수행 빈도, 김정일 부자와의 관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주석단의 서열이 지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이후 북한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내비친 주석단 서열을 분석하면 군부 인사의 상위권 진출이 현저한 데 비해 노동당 간부들의 주석단 서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1993년 이래 당 정치국의 인력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위상 약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김정일 체제에 접어들면서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지위 상승이 당 정치국의 하락을 가져온 직접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당 대표자회 결과를 보면 당 중앙위원을 비롯해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재편으로 당 정치국의 위상은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 수준으로 복원됨으로써 당 지도 기구가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에서의 권력 구도 정비로 당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주석단의 20위권 안팎의 서열을 대부분 차지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특히 김정은에게 대장 직위를 부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에 당과 군의 핵심 인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요 권력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3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에서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함으로써 일단 체제 안정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44%의 세대교체를 통한 군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정통성 확보를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도록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의 김정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를 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가운데 ‘김일성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김일성 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 매체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 조선’, ‘김일성 당’이라는 표현도 명기하였다.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 지도사상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는 북한의 최고 통치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심 권력 엘리트들의 파벌 형성이나 ‘제도’ 등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두혈통의 영원한 계승을 명문화하는 등 김정은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 점에서 장성택과 그의 측근인 이용하 및 장수길의 숙청은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라는 그들의 죄목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피의 숙청’을 계기로 북한 노동신문(2013.12.6)에서 김정은을 ‘최고 영도자’ 대신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함께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2013.12.17)에서 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한 최룡해의 ‘결의연설’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또 한 분의 김정일인 김정은’과 김일성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한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했듯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며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 경쟁을 통한 권력 구축과 체제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 Footnote

- 1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 당 중앙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1인 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 독재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 2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듬해인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이를 일반화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즉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라는 명칭은 청산리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고 하여 붙여졌다. 청산리정신은 사상 측면을 강조하고 청산리방법은 실천 방법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통상 따로 개념을 짓지 않고 한데 붙여서 사용한다. 이처럼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당초 농업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모든 경제 분야의 기본 지도 방법으로 통용되었다.
- 3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178.
- 4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2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할 무렵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소조원으로는 대학 졸업생들이 2~3년간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 각급 기관 및 생산 현장에 파견되어 간부,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지도하면서 김정일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 5 강성대국론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 등장했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1년에 들어와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로 격하시켰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부흥’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기도 하였다.
- 6 통일교육원, 「북한의 양면성」, 2013. pp.18-20.

# III

##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

제2절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

제3절 북한의 대외관계

## Key Point

### 01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 활동은 한반도 공산화와 대남 우위 확보를 위해 사회주의 권과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외교를 다변화하고 있다.

### 02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 생존의 핵심 관건으로 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본과는 식민지배 보상금 등 실리 확보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03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긴밀화하여 국제 사회의 압박을 견제하면서 경제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는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 등으로 대체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04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수단으로 하여 국제 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동시에 얻어 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

## 1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과 목표

### (1) 기본 이념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17조(2009)에는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 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 정책의 이념에는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2) 목표

북한은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에 대하여 ‘반제자주 역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 보고에서 김일성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을 외교 정책의 목표로 규정하였다.

1990년대 초 소련과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와해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질서 재편이 본격화되자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배제시켰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 투쟁의 목표는 더욱 강조하였다. 결국 북한은 자주·친선·평화라는 외교 정책의 이념 아래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체제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국제 여건과 환경 조성을 중시하며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북한 대외정책의 방향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는 한반도의 공산화와 대남 외교 우위 확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 안정과 생존에 초점을 두고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는 국가 생존과 체제 유지에 1차 목표를 두고 있다.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 활동은 사회주의권,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 것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의 구조와 이념 갈등의 요인 때문이었으며,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가 활발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한국과 수교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 들어 극심한 경제난이 겹침으로써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북한은 체제 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체제 안정성 확보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 한때 소원하게 지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대결 상황 속에서도 관계 개선을 지속해서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식량·원유와 같은 경제 지원을 확보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관계와 대일 관계는 미·북 관계의 종속 변수로 보고 국제 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전술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수교를 추진하여 선진 기술 도입과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동남아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자원 외교를 강화하는 등 체제 생존을 위한 실리외교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국제 사회와의 대결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매개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동시에 얻어 내려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sup>1)</sup>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 사회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3년부터는 6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 회담에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국면 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09년 5월에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국제 사회의 비난과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어 2010년 11월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살상하였다.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은 2012년 1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을 도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국가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 기간 북한은 이와 같은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킴으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한국 또는 미국에 전가하여 왔다. 북한이 대남·대외로 ‘대화공세’와 도발 행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한·미의 대북 정책을 압박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 갈등을 지속해서 유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강화로 국제 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인 2010년 5월 및 8월, 2011년 5월 및 8월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2010.5, 2010.8, 2011.5)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은 이후 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경제 원조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4년 들어서는 북·중 관계가 다소 소원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냉전시대와 달리 오늘날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일부 갈등하고 대립하면서도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서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합동조사단 활동과 대북 제재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기구와 유엔을 통한 대북 규탄을 끌어내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과학적 조사 결과에 불신을 표명하였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의 조치들에 반

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거듭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상반된 입장들은 동북아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국익이 상충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 구조

북한은 헌법에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 정책의 기본 이념과 대외 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교 정책 노선으로는 우호 국가들과의 평등과 자주,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경제·문화 관계 증진,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우위 국가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정·집행되어 왔다.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당 차원의 지도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국제담당 비서와 비서국 산하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지도자가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무 부서에서 집행하는 상의하달 방식이 있다. 이와 달리 당·정·군의 실무 엘리트 집단이 정책 입안 이후 검토·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집행자들, 당 중앙위원회 비서·부장, 내각 총리, 인민무력부장, 외무상 등에게 보고하면 이들이 최고지도자의 비준 및 재가를 받은 후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하의상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북한은 대외정책을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는 당 국제부, 외무성, 당의 외곽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 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정당 외교는 당 국제부, 의회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민간 외교는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각각 맡고 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상과 다수의 부상들이 30여 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면서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 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 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교 업무는 당,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 의해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외교 실상과는 달리 북한의 헌법을 보면 대외정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헌법 개정 때 국가주석 직책이 없어지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발표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후 2012년 4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영도자로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특사권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지닌다고 명문화하였다.

## 제2절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

### 1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경쟁과 대립의 양극 체제가 형성되던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시기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48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중·소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외교이고, 2단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비동맹국 외교이며, 3단계는 1970년대 자주 외교이고, 4단계는 1980년대 대서방 실리 외교이다.

#### (1) 중·소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외교: 1948~1950년대 초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형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절실하였다. 그 중심에 전 세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이끄는 소련이 있었다.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북한 외교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소련의 중재로 그 영향권 안에 있던 위성 국가들인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등 12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후 1950년대 초 중국이 6·25 전쟁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을 참전시킴으로써 북한과 혈맹 관계를 형성, 북한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중심의 외교에 치우치지 않고 중·소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쟁적으로 경제 원조를 받았다.

## (2) 비동맹국 외교: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경제 지원 획득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고 협력 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소련에서 스탈린 사망(1953) 이후 흐루시초프가 집권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이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1955년 4월 반둥회의에서 ‘반둥 10원칙’이 제시되면서 북한의 외교 정책은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 소련,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국한시킨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여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국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sup>2</sup>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민외교’ 수행 담당 기관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노동당 외곽 단체로 만들어서 비동맹국 외교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1958년에 알제리, 기니 등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 반둥회의와 10원칙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는 1955년 4월 18~24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독립국 대표들이 인도네시아의 반둥에 모여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긴밀한 관계 수립과 냉전 상황 속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중립 선언, 식민주의 종식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이다. 이 회의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 5개국의 발기로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국제연합헌장의 제(諸)원칙, 1954년 6월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와 인도 네루 총리의 회담 결과 발표된 ‘평화 5원칙’을 통합한 세계 평화 및 협력에 관한 ‘반둥 10원칙’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 ②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원칙 준수 ③모든 인종의 평등성과 인종의 평등원칙 준수 ④내정 불간섭의 원칙 및 불개입 존중 ⑤유엔 원칙에 합의하는 각 국가의 개별 및 집단 자유권 존중 ⑥집단 방위협정과 관련 대국(大國)의 특수 이익을 위한 불사용과 내전 불간섭 ⑦침략 및 침략의 위험, 병력 사용 금지 ⑧국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⑨상호 이익과 협력 증진 ⑩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

1960년대 들어 북한은 중·소 이념 분쟁과 남한에서의 5·16 군사정변, 쿠바 사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신생독립 국가들의 유엔 가입 증가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비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 확산에 더욱 주력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독립 국가들의 유엔 가입 증가와 1960년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남 관계에서의 국제적 입지 우위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김일성은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투쟁, 신생독립 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소련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1961.6)’, 중국을 방문해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1961.7)’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우방국인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 관계에서 중립 입장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분쟁 초기에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중점을 두었지만 1965년 2월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중·소 양국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즉 등거리외교 정책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중·소는 북한이 양다리 외교를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의 대부분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대남 관계에서의 우위 확보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국제적 입지 강화를 모색하던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 노선을 선언<sup>3</sup>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비동맹국 외교에 본격 나섰다.

### (3) 자주 외교: 1970년대

북한은 1971년 9월 중국의 유엔 가입과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일본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등 주변 환경이 변화되자 외교 부문에서의 자주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실리를 추구하였다. 즉 1960년대 중반 이후 강조하기 시작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등 원칙을 견지하면서, 선진 자본주의의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북한에 호의를 보이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추진한

것이였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변화는 1971년 11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의제가 토의된 이후부터였다.<sup>4</sup>

이 시기에 북한은 비동맹국 외교도 적극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북한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 이후 제6차 대회(1980)까지 66개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제3세계 지역에서 중·소 중심의 외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1975년 8월에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 외상회의(8.25~30)에서 ‘비동맹회의’ 정식 회원에 가입하였다. 1975년에 개최된 제30차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서방 측과 공산 측의 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등 북한의 영향력이 유엔 외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대남 도발과 외채 상환 문제, 위폐 및 외교관 밀수 사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북한의 국제적 입지는 약화되어 더 이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 (4) 대서방 실리 외교: 1980년대

북한은 1980년대 들어 실리 외교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서방 외교를 대규모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절박한 목적이 있었다. 당시 북한 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등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운영상 모순 누적으로 장기 경제 침체에 진입한 상태였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선택(1978)과 1980년대 중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추진은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를 현실로 입증해 줌으로써 북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로부터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표명한 ‘자주·친선·평화’의 외교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관계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 협조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서방 외교를 대규모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3년 10월 버마(현재 미얀마) ‘아웅

산 폭파사건'은 북한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고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소외를 야기하는 등 외교 관계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은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미국과 남한, 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담 개최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한편 경제 회생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 1984년 1월 대외 무역 확대 방안을 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외국인의 직접투자·합작투자 유치를 위한 '합영·합작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제3차 7개년 계획(1987.4)'에서 대외 무역 확대와 경제 분야의 합작·합영을 세세히 명시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1980년대 북한의 외교 정책은 오히려 북한 외교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 1987년 10월 북한은 서방의 채권은행단에 '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목받았으며, 선진 자본주의 기술 도입과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외 개방도 실제 성과는 미미하였다.

## 2 탈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

소련의 붕괴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대립 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던 탈냉전 시기에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외교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1990년대에는 미·일 외교관계 정상화,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 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미·일 외교 정상화 추진: 1990년대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와 대내 경제 침체, 국제적 고립 상황이 겹치는 등 중대 기로에 서 있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의 적대 관계로 경쟁하고 있던 양극 체제가 공존 경쟁의 다극 체제로 변화되는 데탕트 분위기에 맞춰 북한의 외교 정책도 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공산 진영의 와해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떠올랐고, 냉전 시기 이념·체제 관계의 동맹국이

던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등 북한에는 불리한 국제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본격화하였다. 이는 내부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한편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김일성 사망(1994.7.8) 이후 권력 승계, 경제 위기, 국제 고립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군부의 비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고립 탈피를 위한 마일 관계 개선에 전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28차례의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진행하고, 그 결과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를 이루었다. 1999년 3월에는 금강리 지하핵 의혹 시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식량 60만 톤을 지원받았다. 그 후 독일 베를린에서 미사일 재발사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합의를 이루는 등 대미 관계 정상화의 출로를 열었다.

한편 북한은 1991~1992년에 일본과 8차례의 국교정상화 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1995년 3월에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연립여당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고, 1995~1996년에 50만 톤의 식량 지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 일·북 간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을 두 차례 성공시킨 데 이어 1998년 3월 일본 자민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일·북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북한 정부가 1999년 8월에는 일본이 과거사 보상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냉각되었다. 이후 미·북 간 ‘베를린 합의(1999.9)’에 힘입어 북한은 일본 정당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공동보도문을 통해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를 합의(1999.12.3)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일·북 적십자회담을 개최(1999.12.19)하고 재북 일본인 여성 고향방문 재개 등 4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미·일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을 중시하면서도 중·소 관계 증진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중 수교(1992.8)를 계기로 북한 측이 냉랭한 태도를 보였으나 ‘북·중 경제기술 협조 협정’ 체결(1996.5),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1999.6), 탕자쉬안 외교부장의 방북(1999.10)으로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러시아와는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을 대체하는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2000.2)’을 체결함으로써 일반 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 (2) 전방위 외교 추진: 2000년대

김일성 사후 유신통치 기간(1994.7.8~1998.8)을 거쳐 공식 출범(1998.9)한 김정일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 회생, 대외 고립 탈피, 국제 사회의 지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체제의 유지와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종일관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 우호 관계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도 강화하였다. 일본·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전방위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핵 카드를 들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년 3차)을 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BDA(방코텔타아시아)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받아 왔다.

북한은 2000년 10월 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기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같은 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에는 김정일과의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악의 축(2002년 연두교서)’으로 지목되는 등 핵 문제를 둘러싼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중·소 등 전통적 우방 국가와 일본을 비롯한 미수교 국가들



과의 관계 정상화에 외교 정책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연계하여 핵 카드를 지속 활용하여 온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 외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부시 정부 시기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되어 9·19 공동성명까지 도출되었으나, 북한의 의무 불이행으로 공동성명 이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입장과 북한 측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가 상충하여 여전히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중·러시아와의 정상외교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방면의 원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과는 김정일 생존 때 수차례의 방중(2000.5, 2001.1, 2004.4, 2006.1, 2010.5, 2010.8, 2011.5, 2011.8)과 장쩌민 주석(2001.9), 후진타오 주석(2005.10)의 방북으로 기존의 우호 관계가 회복된 듯하였으나, 시진핑 정권이 출범(2012)한 이후 중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김정은 방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는 김정일 생존 당시 정상 간 상호 방문(푸틴 대통령 방북-2000.7, 김정일 방러-2001.7, 2002.8, 2011.8)으로 전 통 친선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러시아도 동참하였고, 현재 정상 간 상호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나진-하산 철도 완공(2013)과 같은 경제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12월 영국, 2001년 3월 독일 등 2010년까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제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럽연합 유로화 사용 결정(2002.12), 유럽연합-북한 간 경협 및 북한 경제 현대화 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2004.8, 2005.10, 2007.10-평양) 등은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중시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북핵 및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아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다.

이 밖에도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방문(2001.7), 태국과 말레이시아 순방(2002.3), 메가와티 인도네

시아 대통령(2002.3), 쩌득르엥 베트남 주석(2002.5)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수장들의 북한 초청을 유도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ASEAN) 외교를 중시하여 군사·경제 협력을 통한 실리 획득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남아 국가들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6월 2일에는 북핵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하였다.

2011년 공식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 불포기'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에 있어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2000년대부터 국제 고립 탈피, 경제 회생을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 외교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핵실험 강행,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 제3절 북한의 대외관계

### 1 미국과의 관계

북한이 대서방 접근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미·소 간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 시기에 북한의 대미 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교 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sup>5</sup>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거부 등 이른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 제네바 합의’<sup>6</sup>를 끌어냄으로써 대미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 이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의 틀을 유지해 왔다.

1999년 9월 미·북 간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진 후 미국은 대북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여 한·일과의 공조 아래 향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경제 분야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과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으로 외교대표부 설치, 실종 미군 신원 확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명확한 조치 등 미·북 간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2001년 1월에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처음에 미·북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양측 합의사항 준수를 미국에 촉구하는 한편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점차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사회와 반테러 협력에 집중하고 있던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미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크게 반발하였다. 더욱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때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 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IAEA의 감시 아래 있던 핵 관련 시설의 동결을 2002년 12월에 해제하고 사찰관을 추방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이 미·북 제네바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쌍무 약속뿐만 아니라 NPT 및 IAEA 핵 안전 협정 등 국제 사회와의 합의 위반 행위이므로 북한의 핵 포기는 당연하고, 이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북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중재 노력으로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 포기'를 강조하였으나 북한은 '선(先) 미·북 회담, 후(後)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CVID)하도록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동시에 WMD 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sup>7)</sup>(PSI)으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갔다. 또한 북한 핵 문제는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틀에서 논의·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미국만이 문제 해결의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와 같이 미·북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다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다자회담이 바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6자회담의 주요 추진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8월 27~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 보장 및 정치·경제 부문의 혜택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 포기에 필요한 조치를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해 나가자고 맞섰다.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28일 개최됐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완



6자회담

전한 핵 폐기의 첫 단계 조치로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군사용 핵만 동결하고 평화 목적의 핵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핵 동결에 따른 경제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2004년 6월 23~26일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좀 더 융통성 있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핵 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이를 전제로 핵 개발을 동결하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임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2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항구히 제공하고, 미·북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여 경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 '핵 동결 대 보상 방안'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200만kW 상당의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등 보상 방안을 수용하면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 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2005년 9월 13~19일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9·19 공동성명'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공동성명의 이행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화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sup>8</sup>를 채택하였고,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하였다.

BDA 문제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을 바꾸면서, 미국과 북한은 양자 접촉 결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 8~13일 개최된 제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에서 BDA 해결을 전제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 구조 정착을 지향하는 '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위한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다.

2007년 3월 19~22일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 5개 실무그룹 보고를 청취하고 초기 조치 이행 및 다음 단계 행동 계획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7년 6월에는 그동안 6자회담 합의 사항 이행의 최대 걸림돌이던 BDA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자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IAEA 관계자들을 초청하였고, 영변 5MWe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 동결을 시작하였다.

2007년 9월 27~30일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른 비핵화 제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10·3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의 5MWe 원자로와 핵 재처리 시설 및 핵 연료봉 제조 공장 등 3개 핵 시설을 12월 31일 이전에 불능화하는 한편 핵 물질, 핵 기술, 핵 지식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프로그램 신고 목표 시한인 2007년 12월 31일을 넘겨 2008년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

표 3-1.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구분	주요내용
9·19 공동성명 (2005.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li> <li>-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침공 의사 부재 확인</li> <li>- 북한은 평화로운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 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에 동의</li> </ul> </li> <li>• 관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은 상호 주권 존중, 평화 공존, 관계 정상화 조치</li> <li>- 일·북 관계 정상화 조치</li> </ul> </li> <li>• 대북 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 경제 협력 증진</li> <li>-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li> <li>- 한국은 200만kW 전력 공급 제안 재확인</li> </ul> </li> <li>•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당사국들 간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협상 개회</li> <li>-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모색</li> </ul> </li> <li>• 이행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별로 상호 조율된 조치</li> </ul> </li> </ul>
2·13 합의 (2007.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단계 이행 계획: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li> <li>-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li> <li>- 미·북 관계 정상화 양자 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li> <li>- 일·북 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li> <li>- 중유 5만 톤 상당 에너지 지원</li> </ul> </li> <li>• 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li> </ul> </li> <li>• 다음 단계 이행 계획: 초기 단계 완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li> <li>-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li> </ul> </li> <li>• 6차 장관급회담 개최: 초기 단계 완료 이후</li> <li>• 한반도 평화 체제: 직접 관련 당사국 간의 별도 포럼에서 협상</li> </ul>
10·3 합의 (2007.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li> <li>•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li> <li>•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li> <li>•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li> <li>•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li> <li>•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노력</li> <li>•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li> </ul>

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월 26일 핵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10월 11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만료 100일을 앞두고 북



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해결 국면에 진입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같은 해 12월 8~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시료 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북한은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즉각 보도하고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 핵 확산 의혹 해소 등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대미 강경 태도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폐연료봉 채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맞대응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표 3-2. 6자회담 개최 현황

구분	개최기간	주요 결과	
제1차 회담	2003.8.27~29	·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2차 회담	2004.2.25~28	· 한반도 비핵화, 평화로운 해결 원칙 재확인	
제3차 회담	2004.6.23~26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의 필요성,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별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제4차 회담	1단계 회의	2005.7.26~8.7	· 9·19 공동성명 채택
	2단계 회의	2005.9.13~19	
제5차 회담	1단계 회의	2005.11.9~11	· 9·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 의지 확인
	2단계 회의	2006.12.18~22	·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재확인 및 이행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3단계 회의	2007.2.8~13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2·13 합의)
제6차 회담	1단계 회의	2007.3.19~22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2단계 회의	2007. 9.27~30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sup>9</sup>를 채택함으로써 국제 사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9년에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하고, 2010년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핵 능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2011년 7월과 10월에는 두 차례의 미·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대북 식량 지원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잠정 중단 조치 등 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의 선행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을 고집하였다.

당초 12월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제3차 회담은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연기된 뒤 2012년 2월 23~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미·북 양측은 2월 29일 제3차 회담의 합의 내용을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유예, 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비롯한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국은 24만 톤에 해당하는 영양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4월 16일 채택하였다. 성명은 대북 제재 단체 및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시 상응하는 조치를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하였다.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2·29 미·북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도발로 보고 '2·29 합의'에 따라 진행하던 대북 영양 지원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핵보유국 지위 요구와 평화 협정 공세를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sup>10</sup>를 채

택하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와 경고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sup>11</sup>를 채택했다. 이후 중국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미·북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중국과의 관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 상황으로 순치(脣齒)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을 토대로 하여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나라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세계사의 탈냉전 상황에서 이념보다 실리 경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커다란 곡절을 겪게 된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 이것이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적잖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8년여 동안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 교환 방문의 전통이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과는 제한된 의의에서나마 이데올로기의 동질성

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 고립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방중하면서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2001년 1월 15~20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김정일은 당시 양국 간의 상호 친선협조 관계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일은 상하이 시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하고 나서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서 성사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2001.9.3~5)은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쌀·석유·비료 등 지원과 대북 협력을 약속하고, 양국은 당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정치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

2003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통 계승, 미래 지향, 선린 우호, 협력 강화'라는 대북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5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실질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발전의 4원칙을 천명하였다. 4원칙은 고위층 상호 방문 전통 지속, 협력 내용이 담긴 교류 영역 확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모색, 적극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이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0~18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경제 중심 도시(베이징, 광둥, 선전 등)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방문하였다. 이때 박봉주 내각 총리,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리광호 당 과학교육부장 등 경제 관료들이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어느 때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을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는 대북 경제 전면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중 친선의 해(中朝友好年)'로 설정

하고 연초부터 고위인사 교류 등을 추진하여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1.22~24)과 원자바오 총리(10.4~6)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면담하였고, 북한 측에서는 김영일 총리가 수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3.17~20)하였다. 이러한 북·중 관계 속에서도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으로 양국 관계는 불편한 국면을 맞았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반대 성명 등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동참하였다.

김정일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협력 수요가 많이 발생했음을 방증한다. 2010년 5월 3~7일에는 단둥·다롄·베이징·선양 등지를 방문하고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층 교류 지속, 경제무역 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중국 측에서 발표했다. 2010년 8월 26~30일에는 지린·창춘·하얼빈 등지를 방문하여 창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6자회담,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등 경제 협력과 지원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에 연이은 중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모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기간(5.20~27)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친선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는 사안에 공감하고 2010년 8월 창춘 합의 이행 노력 인정,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등에도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당 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함으로써 3대 세습 지지를 간접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 측면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적 입장으로는 미·북 대화 및 6자회담 재개 등을 시도하여 대북 국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김정일 사망 이틀 후인 2011년 12월 19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가·인민 간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김정일의 사망이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정세를 안정되게 유지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양국 간의 공동보조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 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명분 아래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2년 7월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30일~8월 3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장성택(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 및 관리, 나선 경제무역지대 항구 및 산업구 투자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문 등이 조인되었다. 또한 2013년 상반기에도 북한과 중국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4년에 들어와서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 기조에 대해서는 유감과 비판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 조치에 대해서 미온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중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2·29 합의를 유지·이행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2년 11월 등장한 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채택에 찬성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모든 당사국에 역내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였다. 중국은 최근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2014.7)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 3 일본과의 관계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일본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부터 쌍방 간에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속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 간의 데탕트와 특히 미·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남북 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도 다소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수교 문제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회담은 1991년 1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까지 11차례 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등 과거사 문제, 북한의 핵사찰, 일본인 피랍자 등 현안에서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진행된 접촉과 대화에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던 일·북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포괄 해결하기로 하는 한편 ‘일·북 평양선언<sup>12</sup>’을 발표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10월 15일 납치 생존자 5명에게 일시 고향방문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일본 방문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월 24일 일본인 피랍 희생자들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고 일본에 영주 귀국시키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도 일본으로 귀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양측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년 만에 제12차 수교회담을 개최(2002. 10.29~30, 쿠알라룸푸르)하였으나 일본의 핵 개발 포기 요구 및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 차 등으로 차기 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2004년 5월 22일 김정일과 고이즈미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피랍 생존자 가족 8명 가운데 5명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고 미군 탈영병 찰스 젠킨스는 가족과 나중에 제3국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일본이 납득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 대신 일본은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며, 북한이 ‘일·북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제재 법안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일·북 관계 개선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사망한 후 2004년 12월 일본으로 송환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진위 여부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었고, 북한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2006년에 재개된 제13차 수교회담(2.4~8, 베이징)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였다. 회담 결렬 이후에는 일·북 간에 대화 채널이 단절되고 상호 비난이 강화되는 등 대립 국면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한편 일·북 간 전세계 일본 착륙 금지, 북한 당국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모든 북한 상품 수입 금지 등 대북 제재 독자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7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되면서 일본과 북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2·13 합의 제2조 4항에서 일·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개시하기로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2008년 6월 11~1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조사 실시를 약속하는 한편 항공기 ‘요도호’의 납치범 및 가족을 일본 정부에 인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인도주의 차원의 물자 수송 선박에 한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일·북 간 민간인 왕래 금지 조치 해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에 출범한 아소 다로 정권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일·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년 4월 장



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2009.6.12)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등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이 2009년 9월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선 북핵·납북자 문제 해결, 후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북한은 일본이 납북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불참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하였다며 일본에 6자회담 참가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2010년 6월 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북 간 대립은 지속되고, 북한에 의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3월)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11월)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또한 2011년 8월 노다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 미·북 회담, 6자회담 등과 관련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였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대일 외교는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 문제 협의 이후 4년 동안 정체되었다가 2012년 8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북 간 적십자회담으로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일본 측이 요청한 북한 영내에 있는 일본인 유골 문제 논의가 있었다. 또한 8월 29일 일·북 정부 간 과장급 예비회담이 열린 데 이어 2012년 11월 15일과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은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 문제에 관해 북한 측이 “납북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진전 없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후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지마 내각관방참여가 방북하고, 2014년에는 일·북 간 국장급 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다.(2014.3, 2014.5, 2014.7) 특히 5월 26~28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일·북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재북 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측은 재조사 개시 시점에 민간인 왕래 규제, 송금·휴대금액 제재, 인도주의 목적 아래에서의 북

한 국적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7월 4일에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일본도 같은 날 합의한 세 가지 대북 제재의 해제를 공식 결정하였다.

#### 4 러시아와의 관계

탈냉전 시기 이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의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군사·이데올로기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강 등도 지원하였다. 북한은 특히 1961년 7월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965년 5월 ‘조·소 군사원조 협정’, 1966년 6월 ‘기술 및 경제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 및 경제 지원 등을 받았다. 김일성은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등거리 외교로 중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주 노선을 표방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구사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북·러 관계 설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위원회(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 지대 투자 확대와 대북 원유 제공, 금속공업 제품 교환 등 양국 간 무역 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 관계도 차츰 회복되어 갔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핵심 쟁점인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지하고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

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체결에 이어 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김정일과 푸틴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sup>13</sup>’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김정일은 2002년에도 러시아를 방문(8.20~24)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TKR와 TSR 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2007년 3월에는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고, 10월에 북·러 차관급 협의회도 4년 만에 개최되는 등 경제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러시아가 미·일 경계 차원에서 북한을 지지하였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안보 후견국으로 러시아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속되었다. 2008년 4월 모스크바에서 나진-두만강 철도와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북·러 협조 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초 평양에서 나진-두만강 철도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북·러 수교 60주년을 맞아 10월 4일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도 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의 방북 등 교류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을 공개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동참하였다. 2010년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다소 소강 상태였으나 2011년에는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를 방문(8.20~25)하였다.金正일은 8월 24일 올란우데 군부대 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경제 협력, 가스 수송관 건설 문제 등을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 13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항공운수국 대표단과 북·러 간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도 북·러 관계에서 친선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9월 북한은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기에 제공한 차관과 관련된 채무(110억 달러)의 90% 정도를 탕감 받는 재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sup>14</sup>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일행, 2014년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친선 관계 발전과 상호 관심사 문제를 논의하는 등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 9월 22일에는 북한 북동부 경제 특구인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방의 하산을 잇는 약 54km의 철도가 개통되어 양측 열차의 직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또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이 대북 차관을 탕감하는 협약에 비준하고, 2014년



북·러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공사

6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양측 간 무역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과 같은 3자 협력 계획으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을 도모하며 실리를 취하는 한편 남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취하는 정

책을 펴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5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 (1)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4일에는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해 서방 접근의 발판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가운데 외교 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서방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 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유럽연합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1.4),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13년까지 프랑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유럽연합 국가와 경제 측면에서 관계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3월 유럽 순방에 나선 리광근 무역상을 포함한 경제대표단은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을 방문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 시찰 및 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럽연합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sup>15</sup>

유럽연합의 대북 경제 관계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경제 개혁 관련 워크숍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북한 외무성이 공동 주최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경제 전문가와 외교관들을 참여 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제1차 워크숍에서는 2004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유럽연합·북한 경험 발전 방안, 북한 경제 현대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2차 워크숍은 2005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경제 관리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 외자유치 전략, 국영기업과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제3차 워크숍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되어 농업 및 경공업 분야, 무역 투자 활성화, 금융결제시스템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 대화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하여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을 주도해 왔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법에 따른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총회가 북한에 인권 개선 조치를 지속해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11월 유럽연합이 유엔에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 이후 북한과 유럽연합 간 대화는 단절되었으나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일정한 진전이 합의된 이후 재개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의 제2차 핵실험은 양자 관계를 냉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유럽의회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6월 17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을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 및 유럽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일부 교류는 있지만 핵과 미사일 및 인권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다.

## (2) 기타 국가와의 관계

북한은 유럽연합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이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비동맹 국가들로 외교 관계를 확대할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후 북한은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활발한 비동맹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1980년대 초 ‘자주·친선·평화’의 대외정책 기본 원칙 제시를 계기로 북한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소련과 유럽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냉전 체제 해체와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체제 생존이 급선무이던 북한에 비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는 더욱 중요하였다. 여기에 유엔에서의 남북한 대결에서 절대 지지가 필요하던 상황도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 관계 강화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

북한이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지속 추진해 온 배경에는 ‘반제·반미 공동전선’ 형성과 북한의 통일 방안 지지 획득, 유엔에서의 비동맹그룹 국가 수의 우세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들에 자신들의 핵 보유가 자위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동맹국들과의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비아, 시리아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기준으로 북한의 수교국은 아시아·태평양 24개국, 아메리카 22개국, 유럽 47개국, 중동 16개국, 아프리카 45개국 등 총 154개국이었다.

이후 2006년 미사일 발사, 제1차 핵실험으로 한동안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2·13 합의' 도출 이후 2007년 상반기에 북한 대표단의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방문이 10건으로 북한 대표단 전체 외국 방문 비율의 52% 이상을 차지하는 등 예전 수준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에도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라오스 총리 일행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북한 외교 대표단의 싱가포르와 이란 등 아시아·중동 지역 방문이 추진되면서 비동맹국 외교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외교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2010년 들어 가봉·감비아·세네갈 등 아프리카 지역과 베트남·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2011년과 2012년 몽골·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방북과 북한 외무성 대표단의 몽골·탄자니아·나미비아·모잠비크 방문 등 비동맹국 외교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자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2013년 6월 김격식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하였으며,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제2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파견하여 수교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2013년 8월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박의춘 외무상은 기니·베냉·민주콩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여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3년 9월 몽골 경제무역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은 몽골과의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의 위원회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초청으로 2013년 10월 몽골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김정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4년에는 2월 외무성 대표단이 이란, 4월 경제 대표단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수개국, 5월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알제리 등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3월에는 몽골 대표단이 방북하기도 하는 등 북한은 비동맹국 외교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표 3-3. 남북 수교현황 (2012년 12월 기준)

지역	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 수교국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아시아	36	26	26	10	0
아메리카	34	24	23	11	1(쿠바)
유럽	53	49	48	5	1(마케도니아)
중동	20	17	16	4	1(시리아)
아프리카	46	46	46	0	0
계	189	162	159	30	3

주: 한국은 세계 총 191개 유엔회원국(남북한 제외)중 188개국 및 유엔비회원국인 교황청과 수교- 미수교국 :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

출처: 외교통상부, 『2013 외교백서』, p.358.

# Footnote

- 1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감을 조성하는 전술이다. 냉전 시기 미·소 간 대립 상황에서 외교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양측이 사용하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위협 조치와 협상 행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2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주요 문헌집」,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56, p.12
- 3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8.12
- 4 「조선중앙연감」, 1972, pp. 269~270
- 5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1968년 7월에 조인되어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5년, 북한은 198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고 같은 해 6월 탈퇴를 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1월에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 6 미·북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1993.3)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4년 10월에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및 특별사찰 수용, 5MWe 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 후 제3국으로 이전 등이다. 미국은 북한 지역 내 경수로 발전소와 경수로 1기 완성 때까지 연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합의 사항 이행은 중단되었다.
- 7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5월에 발족한 국제 협력 체제다. WMD 비확산을 위해 가입국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때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6일 가입하였다.
- 8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2006.10.9)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 따라 국제 사회는 물적 규제(재래식 무기, WMD 관련 물자, 사치품), 금융 규제, 출입국 규제, 화물 검색 등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 9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2009년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서는 화물·해상 검색

# Footnote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10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87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12)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와 제1874호의 제재 조치를 강화·확대하여 2013년 1월 2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서는 제재 대상 확대, 금융기관 활동 감시 강화,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였다.
- 11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의 제재 조치를 강화·확대해 2013년 3월 7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는 의무조항 5개를 포함하여 수출 통제, 항공·선박 규제, 금융 압박, 북한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됐다. 제2094호는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억제 및 완전 포기를 위해 기존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한 강력한 결의로 평가된다.
- 12 일·북 평양선언으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국교정상화 후 대북 무상 자금 및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 경제 협력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핵 문제의 포괄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13 북·러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쌍방의 협조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북·러 신조약 정신 확인, 상호 침략 또는 안전 위협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 유엔 헌장 목적·원칙 존중과 이 헌장을 위협하는 힘의 사용·위협 반대, 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준수, 북한 미사일의 평화 성격 강조, 아·태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TMD) 구축 반대, 국제 경제 협조와 확대, 쌍방 무역·경제 및 과학 기술 연계 적극 발전 등이다.
- 14 2012년 9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의 이전 소련 시기에 제공된 차관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에 진 빚 조정에 관한 협정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15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공민들은 며칠 내로 달러

계좌를 이전시키고 현금을 다른 나라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북한 무역은행이 선포했다”고 하면서 “북한 내 모든 은행은 달러 계좌를 유로 계좌로 이전시키게 됐다”고 보도하였다.(2002.12.2)



# IV

## 북한의 군사 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제2절 북한군의 군사 정책과 전략

제3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제4절 북한의 군사력

제5절 대외 군사 관계 및 대남 도발

## Key Point

### 01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 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02

북한의 군사 전략은 강성대국을 표방한 이후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부대, 전자전 등 특수전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전략무기 개발 행위는 극단적 성격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전력 우위를 확보하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어 내는 수단으로도 악용함으로써 동북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03

북한은 오랜 기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하여 건물·교량·항만·도로 건설, 위탁 경영, 영농 관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군부대는 사금 채취, 외화 벌이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군 조직이 자체 생존을 위한 경제 단위로 변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04

예비 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인구 대비 세계 제1위의 병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 측에 테러를 감행하거나 기습 공격하여 단기간에 주요 지역을 점령하려는 제한전, 자원 병력 도착 이전에 우리 측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전속결 군사 전략도 지속하고 있다.

##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 1 북한군의 형성 과정

북한군의 창설은 1945년 8월 광복 직후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건당·건군·건국’이라는 3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 조직인 당을 최우선으로 결성하고 1945년 10월 12일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탄약·군용물자들을 군경무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 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 위원회들은 소련군 사령부와의 협의 하에 기정된 인원 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sup>1)</sup>”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 따라 광복 직후 북한 지역의 치안을 목적으로 조직된 민족 진영의 자위대, 국내파 공산 계열의 치안대 등을 해산시키고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한인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적위대를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 북한군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군 내 정치 장교와 군사 간부 양성을 위해 1945년 11월 ‘평양학원’, 1946년 6월 ‘보안간부학교’ 등 군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각 지역에 조직된 보안대를 통합·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訓練大隊部)를 창설하고, 1947년 5월 이를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1948년 2월 4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내에 현재 인민무력부의 전신인 ‘민족보위국’을 신설하였으



며, 정권 수립 7개월 전인 2월 8일에는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하고 정규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1978년부터 인민군 창설일을 항일 유격대 창설일인 1932년 4월 25일로 변경하여 기념해 오고 있다.

해군은 1946년 6월 5일 수상보안대 사령부를 원산에 창설(동해 수상보안대-원산, 서해 수상보안대-남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1946년 8월 사령부를 평양으로 이전·확장하였으며, 1946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고 1947년 6월 원산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두었다. 이 간부학교는 나중에 해군 군관학교가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9년 8월 20일 내무성 관할에서 민족보위성 관할로 변경되면서 8월 28일 처음으로 ‘어뢰정대’를 창설함으로써 정규 해군으로 발족되었다. 북한은 어뢰정대 창설일인 8월 28일을 1972년 6월 3일 정령에 의해 ‘해군절’로 정하여 1992년까지 기념해 오다가 1993년부터 수상보안대 창설일인 6월 5일로 변경하였다.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 기구로 발족한 신의주 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 항공중대로 편입되면서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 8월 20일 소련 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 출신 300여 명을 중심으로 창설된 비행대는 1948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과 함께 항공대대로 증편됨으로써 정규 공군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72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비행대를 창설(1947.8.20)한 날짜를 ‘공군절’로 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김일성이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날짜(1945.11.29)를 ‘항공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 2 북한군의 성격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 ‘자위’ 및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 및 수령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 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를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 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 뿐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군의 위상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이른바 ‘선군정치’ 이념 체계 아래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는 표현에서 보듯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군이 국가 제반 부문의 중심이 되는 정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운을 김정일과 동일시하고 전군의 수반, 영원한 단결의 중심, 최고 영도자로 우상화하여 김정운 중심의 유일 영군 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 **3**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북한이 정권 수립(1948.9)보다 7개월 먼저 군을 창건(1948.2)한 사실에서 보듯 북한에서는 군을 수령과 당의 혁명통일 무장력으로서 최우선 배려하며 양성하고 있다. 북한이 북한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향후에도 권력 기반을 군대에 두면서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 정책 기조는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 헌법에서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이를 명문화했다.

표 4-1. 4대 군사노선

노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을 정치 사상, 군사 기술로 단련시켜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무장해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전민 무장화	인민 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 사상, 군사 기술로 무장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 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89.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방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 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방 부문 중앙 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시켰다. 북한 헌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무력이란 정규군 119만여 명은 물론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보위사령부와 인민보안부 및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예비 병력 770만여 명을 망라한 무력 개념이다. 또 국방 관리 전반은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함을 뜻한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아래 혁명과 건설을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으로써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가 구축되었다. 김정일 사망 직후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김정일 유훈(2011.10.8)에 따라

최고사령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비서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 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은 “군사력 및 외교력의 관계는 현금 및 수표 관계와 같다”는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사력 확보를 담보로 한 대외관계 유지와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최근에는 경제 건설과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군 병력을 대형 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공사, 목장, 양어장 등 각종 경제 건설 현장과 위탁영농·어로활동·검문 등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군의 작업 모습

그럼에도 북한은 악순환되는 ‘경제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economy)’ 현상으로 국가 경제의 군사 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의 군사화 현상은 스탈린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난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경제의 군사화’는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째로 군사비 충당을 위해 주민의 담세율이 증대한다. 둘째로 국민경제의 군사 의존도 심화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의 왜곡은 물론 민수자원 공급이 위축된다. 셋째로 완성재와 원료의 대부분을 비생산성 군비에 할당하게 된다. 넷째로 민간 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를 저해한다. 다섯째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 기공 강요로 자유롭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 형성을 저해한다.

중국은 ‘경제의 군사화’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해 군수공장에서 민수품 생산 비중을 높였고, 이는 1979년 8.1%에서 1990년에 62%로 급증하였다.<sup>2</sup> 반면에 현재 북한 사회에서 ‘경제의 군사화’ 현상은 경제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제2절 북한군의 군사 정책과 전략

### 1 정책 기초

북한의 군사 정책 기초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의 전쟁 총동원 태세 견지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자위노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sup>3</sup>”이라며 군사 자위 노선을 강조하였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 사태와 중·소 이념 분쟁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결의하였다.<sup>4</sup>

이러한 국방 자위 원칙의 명확한 실천 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은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로 제시

되는 4대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 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sup>5</sup>”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 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은 <표 4-2>와 같다.

표 4-2.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구분	내용	비고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건설과 군사 건설의 병진</li> <li>전당·전인민의 전쟁 동원 태세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 의존 정책에서 탈피</li> <li>1969년 특수 8군단 창설</li> </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형 군사공업 기지 완성으로 신기원의 자위력 육성</li> <li>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 전술 위주 교리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쟁 독자 수행 능력 향상</li> <li>후전선에 남침용 땅굴 건설</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투 동원 태세 완비</li> <li>예비 전력의 정규군 수준화</li> <li>현대전 능력 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 설치</li> <li>SCUD 미사일 개발 및 배치</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민 일치 강화</li> <li>전국가·전인민 방위 체계 강화</li> <li>전략무기 독자 체계 구축</li> <li>선군정치론 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 중시, 군대 원호 기풍 진작</li> <li>노동미사일 개발·배치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li> <li>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방 배치</li> </ul>
200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공업의 선차적 역량 집중</li> <li>‘선군사상’ 헌법 추가</li> <li>‘핵보유국’ 헌법 명문화</li> <li>‘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차례 핵실험(2006.10.9, 2009.5.25, 2013.2.12)</li> <li>대포동 2호 시험 발사(2006) 등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li> </ul>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 개요」, 2009, p.90.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1980년대 인민군의 당면 과업으로 ①군대 내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②전투·정치훈련 강화 ③군사기술의 수준 향상 ④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선언하였다.<sup>6</sup>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

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통일 혁명 무력과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군사 전략

북한의 군사 전략은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 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한 기동화부대로 하여금 고속으로 중심(縱深)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에 남한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 공격 능력, 고속 중심 공격 능력, 선제 기습 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했다. 1980년대 말에는 이미 군사력의 전진 배치, 기계화 군단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 확보, 장거리포 추가 전진 배치 등 2~3개월의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속전속결 공세형 군사전략,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 과시, 강대국에도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WMD)로서의 비대칭 억지 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로 나타났다.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 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

습 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 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으로 인구 수가 북한 전체 인구와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수십 배가 되는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는 제한전 기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갱도화되어 있어 우리 측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수습 곳의 비행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 장비의 집중 및 전진 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을 여전히 군사 기본 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 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 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 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표 4-3.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구분	과업 내용
목적	목표물 습격 파괴, 후방 교란, 테러, 통신소·미사일기지·비행장 등 주요 전략·전술 거점 무력화
저격여단	주 전선 돌파, 82mm 박격포 및 방사포로 전략 목표물 타격, 국군 위장 침투 교란, 조직 구축
해상저격여단	함선·레이더기지·보급기지 기습, 유격전, 고속보트·공기부양정 보유
공군저격여단	공군기지 장비·시설 타격
항공육전여단	병참 시설 파괴, 증원 차단, 거점 확보
군단정찰대대	밀로 개척, 납치, 정찰, 폭파
경보병여단	핵심 지역 장악, 지휘소 습격, 대부대 지원 6개 대대 6개 중대 편성(120명) 60mm 박격포, 휴대용 미사일 보유

출처: 유관 기관 자료 종합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 추구는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 구조가 전시 산업 구조로 전환되고 인력·물자가 본격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 역량이 군사 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0년 하반기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건설 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 대동로’(땅굴) 작업을 명령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사례처럼 땅굴 침투 부대와 지하당 세력을 연계시켜서 불의의 기습으로 상대측의 응전을 어렵게 하려는 전술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는 광산갱도와 지하 대피호를 포함한 지하시설물이 8,2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1970년대 후반부터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수입한 TBM 장비 300여 대(한국은 20여 대 보유)가 북한의 갱도, 지하시설 공사에 활용되고 있다.

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2)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sup>7</sup>

배합전략이란 중국 마오쩌둥의 유격 전략과 옛 소련의 군사 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을 의미한다. 핵심 내용은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붙들어 두고 후방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주민 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 전략은 이론상으로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전의 교리나 현실 능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도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전쟁 지속 역량을 고려할 때 결코 북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전쟁의 승패에는 병력 수,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 요소가 아니라 전장 종합 환경, 병력의 교육 수준, 무기의 질, 과학·기술 수

준,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마찰, 우발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수중 전력, 상비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면서 국제 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군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교훈 삼아 1990년대 이후부터 전방 부대의 정보병화로 특수전 병력을 기존의 10만에서 20만으로 확충, 유사시 포병 및 미사일에 의한 선제 공격 후 전후방 특수전 부대 동시 투입으로 우리 군의 전략 요충지에 대한 선제 타격 및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부대 창설 및 평시 대남 사이버 도발 등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화력·기술력 열세 만회를 위해 4세대 전쟁<sup>8</sup> 방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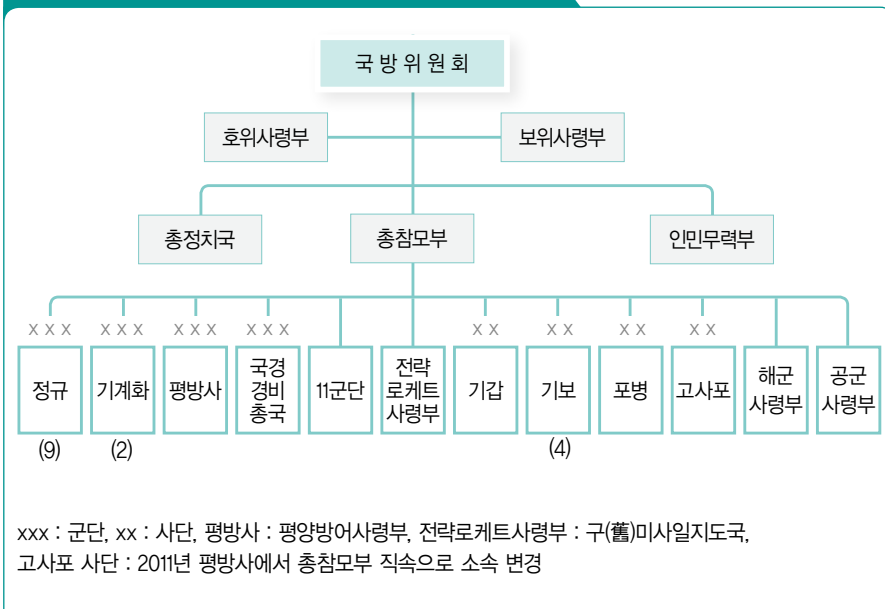
## 제3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 1 군사 조직

#### (1) 군 지휘 체계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은 국방위원회다. 국방위원회는 국방 사업 전반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직접 장악하였으며,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그림 4-1.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



출처: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5.

제1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군 최고사령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 군사 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핵심 시설 경비 임무 등을 맡고 있다. 보위사령부는 반체제 세력을 단속하는 군 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을 통해 군 인사와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 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다.

## (2) 군사 기구

### 국방위원회

북한의 주요 군사 기구로는 국방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등을 들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 때 신설된 이래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을 개정할 때 최고 군사지도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8년 헌법에서는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자 국방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조정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선군혁명 노선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②국가 전반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③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지시 사항 이행 ④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 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⑤국방 부문의 중앙 기관 설치 및 폐지 ⑥군사 칭호 제정 및 장령(장성)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등이다.

한편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무력 전반의 최고 사령관이며, 국가 무력의 일체를 지휘·통솔한다.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이

국가 영도자로서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게 하였다. 이는 국방위원장이 단순한 국방 부문의 수장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 최고 통치자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헌법 개정에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김정은은 예전의 국방위원장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되었다.<sup>9</sup>

### 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1982년 11월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 정책의 수행 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북한의 권력 구조와 의사 결정 기구의 특성상 노동당이 모든 최종 결정을 행사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며, 군과 관련된 문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2월 3일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혁명 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 결정되었다”며 군사력 강화 문제가 논의되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2013.2.3)가 있는 9일 후인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 총정치국

총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으로 군 내에서 당의 정치 사업과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총정치국의 업무는 전군의 주체사상 무장, 군대 내 당의 유일사상 확립, 군대 간부·당원들의 당 생활 조직·지도, 공산주의 교양 교육 실시, 군부 내 당 및 청년동맹조직 사상 교양을 위한 선전 선동 사업, 3대혁명 불은기 쟁취운동 등 각종 운동 및 군 사기 대책 수립과 추진, 장교의 보직·보충·이동·승급·제대 관리 등이다. 또한 군대 지휘관이 당 정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저지하고 시정시킬 권한도 있다. 대대급까

지 정치부를 두고 연대급 이상은 정치위원, 대대급 이하는 정치지도원을 각각 파견하여 각급 군사지휘관의 사업을 당 차원으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총참모부

총참모부는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의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집행기관으로, 육·해·공군의 군사작전 종합 계획을 지휘·관리·통솔한다. 총참모부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집단군 총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로 개칭되었다. 1970년 초반 이후부터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의 직책으로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해 군을 직접 지휘·통제하였다. 이러한 군에 대한 지휘는 김정은 시대로 바뀐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 북한 군부 무력은 총참모장 예하에 군종·병종별 부대가 편제된 통합군 체제로 되어 있고, 인민군의 모든 정치·군사 제대 및 부서들은 군사 체계로 총참모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 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때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 때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현 내각)에서 분리되었으며, 1986년에 중앙인민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인민무력부는 1998년 9월 인민무력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0년 9월 9일 다시 인민무력부로 환원되었다.<sup>10</sup>

## 2 군사 제도

### (1) 병역 제도와 병영생활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는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조건도 입영대상자 부족, 여군 비율 축소로 말미암아 더욱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 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가운데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 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 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는 정책상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근무 연한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고 2003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진민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자는 10년, 여자는 지원 시 7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각각 단축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11</sup>

부대에 따라 10~30% 비율을 차지하는 여군은 대개 수송·행정 부서에 배치되거나 위생병·통신병·초병(교량, 터널)으로 근무 또는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대를 운용한다.

군관이나 하전사를 불문하고 군기 사고자는 제대 후 직장 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병영 생활에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 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

수사항<sup>12</sup>이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만들어졌다.

북한군 총정치국에서는 군 내 통솔과 단합을 위해 각종 운동을 경쟁하며 전개하고 있다. 대표로 들면 중대급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 중대 쟁취운동', 연대급으로는 '오중흡 제7연대 쟁취운



북한 여군 포병의 훈련 장면

동', 사단·여단급으로는 '금성친위부대 쟁취운동'이 있다. 판정 결과가 양호하면 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 공급이 우선으로 이루어진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 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는 부모 사망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 정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군 복무 기간에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는 약 20%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군 병사들은 주요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평균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건설, 영농 등 비군사 노동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한편 부대 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체로 주둔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1일 세 끼 쌀밥에 야채, 절임 등 반찬 2~3가지가 기본이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단별로 임시 보양소를 운영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외부 지원의 영향으로 부대의 급식 상태는 2000년 이후부터 다소 나아졌으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지원을 외면하자 다시 악화되었다. 영양 보충을 위해 독립 소대부터 사단 본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대가 염소와 돼지 등을 직접 기르고 있는 상황이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군 의관 8~10명, 여군 간호병 10여 명),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때는 사단 군의소



(군의원 20~25명, 여군 간호병 50여 명), 15일 이상~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술 환자는 종합병원 성격의 군단 야전병원(군의원 60~70명, 여군 간호병 포함 민간인 여성 간호원 130명 정도)으로 각각 후송되거나 감정제대<sup>13</sup>하게 된다. 입원 환자 가운데에는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 벌이, 영리 활동, 근로 동원 등 수익 사업을 위한 비군사적 업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부수입이 많아 경제 사정이 다소 나은 국가안전보위부 예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 관계를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2) 계급 구조와 당 조직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리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6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장성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하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①우리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와 만기 후 장기 복무를 하는 초기복무하사, 중사, 상사가 있다. ②일반병은 상등병과 전사로 구분하되 사기 진작과 서열 중시를 위해 다시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4등분하고 있다.

북한군 장성 계급 서열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등 순의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최고 서열인 대원수로 추대하면서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김정일도 사망(2011.12.17) 후 2012년 2월 14일 대원수로 추대되었다.

표 4-4. 군 간부 양성 과정

계급	과정	비고
징집 대상	군사동원부 차출(특수부대 우선, 해·공군, 지상군 보병 순)	특수부대, 특과 우선
훈련병	각 부대 신병교육대(일반 3개월~특수부대 9개월)	신병교육 기간은 경제난으로 다소 감축
병사	전사→초급병사→중급병사→상급병사	5~7년 경과
하사관	하사관학교(3개월) 하사→중사→상사→ 특무상사(사관장) * 경보병, 민경, 저격병은 우수병사(3~5년 근무) 추천을 통해 5년 이내 하사 진급	대개 10년 거쳐 중사로 제대
소위	군관학교 2년(지휘자반: 최우등 시 중위 임명) 4년(대학반: 중위)	군관학교에서 정치·군사 교육은 5:5 정도 이나 군사대학에서는 3:7 정도로 배분
중위	2~3년 경과 진급	
중대장	4~6년 경과 후 지휘관	
대대장	3~7년 경과 후 김일성군사대학(3년) 졸업	
연대장	이상 김일성군사대학 전술연구반(2년) 수료	장성은 명령만으로 진급

출처: 유관 기관 자료 종합

한편 북한군 내의 모든 각급 부대에는 군사 계통의 참모부, 정치 계통의 정치 부, 보위 계통의 보위부가 각각 존재하고 있다. 각급 단위에는 당 조직이 구성되어 북한군에 대한 정치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 기능 실제 행사를 의미한다. 북한군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가 있고 연대급 이상에 ‘당 위원회’, 중·소대 단위에 ‘당 세포’ 및 ‘당 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당 위원회와 별도로 군 내에 정치 기관을 조직해 놓은 가운데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이 정치 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sup>14</sup>을 각각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 업무와 군대 내 정치 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 내 정치 조직과 별개로 당 비서국에서 직접 통제·관여하고 있다. 북한군 일반 사병들은 약 20%, 특수부대는 약 40%가 각각 당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군 내에는 부대 단위에 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이는 각급 당 조직과 정치 기관의 지도 아래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군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官兵一致), 당사일치(黨社一致), 상하일치(上下一致)를 강조하고 있다.<sup>15</sup>

북한군 내에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 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이 전시 국가관리 체제에서 영토 및 체제 보전 임무를 넘어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혁명목표 달성과 권력자 보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통수권자 입장에서도 군대를 분리 통제하는 것이 권력 유지 및 지휘 통솔에 유리한 배경이 있다. 이러한 정치, 보위, 군사의 3개 조직이 중첩으로 짜인 북한의 군대는 1인 독재 체제에 순응하기 쉽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제4절 북한의 군사력

### 1 상비 전력 및 장비

2012년 1월 기준 북한의 상비 전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19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총 병력 63만 9,000여 명의 1.9배 규모다. <표 4-6> 참조)

#### 지상군

북한의 지상군은 9개 전·후방 정규 군단, 2개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총국, 전략로켓트사령부(구(舊) 미사일지도국), 11군단(구(舊) 정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전방 지역에는 4개 군단 산하 기존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고 별도로 각각 1개의 경보병 사단을 신편하였고, 지상군 전력의 약 70%가 평양~원산 이남의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강습돌파(強襲突破) 위주의 전격전 개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남한의 수도 서울이 근접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



북한군의 야포 포격 훈련 모습

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지상군 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부대, 전차 부대, 특수 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 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부대, 기계화 부대, 미사일부대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 구조로 위용을 갖췄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여 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는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수 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격 시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 부대를 대부분 기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몇 배 규모나 되는 위진지 및 모의 장비, 전방 전개 지역에 공격 시 이용할 대량의 갱도 진지 등은 추가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 공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 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 장비 가운데 전차는 주력인 T계열 신형 전차

표 4-5. 북한 지상군의 정기 훈련 및 활동

시기	내용
1~2월	야외전술 훈련 준비, 병종별 기동훈련, 공병 정찰, 부서 전개훈련
3월~	연대·사단급 실탄 사격 종합훈련
5월~	병영 보수, 도로 작업, 부식 발 묘종
6월 중순~	하기훈련 시작 집체훈련: 정치상학, 대열훈련, 체육 야외훈련: 병과별, 반토굴형 숙소
7월 하순~	장마철 도하훈련, 전투수영, 행군훈련, 습격·방어 훈련, 실탄 사격
10월	월동준비: 농산물 수확, 채소 저장, 화목 작업, 병영 보수
11월	동기훈련 준비: 전투 기자재 점검
12월	오전: 실내사격 훈련 등 병영 위주 훈련 오후: 무장 강행군, 체육, 대열 훈련, 야외 사격 훈련

출처: 유관 기관 자료 종합

(T-62/72 등)가 주종을 이루며, T-54/55 전차는 도태시키면서도 일부 구형 전차와 경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 대수는 4,200여 대이며, 이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400여 대의 1.8배 수준이다. 한국이 다소 우수한 전차와 대전차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장중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일단 북한이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8,600여 문(구경 76.2mm, 100mm, 122mm, 132mm, 170mm 등)의 곡사포 및 평사포와 4,800여 문(구경 107mm, 122mm, 132mm, 240mm)의 방사포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사포 등 1만 1,000여 문에 이르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천마호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 미사일 등은 성능 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한 폭풍호 전차 생산, 23mm 자주 대공포의 도입·생산·배치 등 장비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 해군

북한 해군은 총 81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0%가 전방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 지원정 등 420여 척이다. 또 고속상륙정 90여 척과 공기 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함정이 260여 척, 잠수함(정)이 70여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 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먼 바다에서의 작전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소형 잠수정 보유와 전진 배치로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 해역에서 대지·대함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

사일을 배치했다.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덕적도,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공기 부양정(고속 상륙정)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 장비는 40~52 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 능력이 있어서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해군 전력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2개 해상 저격 여단, 40여 개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잠수함 전력, 신형 어뢰, 수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측 해군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공군

북한 공군은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으로는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30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는 전투 임무 기종의 약 40%를 전진 배치하여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해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가운데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아 전장 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 요격 및 대지 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20여 개의 작전 기지와 예비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군사력만이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군사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7년에는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 훈련과 특수부대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 훈련을 대폭 증대시켰다. 또한 1998년 3월에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 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공개리에 전시동원

표 4-6. 남북 군사력 비교(2012년 1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 (평시)	계		63만 9,000여 명	119만여 명	
	육군		50만 6,000여 명	102만여 명	
	해군		6만 8,000여 명	6만여 명	
	공군		6만 5,000여 명	11만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5
			사단	46(해병대 포함)	88
			기동여단	14(해병대 포함)	72(교도여단 미포함)
		장비	전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2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200여 대
			야포	5,3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4,8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3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 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60여 대	82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	4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9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80여 대	300여 대	
	예비전력 (병력)			32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사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한국의 군사력에 제시된 해군 병력은 해병대 2만 8,000여 명을 포함. 지상군 부대(사단, 여단) 및 장비는 해병대 전력을 합산  
 \* 북한군 야포 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 제외  
 \* 질적 평가 표현은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양적 수준으로만 비교  
 출처: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89.

령을 선포하는가 하면,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도상 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浮舟)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 1999년에는 대



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 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 전시 대비 태세와 훈련 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전자전 부대를 창설하여 군사 전문 해커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전선 전역에 대남 비방방송이 중지된 반면에 부대 내의 정치사상 교육은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훈련은 감소되었으나 특수부대와 통신부대의 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 제일주의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전 대비 해커 대폭 양성, 경비병 부대 증편, 야간·산악·시가전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자전과 정밀 유도무기 회피 대책을 강구하고자 전자·전파 교란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2 예비 전력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全民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 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 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띠는 노농적위대,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 가운데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한 교도대를 각각 조직하였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예비 전력에서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행정 단위와 직장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에 입대한 대학생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학년 중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와 공용화기

표 4-7. 북한의 예비전력

구분	규모	비고
교도대	60만여 명	전투 동원 대상 - 남자: 17~50세, 미혼 여자: 17~30세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 예비군 성격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중학교 군사 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인민보안부,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계	770만여 명	

출처: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9.

70~80%가 지급되고 훈련 시간이 연간 500시간에 이르는 등 고강도 훈련, 부대 편성, 장비 보유로 현역에 못지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동원되어 후방 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 병력은 60만여 명이다.

노농적위대는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군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17세 이상 60세까지의 동원 가능한 남성, 17세 이상 30세까지의 여성 가운데 교도대 비편성자를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 경계, 지역 및 대공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다.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570만여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의 교내 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 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실탄 사격 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 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 역할을 한다. 유사시에는 군 하급 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된다. 훈련은 연간 450시간(과거 270시간) 가까이 받고 있다. 현재는 약 100만여 명이며, 인원과 훈련 시간이 대폭 증가되었다.

기타 준군사 부대로는 인민보안부와 군수동원지도국, 경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

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 병력이 있다. 이들은 즉각 동원이 상시 가능하다.

### 3 핵 및 전략무기 개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로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하여 국제 사회의 반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 사회는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국제 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 핵무기

이미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 연구소인 ‘듀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 인력은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하여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북한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sup>17</sup> 핵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자력 관련 질병에 걸린 과학기술자도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 완성에 주력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1994.10.21)로 대북

경수로 제공,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 등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및 IAEA 사찰 수락에 합의하였다. 그 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협상, 경수로 공급 협정에 합의하였다(1995.12.15).

그러나 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 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1997.2.11)하고 유엔 연례핵군축회의(1997.2.25)에도 불참하였다.

이어 북한은 9·11 테러 이후 미·북 간의 입장차와 미국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때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은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의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10일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으로써 핵 문제는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6자회담이 표류하던 중 북한은 한국 및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에 2006년 10월 14일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가 채택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핵 폐기와 금융 제재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 차이로 성과 없이 폐막되었다. 그 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북 베를린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

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가 합의되었다.

이 합의는 미·북 사이에 이루어진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 달리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였고, 5개국 간 균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북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주요시설 세 곳(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제조 공장)을 폐쇄하는 등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핵 신고서는 목표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겨 2008년 6월 26일에야 제출되었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서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검증 절차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이 시료 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2006.10.14)를 무시하고 2009년 4월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리는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고 엄격한 무기 금수, 금융 제재, 화물 검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9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대내 결속 및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대로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강행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8일 북한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4년에 들어와 북한은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하고 있다.<sup>18</sup>

## 미사일

북한은 미사일 기술 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 생산 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스커드 B 및 C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리비아 등 중동 지역에 수출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B와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다수를 시험 발사하였고, 한국형 이지스함 진수식 당일인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 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KN-O2)을 시험 발사하였다.<sup>19</sup>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sup>20</sup>, 같은 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각각 발사하였다. 2012년 4월 13일에는 3년 만에 외국의 주요 언론인까지 초청한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지 노력에도 대내 결속과 군사 강국 과시, 대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3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1만 km로 추정되는 장거리 운반 능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은 의회에 제출(2008.3.3)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이란 등에 수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에서 필요한 부품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8. 북한의 미사일 제원<sup>21</sup>

구분	SCUD-B	SCUD-C	노동	중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 (추정)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출처: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92.

## 화생무기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의 연구 시설 및 생산 기구를 설치하여 이의 개발 및 생산에도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화생무기가 핵 문제에 가려져서 군사 쟁점으로 그리 부각되지 않았으나 이 역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WMD)로 군사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강계, 용성 등지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흥남, 만포, 아오지, 청진 등지에는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2</sup>

화학무기는 종류로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 유독가스 17종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물무기는 콜레라, 탄저균, 천연두 등의 자체 배양 능력을 보유하고 정주, 문천 등지에 생물무기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제5절 대외 군사 관계 및 대남 도발

### 1 대외 군사 관계

북한의 대외 군사 관계는 광복 이후 중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북한은 전후 한동안 피폐해진 산업 복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 다시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61년 7월 6일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7월 11일에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북·중 조약은 체결 일방이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소 조약의 경우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 조항인 제1조(피침 시 군사 등 즉각 지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이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이 효력은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되었다.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대신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 간 우호 관계 기본 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에는 북한 군사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 산업 및 군수장비 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탄도요격미사일(ABM) 방어 조약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 협조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북한의 군사 대표단과 공군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 등 유대 관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 김정일은 방리 때 러시아 극동군의 훈련센터에 들러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2011년 8월에는 김정일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조난 시의 수색 구조훈련에 합의하였으며, 시덴코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이 방북하였다. 2012년 8월에는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공군 간의 군사 협력 문제를 협의하였다.

북한은 군사 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의 군사대표단을 상호 교환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하오옌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이 방북하였고, 환영식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군 간부들만 참가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은 2003년 4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어 5월에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북·중 군사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핵 관련 입장을 교환하였다. 2006년 1월에는 김정일이 군 원로들을 대동하고 중국의 광저우 등 산업 지역 시찰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4월에는 차오강찬 중국 국방부장 일행이 방북하여 군사 분야의 친선 협조 관계 발전에 합의하였다.

2007년 8월에도 중국군 친선참관단이 방북하고, 12월에 우다웨이 외교부 부장이 방북하여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담화하며 6자회담 의장국의 입장을 피력하

였다. 2008년 12월 12일 양광레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의 대외사업 담당자들과 만나 양국 군대 간 상호 교류와 협조 강화를 강조하였다. 2011년 8월 북·중 우호 협력 조약 체결 50주년에 즈음하여 전창복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 군사 대표단이 방중하여 양측의 군사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2001년 5월에는 북한 공군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항공 단지를 시찰했으며, 이어 6월에는 고위 대표단을 구성하고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위 산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동향으로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최고위 인사로 농득마인 총비서가 방북(2007.10.16~18)한 사실이다. 북한은 베트남전 때 200여 명의 조종사를 파견하였고, 그 가운데 11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7월에는 북한 군사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여 농업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나누었다. 2012년 5월에는 리영호 전 총참모장 등 고위군사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고, 9월에는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군사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2013년 4월에는 강표영 인민무력부장 등 군사 대표단이 아프리카, 6월에는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사 대표단이 쿠바를 각각 방문하였다. 2014년 5월에는 베트남 인민군 대표단이 방북(5.26~31)하였다.

북한이 동남아·중동·아프리카·중미 지역과의 군사 관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 목적뿐만 아니라 무기 판매, 군사기술 지원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란 및 시리아 등 아랍 국가와 군사 협력을 지속해 왔고, 특히 이란에 핵과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는 군사 분야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 대화와 실무 접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6월 3~4일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이로써 쌍방의 함정이 대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상대측에 부당한 물리적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을 중지하고 선전 수단도 제거하였다.

그 후인 2005년 7월 20일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개소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5년 8월 13일부터 통신연락소가 설치되어 남북 군 당국 간에 유·무선 긴급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 국제 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교신 및 불법 조업 선박에 관한 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2006년 3월 2~3일의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과 5월 16~18일의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서해 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 측이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12.12~14)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남북군사회담으로 12건의 합의를 채택했으나 신뢰 구축과 직결되는 합의는 많지 않았다. 2011년 2월 8~9일 개최된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도 천안함, 연평도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자 했으나 입장 차로 결렬되었다.

지난 과거를 돌아켜볼 때 남북이 군사 대치 상태에서 자의 또는 타의의 요인에 의한 상호 오인 및 오관의 결과는 매우 큰 위기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했다. 따라서 남북 간 군사 충돌 방지, 정확한 상황 판단,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 대남 도발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려 2,953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였다.<sup>23</sup>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 공격과 침투·도발 행위는 남북 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 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 동시에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產主義 和

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여 년 동안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하여 왔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북한이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를 대할 때도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 등의 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로운 대화와 제도의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발, 폭력, 테러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의 '비상식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 변화와 양보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 혹은 이와 반대의 순서, 즉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대화 및 협력과 같은 '평화 제스처'와 '위장평화 공세'를 선행한 후 군사력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지난 남북 관계를 반추해 보면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은 한국에 행한 각종 대남 공작과 침투 도발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가장 대표되는 사례는 북한의 6·25 남침(1950년)이다. 북한은 한국에 평화 협상을 제의하고 기갑부대와 포병, 20여 만 명의 보병을 동원하여 휴일 새벽에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7·4 남북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남침용 땅굴을 건설한 사례(1972년)와 '3자회담'을 제의하고 아웅산 폭탄테러(1983년)를 감행한 전력도 모두 상기에 언급한 양면 전략에 속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북한은 남북 경협과 대북 경제 지원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잠수정 침투 사건, 핵실험(2006년, 2009년, 2013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1998년, 2006년, 2009년, 2012년) 등을 감행하였다. 한·일 월드컵이 절정인 시기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해상 공격을 벌인 연평해전(2002년), 쌀·시멘트 등 대북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던 중 발발한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자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2010년) 등도 마찬가지다.

북한군의 군사 공격과 침투·도발 사례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의 근간은 먼저 스탈린의 아시아 적화 전진기지로 출발한 북한의 호전성(好戰性)에서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당의 목적 추구를 위해 모든 전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혁명강령’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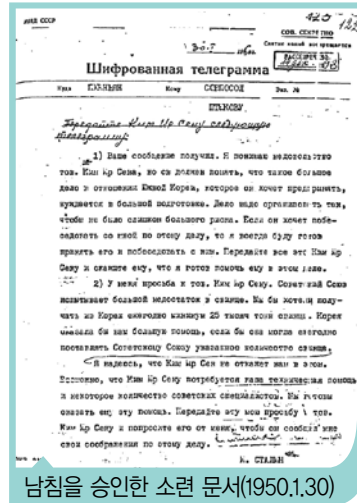
### (1) 6·25 남침

북한이 행한 침략·도발의 대표 사례는 1950~1953년에 벌어진 6·25 남침 전쟁이다. 소련 군정 아래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적화통일 달성을 위해 무력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은 화전양면전략(和戰兩面戰略)과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300만여 명의 인명 사상, 10만여 명의 전쟁고아,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한반도 문제가 국제 전쟁으로 비화되어 냉전 체제의 서막을 만들고 남북 분단을 공고화시키는 시발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전쟁 직전에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비밀군사 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남북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거나 평화통일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등 위장평화 공세를 병행하였다.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1949.3)



남침을 승인한 소련 문서(1950.13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선전 포고도 없이 38도선을 넘어 기습 남침 전쟁을 전면으로 개시하였다. 전쟁 개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단기간에 밀고 내려갈 정도로 북한군은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북한군이 초기 강세를 보인 것은 최전선에 선 북한군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이 중국 대륙에서 일본군과 교전 경험이 풍부한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 출신인 반면에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군은 지원 장비도 매우 열악하고 훈련 기간도 극히 짧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공격을 불법 남침으로 규정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였다. 국군은 38도선을 돌파하여 1950년 10월 말에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투는 38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 소련은 유엔을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유엔군이 이에 응함으로써 1951년 7월 휴전 회담이 개최되어 2년여 기간의 협상과 전쟁을 지속한 양측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최종 체결하였다.

표 4-9. 6·25 전쟁 초기 남북 양측의 전력 비교

한국군	구분	북한군
103,8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군(94,974명) : 8개 사단, 지원부대</li> <li>해군·해병(6,956명) : 7개 경비부, 해병대</li> <li>공군(1,897명) : 1개 비행단, 7개 기지</li> </ul>	병력	201,0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군(182,680명) : 10개 사단, 지원부대</li> <li>해군·해병(15,570명) : 3개 위수사, 육전대</li> <li>공군(2,800명) : 1개 비행사단</li> </ul>
0대 (장갑차 : 27대)	전차(장갑차)	242대 (장갑차 : 54대)
1,051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포 : 0문</li> <li>곡사포(105mm M3) : 91문</li> <li>박격포(81mm, 60mm) : 960문</li> </ul>	화포	2,492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포(SU-76) : 176문</li> <li>곡사포(122mm, 76mm) : 552문</li> <li>고사포(85mm, 37mm) : 36문</li> <li>박격포(120mm, 82mm, 60mm) : 1,728문</li> </ul>
2,040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차포(2.36" ) : 1,900문</li> <li>무반동총(57mm) : 140정</li> </ul>	대전차 화기	550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차포(45mm) : 550문</li> </ul>
36척 경비함 : 36척	함정	110척 경비함 : 30척, 보조선박 : 80척
22대 L-4 : 8대, L-5 : 4대, T-6 : 10대	항공기	226대 YAK-9, IL-10, TU-2, 연습·정찰기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2.

공산군이 도발한 3년 1개월 동안의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14만여 명의 한국군이 전사하고 45만여 명이 부상하였다. 공산군 측의 피해는 180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또 남한의 경우 생산 시설의 40% 이상이 파괴되어 경제가 거의 마비되었으며, 북한은 대부분의 주요 산업 기반과 자원생산 시설이 초토화되었다. 1948년 신생국으로 새로 출발한 남북한은 불과 2년 만에 발발한 이 전쟁으로 주요 산업 시설과 인적·물적 자원을 상당수 잃게 되었다.

표 4-10. 6·25 전쟁으로 인한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단위: 명)

구분	전사·사망	전상·부상	실종·포로	계
한국군	137,899	450,742	32,838	621,479
유엔군	40,670	104,280	9,931	154,881
계	178,569	555,022	42,769	776,360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9.

표 4-11. 6·25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단위: 명)

학살·사망	부상	납치·행방불명	계	기타
373,599	229,625	387,744	990,968	피란민: 32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9.

## (2) 주요 대남 군사 도발

6·25 전쟁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앞에서 기술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시기별로 전술과 방식을 달리하여 대남 군사 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은 남북 문제의 주도권 확보 및 자신들의 대내외 실리 추구하고 영향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 국제 사회에 대한 긴장 조성, 공격성 군사 행위,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같은 각종 도발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남북 대화와 경험을 추진하면서 6·25 전쟁 전후로 1,959건에 이르는 육상 및 해상에서의 침투 행위를 비롯하여 994건에 이르는 총격과 포격, 습격, 해상 교전과 선박 납치, 영공 침범과 미사일 사격 등 총 2,953건<sup>24</sup>의 도발을 자행하는 등 화전양면전술을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문제에서 군사 행동을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차

용하고 있으며, 목표 관철을 위해 군사 도발과 협상을 양면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관심 유도, 대남 압박 공세, 경제 지원 요구, 남남 갈등 유발 등 다방면에서의 반사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도발 행위로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국가로 인식되면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 육상과 공중 도발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시기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후 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960년대부터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 근거한 대남전략을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친 국지성 군사적 모험을 감행해 1968년 청와대를 습격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동서 긴장 완화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남조선 혁명투쟁’을 지속하는 양면 전략을 추구하며 도발 행동을 간간히 일으킴으로써 남북 관계 갈등을 유발하였다. 1976년 8월 18일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 후 북한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발생한 우리 정치 상황의 혼란을 틈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총리회담 실무접촉 등 대화를 제기하는 한편 대남 도발을 병행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이전의 게릴라 침투 방식과 달리 폭탄 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였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이 아웅산 국립묘소를 참배할 때 이들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터뜨려서 부총리와 장관 등 수행원 17명을 사망케 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어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승객 및 승무원 115명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이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KAL기를 폭파하라는 북한의 공작 명령을 받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냉전 시기에 북한이 무장공비·특수부대·게릴라 침투 공격, 판문점과 휴전선 일대의 국지성 도발, 민항기 폭파 및 납치 등 군사 행위를 지속했다면 탈냉전이 도래한 1990년대와 교류 협력이 활발해진 2000년대에는 핵실험 및 화생방 전력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부대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침투 도발을 계속했다.

## 해상 도발

북한군의 대표적인 해상 침투·도발 행위는 제1차 연평해전이다. 1999년 6월 15일에는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북방한계선(NLL)<sup>25</sup>을 넘어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측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남북 함정 간 포격전이 발발하였다. 이 전투는 6·25 전쟁 이후 남북의 정규군 간에 벌어진 첫 해상 전투였다.

2002년 6월 29일에는 연평도 근해 NLL에서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 1차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계획적으로 우리 참수리 경비정 배후를 기습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하였다. 북한 해군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09년 11월 10일에는 대청도 인근 NLL 서방 2.2km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대청해전’이 발생하였다. 우리 해군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북한 해군은 경비정 1척이 손상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같은 군·민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대남 도발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동시에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73년에 이 지역의 침범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후에 침투와 군사 공격을 반복해서 감행하려는 양태를 보였다.


북한이 NLL을 유엔에 의해 일방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것이라고 강변하는 이유

는 첫째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한편 NLL 수역을 분쟁수역화하여 북한에 유리한 해상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NLL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정치적 부수 효과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다.

최근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지난 50여 년 동안 사실상 북한 스스로가 NLL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한편 그 규범을 준수해 왔다. 1984년 북한에 수해물자를 지원할 때 접촉 지점을 NLL 상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및 2003년 나포·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 상에서 북한에 인계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도 NLL을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다.

이처럼 NLL은 당연히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 지역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해로서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전협정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된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우리가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해 왔다. 또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로 쌍방의 관할 구역을 합의,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이러한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NLL을 침범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잠수함을 침투시켜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폭침,



### 남북 간 불가침 경계선 합의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표 4-12. 1999년 이후 북한의 서해상 도발 주요 사례

1999.6.15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영해 침범해 우리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제 사격함으로써 포격전 발생. 우리 해군 9명 경상, 북한군 다수 사상(제1차 연평해전)
2002.6.29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근해 NLL 침범해 우리 해군을 공격. 우리 해군 6명 전사 및 18명 부상, 북한군 30여 명 사상(제2차 연평해전)
2009.11.10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무단 침범해 남하하면서 우리 해군의 경고에도 사격을 개시함으로써 전투 발생. 북한 함정 파손 및 퇴거(대청해전)
2010.3.26	북한 잠수함정이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침투하여 어뢰 공격으로 기습함으로써 천안함이 침몰됨. 우리 해군 46명 전사
2010.11.23	북한군이 연평도의 민가와 군사시설에 포격해 와 우리 군이 대응사격함으로써 50분간 교전 발생. 우리 해병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 18명 중경상. 북한 측 지역 상당수 피해

출처: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p.252~267.

이때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였다.

북한은 이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의 민가와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포격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 행해진 우리 군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방사포 사격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우리 군의 응사로 50분간 교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로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민간인이 포탄공격으로 희생되었다.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에 처음으로 포탄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민간인이 포격으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처럼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자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북한의 폭침 후 인양된 천안함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괴된 민가

표 4-13.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구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북한의 공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잠수함정을 이용한 어뢰 공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사포와 해안포로 170여 발의 포 사격</li> </ul>
작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31일, 민·군 합동조사단 편성 (현역 59명, 관 17명, 민 6명)</li> <li>4월 12일, 73명으로 재편성 (한국 49명, 외국 24명)</li> <li>5월 20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공식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시 47분~15시 15분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50발 대응 사격</li> <li>15시 12~29분 북한군은 방사포와 해안포 20여 발로 2차 공격</li> <li>15시 25~41분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30발 대응 사격</li> </ul>
피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조원 104명 중 46명 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병 2명 전사, 18명 중경상</li> </ul>
사건 피해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인 2명 사망 다수의 부상자 발생</li> <li>건물 133동(전파 33, 반파 9, 일부파손 91)과 전기통신시설 파손, 10군데 산불 발생</li> </ul>
북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 남측 날조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 조치라 주장</li> </ul>
대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정부, 남북 간의 교역과 교류 전면 중단과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 발표</li> <li>유럽의회,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6.17)</li> <li>G8 정상회의, 북한 규탄 공동성명 발표</li> <li>유엔, 안보보장이사회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 규탄(7.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정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강력 요구, 국회도 중대한 무력 도발 행위로 규정 하고 강력 규탄</li> <li>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비인간의 도발 행위에 분노하고 규탄</li> </ul>

출처: 유관 기관 자료 종합

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또한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임을 북한에 각인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한편 2014년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2014.3.26)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의장명의로 '구두 언론 성명'(2014.3.27)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짓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동해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안 백령도 NLL 남쪽 지역에 해안포 및 방사포 포격 등의 대남 도발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즉각 대응사격을 가하였다.

# Footnote

- 1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성명(1945.10.12), 「조선중앙연감」, 1949, p.58.
- 2 미국 국방대학원, 『Chinese Views of Future Warfare』, 1998 참조.
- 3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178.
- 4 「김일성저작집 28」, p.534.
- 5 「조선중앙연감」, 1963, pp.157~163.
- 6 「노동신문」, 1980.10.11 참조.
- 7 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평양), 『인민군』, 1987, pp.43~47. 최근 들어 북한은 옛 소련군이 전차부대의 신속한 기동으로 NATO군 방어진지 돌파를 위해 운용하려 한 작전기동단(OMG) 개념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게 원용해 발전시켰다. 그러나 개활지가 많은 서부 지역 이외에서는 적용상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8 윌리엄 린드(W. Lind)에 의하면 '제4세대 전쟁'이란 강대국에 대한 약자(중소 국가, 테러집단 등)의 비정규·비대칭 전쟁을 이른다. 여기에는 비대칭전, 신반란전, 저항전, 신유혈전,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 9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76.
- 10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473.
- 11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 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로 정하였지만 이 규정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 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 12 군무생활 10대 준수 사항은 ①군사 규정 철저히 준수 ②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 ④당 및 정치 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국가 기밀, 군사 기밀, 당 조직 비밀 엄격 유지 ⑥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히 준수 ⑦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⑧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 금지 ⑨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⑩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등이다.
- 13 북한군에서도 1995년부터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부양자가 없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제대'(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있다.
- 14 중대정치지도원은 월평균 20명 이상의 병사들과 면담함으로써 중대의 공식, 비공식적 상황을 숙지하게 된다.
- 15 관병일치(官兵一致)는 군관과 사병, 당사일치(黨社一致)는 노동 당원과 비당원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구 사로청)과의 화합 강조를 의미한다.

- 16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 2004, p.54.
- 17 국방부,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p.95.
- 18 2014년 3월 30일자 북한 외무성 성명
- 19 미국 민간 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틴 수석연구원은 2008년 2월 3일 미국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SSI)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거의 자급자족 단계에 이르렀으나 고급 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 유엔 안보리는 2009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자산 동결 등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로 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2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급 기술은 파키스탄, 이란 등 회교권 국가와의 협조와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과정에서 옛 소련으로부터 도입·습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2 미국 ‘Popular Mechanics’는 2007년 2월호에서 북한은 화학제 5,000톤 보유, 32개 지역에 생화학 공장 운영, 20개 지역에 생물무기 시설, 12개 지역에 화학무기 시설, 미사일과 야포의 30%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 야전교범 ‘NBC(생화학무기) 방어 작전의 의학적 전망에 대한 핸드북’에 따르면 전투원 1명 살상에 재래식 무기는 2,000달러, 핵무기는 800억 달러, 생물무기는 1달러가 각각 소요된다고 소개하였다.
- 23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306.
- 24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306.
- 25 지난 6·25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1953.7.27)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육상 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 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후(1953.8.30)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우발성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에서 우리 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을 한정시키기 위하여 NLL을 설정하였다. 동해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서해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 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에 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휴전 직전에는 황해도 섬과 해변 지역까지 유엔군의 점령 아래에 있었으나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서해 5개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을 공산군 측에 양보하였다.





# V

##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

**제1절** 북한 경제 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제2절**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제3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 Key Point

### 01

북한 경제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협동적 소유보다 인민적 소유 비중이 압도적이고,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장기간 고수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 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경제난 이후 유사 재산권이 형성되고, 기업 자체의 계획지표가 등장할 정도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 02

북한은 초기부터 자력갱생 노선, 중공업 우선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초로 삼고 사회주의식 공업화를 추진해 왔다. 이들 정책 기초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건설, 김정은 시대의 경제 건설·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으로 각각 계승되고 있다.

### 03

북한은 1960년대 이후 5차에 걸친 장기 경제계획을 시행하였지만 이들 계획은 매기 완충기를 설정할 정도로 실패하였다. 북한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침체→마이너스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다. 북한 경제는 2000년대 들어와 플러스 성장세를 6년간 나타낸 후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다시 침체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다시 미미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04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난을 타파하고자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과 통제 정책을 반복하며 대외경제의 제한적 개방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범 운영과 14개 경제개발구 신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핵 보유 의지와 함께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1절 북한 경제 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 1 경제 체제의 기본 특징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초기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을 점차 개혁해 나갔다.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는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띤다. 첫째로 소유제도 면에서 집단 및 국가의 소유만 인정한다. 둘째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원배분 면에서 중앙계획 당국의 계획이 주요 역할을 행한다. 셋째로 최종 경제 단위의 경제활동 면에서 중앙계획 당국의 지도 및 명령지표가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경제의 비효율성과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시장 기능을 부분 도입하며 점차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시장사회주의 체제 등으로 변화하여 나갔다. 이들은 시장 기능을 체제 내부 차원에서 부분 활용하는 부분개혁 체제를 실험하다가 결국 탈냉전 시대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반면에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체제 변화 과정과 대비되게 가장 스탈린식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의 전형을 유지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실상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작동하기 어려워졌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경제 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공식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 계획경제 체제의 마비로 경제 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은 일부 경제 관리 개선조치들만 취함으로써 제도와 현실이 괴리된 경제 체제의 이중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1) 국가 소유 위주의 사회주의식 소유제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음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 소유로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기업, 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 분야는 농업 부문의 협동농장이 전형을 이룬다.

한편 북한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 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개인 소유의 대상은 텃밭을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합법 경리 활동으로 얻은 수입, 근로자들의 임금 및 노동소득 몫, 이들 수입과 몫으로 구입한 소비품 등으로만 구성되고 생산 수단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제도가 국가 소유 즉 전 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므로 “협동적 소유는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처음부터 사회주의 소유 제도가 국가 소유 위주로 구성되고 협동적 소유 형태는 다음 <표 5-1>에서 보듯 비중이 다소 낮게 구성되는 형태였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는 철저하게 중앙집

표 5-1. 총 공업생산액 중 소유 형태

구분	1946	1949	1956	1959	1960	1963
사회주의 경제 형태(%)	72.4	90.7	98.0	100.0	100.0	100.0
(국영)	(72.4)	(85.5)	(89.9)	(89.5)	(89.7)	(91.2)
(협동경영)	(0.0)	(5.2)	(8.1)	(10.5)	(10.3)	(8.8)
소상품 경제 형태(%)	4.4	1.5	0.7	0.0	0.0	0.0
자본주의 경제 형태(%)	23.2	7.8	1.3	0.0	0.0	0.0

출처: 『조선중앙연감』(1964), p.171.

중적 계획관리 아래에 놓여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협동적 소유 역시 사실상 전 인민적 소유 형태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소상품 경제 형태를 완벽히 소멸시키고 개인 소유는 근로소득과 일용소비품에만 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엄격한 국가 소유 위주의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동적 소유 비중은 나라별로 20~40%를 차지했다. 1980년대 폴란드의 경우 개인 경작지가 약 70% 이상이었으며, 중국에도 개혁·개방 이전의 수공업 및 소공업 부문에서 소상품생산 경제 형태가 상당한 비중으로 잔존하고 있었다. 물론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소토지 경작물, 상설 시장에서 얻은 수입, 발명과 같은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공식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확대일 뿐 최근까지 국가소유제를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소유 위주의 엄격한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 축적 현상이 확대되면서 점점 이완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들이 장사나 식당 운영 등 각종 개인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화폐 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소규모 공장·기업소나 상업기관 등에 비공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 수단의 사유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종합시장이나 장마당의 매대도 매매 또는 양도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는 관할 기관에 뇌물을 주고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주택의 개별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주택의 개인 소유화

현상도 일부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경제 활동으로 사유 자산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재산 관념이 부동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난 이후 북한에는 제도상으로 사회주의 국가소유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유 대상(大商)들이 등장하여 ‘은폐된 재산권’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집체적 경제관리 방식

북한은 1958년 토지 및 생산 수단의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경제를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sup>1</sup>, “통일적으로 지도·관리되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즉 중앙의 계획기구(국가계획위원회)가 당의 지침을 받아 인민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분야별 각 경제 단위에게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등 명령을 내려 경제 단위들이 이를 집행하는 계획경제 체계를 1960년대 초에 구축한 것이다.

북한의 계획경제 체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철저하게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강조하는 ‘명령형’ 계획경제 체계였다. 여기서 ‘계획의 일원화 체계’란 경제계획의 작성 및 집행을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하부 단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정부 부처에 해당되는 내각의 각 성(省), 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들도 각기 계획을 작성하지만 이들 수치는 모두 중앙에 있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이렇게 일원화된 체계이어야만 각 경제 단위가 당과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주관주의 등이 타파되고 계획의 유일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

원회에서 결정된 정치 사업과 경제정책을 반영해서 계획지표를 수립해야 하므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 사업에서 수령 및 당이 지도하는 ‘유일적 계획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계획의 세부화’란 중요한 것만 계획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 부문 간, 단위 기업소·공장 간 계획들이 철저하게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사소한 것들까지 자연 발생 요소를 허용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장 가동률, 품질 수준, 생산품 가격, 제품의 규격 등까지 계획지표화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계획화 체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중앙 집중 성격, 하부 경제 단위들의 자율성 범위, 당에 의한 통제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엄격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지표가 ‘명령지표’보다 ‘지도지표’ 성격을 띠었고, 공장 내부의 경제 활동까지 계획지표화하지 않았다.

예컨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중앙 단위의 계획지표는 큰 방향의 8개 정도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 중앙 단위의 계획지표가 1만 개가 넘을 정도였다. 이러한 엄격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점차 이완되어 나가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었다. 1980년대 이후로는 경제난 때문에 변형된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즉 경제난에 의한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및 계획 체계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략상으로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경제 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 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해 관리하고 있다. 그 밖의 경제 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그리고 전략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단위들에 계획지표로서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과하고 있다. 계획지표의 형태로 ‘액상지표’가 부과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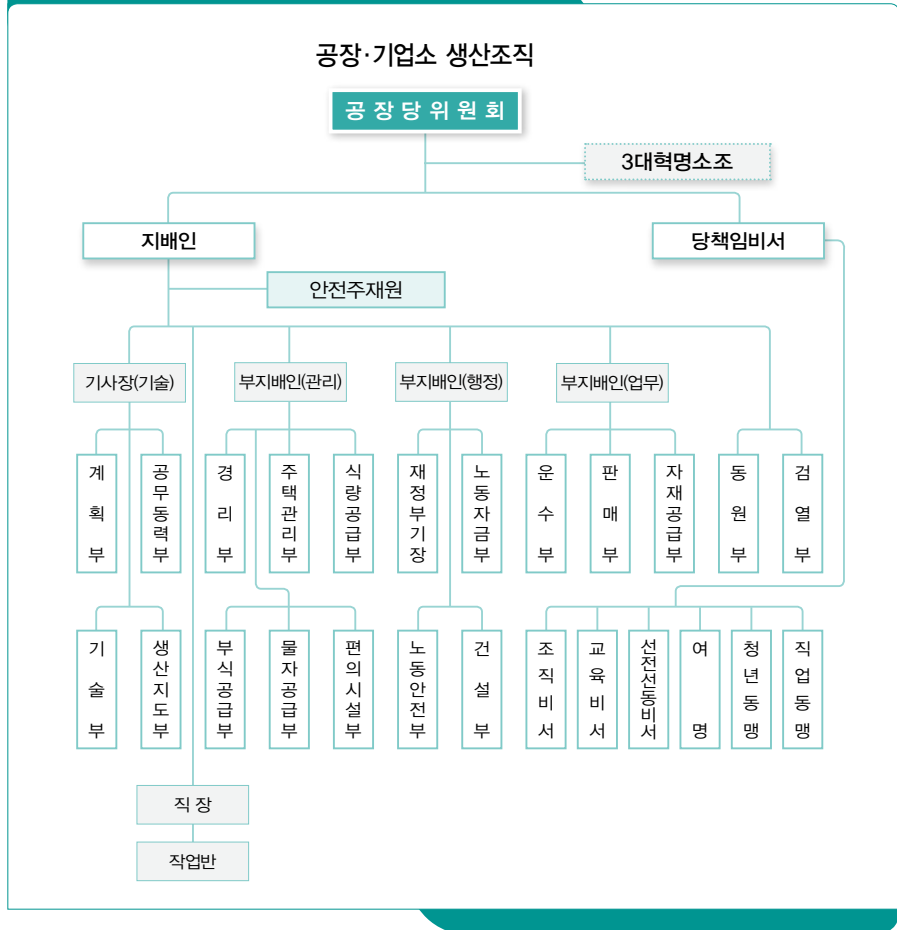
면서 각 경제 단위는 본래의 생산 활동과 상관없이 시장을 활용해 계획지표를 달성하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즉 공장, 기업소들이 형식상으로는 국가 계획 수행이라는 합법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장을 활용한 불법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1999년에 오히려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밑에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제3조)이라고 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여전히 제도적으로 고수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북한 특유의 경제관리 방식도 도입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지배인 유일 관리제(소련), 노동자평의회에 의한 노동자 자주관리방식(유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관리 방식을 모색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이른바 ‘청산리방법<sup>3</sup>’, ‘대안의 사업체계<sup>4</sup>’라는 명칭의 당 위원회에 의한 집단적 경제관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북한에 따르면 이들 관리 방식은 한마디로 경제 사업에 대한 당·국가·유일적 지도와 정치사상에 의거한 경제 사업, 철저한 계획화가 수행되도록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가 배합되는 관리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공장, 기업소의 생산 및 경제 활동을 공장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장 당 위원회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직장장, 직장 부문 당비서, 작업반장, 일부 생산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다. 공장·기업소 내의 대표 구성원들이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의사와 결정에 근거하여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북한도 1950년대에 지배인 유일 관리제를 채택하여 당이 임명한 지배인이 경영 활동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공장·기업소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났다. 그리고 수령 유일 영도 체계가 확립되면서 경제 단위에 수령을 뇌수로 하는 당적 지도의 유일적 관리방식 구축이 정치적으로 요구되었다. 결국 북한 특유의 이러한 경제 관리 방식은 수령 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 대안의 사업 체계



## 2 경제정책의 기초

### (1) 전통적 경제정책 기초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3대 경제건설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내세웠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 등을 3대 경제정책의 기초로 삼고 북한 특유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해 왔다.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북한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sup>5</sup>이라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 및 최종재화의 생산을 자체 조달을 기본으로 하여 대내 수요를 충당하고,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자체 인민경제 구조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민경제를 완결된 자립형 경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건설 노선이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내부 자원의 동원에 의거해 성취하겠다는 수입 대체형 경제 발전 노선으로서 비교우위 발전론을 거부하는 경제 건설 노선이다. 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고,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거나 뒤떨어진 생산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자체 해결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 요소를 활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과거 마오쩌둥 시절 중국도 이 발전 노선을 기본 경제 건설 노선으로 삼음으로써 많은 경제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1958년 대약진운동을 전개할 당시 자력갱생론을 기치로 내세워서 전국 각지의 지방마다 ‘토법고로(土法高爐)’라고 하는 소형 고로를 만들어 철 만들기 운동을 했지만 자원만 낭비하였다. 이에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비교우위 발전론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변경하여 국제경제 질서에 적극 편입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원자재의 국내 조달 비율을 60%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운동을 벌이고, 경제난 이후에도 비교우위 발전론을 제국주의 착취론이라고 거부하며 자력갱생론을 경제정책의 한 기조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난 이후 과거와 같은 엄격한 자력갱생론에 의거한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분 완화된 ‘개방형’ 자력갱생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예로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인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7·1 조치의 시행과 함께 신의주 특별행정구(2002년 9월), 개성공업지구(2002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2002년 11월) 지정을 발표하여 경제특구 지역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에 중국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개성·금강산 지구만 남한의 단독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1년 6월 이후 기존의 나선 특구 외에 황금평·위화도도 새롭게 경제특구로 지정해 중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2013.5.29) 지방급 13개와 중앙급 1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것을 발표하였다.<sup>6</sup> 한마디로 북한은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 담보이다”<sup>7</sup>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경제와 분리된 경제특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 구현하는 수단으로 채택된 노선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sup>8</sup>라고 주장했다. 이 경제 건설 노선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 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거 소련, 중국 등이 ‘사회주의적 발전법칙’으로 오랫동안 신봉해 온 경제 발전 전략이기도 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체제 경쟁을 해야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른 시간 내에 “미국을 따라 잡자”, “영국을 따라잡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능한 소비를 위한 분배를 최대한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앙에 집중된 축적 자본을 특정 부문, 특히 군수산업이나 생산수단 부문에 집중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체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최우선해 오던 북한 역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 과정에서 인민경제비 투자 지출에서 70% 이상을 항상 중공업

부문에 편중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하여 북한의 산업 구조를 소련처럼 중공업 부문 위주로 편중시켜 나갔고, 1970년대 초까지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역시 1970년대 후반부터 과거 소련처럼 산업 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 왜곡을 겪기 시작했다. 양적 발전 방식에서 질적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에 실패하고 경공업 및 소비 부문의 낙후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규모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장기성을 띠며 아주 낮다. 또한 소비의 수요 창출 효과도 낮기 때문에 산업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북한은 중공업 부문의 우선 발전으로 생산력 제고는 물론 경공업과 농업 발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 군사·경제 병진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이다. 본래 병진 노선은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선도 국가들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다. 사회주의 진영 내 독자 노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 우위 확보를 노리던 북한은 1966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노선을 당의 경제 건설 노선으로 확정했다.<sup>9</sup> 당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려면 경제 건설과 국방 정책을 옹기 배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병진 노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북한은 소련·중국과 달리 인민경제의 규모가 사실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병진 노선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경제 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노선이 채택된 이후부터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매년 총 예산의 약 10% 비중에서 1967~1971년 5년간 30% 이상 증액되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사비 지출은 매년 총 예산의 14~17%로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 연구기관은 북한의 실제 군사비 지출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0~50%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상 군사비 지출이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북한의 병력이나 무기 장비 등 군사력은 매년 강화되고 최근 들어 장거리 미사일 개

발, 핵능력 강화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병진 노선은 북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는 기본 토대로서 오늘날까지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중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북한의 산업이 ‘군산복합형’으로 변모되고,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은 병진 노선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하면서 금속·기계·화학 공업의 생산 체계를 무기생산 체계 우선 위주로 개편해 나갔다.

게다가 북한은 군수품 전문 생산 공장이 아닌 내각 산하의 일반 기업소, 인민경제 부문 공장들에도 군수품을 생산하는 분공장(또는 직장)을 설치하여 군수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이들 공장은 ‘일용분공장’, ‘일용직장’이라고도 불리면서 군수무기·장비류를 전문 생산하거나 관련 부품들을 협동 생산한다. 또한 군대 일상 소비품 생산을 전담하기도 한다. ‘일용분공장’은 기간산업부터 지방 공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3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민수품 공장들은 유사시 즉각 군수품 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sup>10</sup>

둘째는 군수생산 계획을 인민경제 계획보다 우선함으로써 북한 민수산업과 소비경제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각 산하의 ‘일용분공장’의 경우 전기나 원자재가 공급되면 민수용 생산에 차질이 빚더라도 군수품 생산을 우선하도록 당의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병진 노선 채택 이후 군수산업 계획을 수령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통제·감독을 받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제2경제’ 부문을 독립 경제 영역으로 구축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경제와 독립된 분할경제 공간으로서 산하에 130여 개 군수공장·기업소와 60여 개 병기수리창 및 부속품 제조창을 두고 있으며, ‘일용분공장’의 생산 활동을 직접 지시하기도 한다.

셋째로 경제난 이후 군수산업은 단순히 국방경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점차 시장을 활용해 잉여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독립된 경제 공간의 성격으로 발전했

다는 점이다. 즉 북한 경제 내에 ‘군 경제’라는 특권경제 영역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심각한 경제난이 도래할 당시 북한의 인민경제는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반면에 투자 재원, 수출 원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 경제 부문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선군혁명 노선을 내세워 군대에 경제 정상화를 위한 선도 역할을 부여하고 대외무역 활동도 적극 허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군 경제라는 특권경제를 발전시켰다.

## (2) 선군경제 건설 노선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3대 전통 경제정책 기조들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화 및 수정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이 3대 정책 기조 위에서 선군경제 건설 노선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강조하였다.

북한에 따르면 선군경제 건설 노선이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으로 규정된다. 이는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김정일 시대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해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1998년 당시는 북한이 잇따른 자연 재해, 기근과 더불어 공장 가동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던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 일부 기관들은 당시 북한 민수산업 부문의 공장 가동률을 약 20% 수준으로 추정할 정도였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1993년 제1차 핵 위기 이후 핵 개발 의지를 지속 표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국제 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한편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도 보전하는 체제 생존 전략으로 선군혁명 노선을 제시했다. 이처럼 선군경제 건설 노선은 체제 생존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창된 경제정책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군경제 건설 노선에 의한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은 내용 면에서 분석해 보면 앞의 절에서 설명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보다 북한의 산업 구조를 더욱 왜

곡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더 악영향을 미쳤다. 국방공업을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보다 민생경제가 더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 정권은 기존



선군경제 건설 노선 관련 포스터

의 병진 노선에 의해 국방공업, 중공업이 북한 산업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 회복의 기본 토대가 빠르게 구축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국방공업의 발전을 통한 첨단 과학과 기술 발전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을 추동해 나갈 수 있다는 논리를 주창한 것이다.

그러나 선군경제 건설 노선은 국가의 투자 자원 배분에서 기존의 병진 노선보다 더욱 민생경제를 배제시킴으로써 불가피하게 시장 기능을 부분별로 활용해야 했다. 즉 당국은 군수생산 지표를 가장 중시하는 계획화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생경제 부문은 자력갱생 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민생경제 부문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성장한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7·1 조치 시행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7·1 조치 이후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게 되자 7·1 조치를 3년간 시험한 끝에 중단했다.

### (3) 경제 건설·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3대 세습 체제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선군경제 건설 노선보다 더 확장된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내세웠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 건설·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이른바 “선대 대원수님들의 병진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 시킨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

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 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sup>11</sup> 즉 선군경제 건설 노선처럼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할 것이라는 비과학·비경제학 논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이 앞선 병진 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관심을 두는 정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 건설·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결국 김정은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새로운 군사·경제 병진 노선으로서 기존의 북한 경제의 모순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 역시 국가의 투자 자원 배분에서 민생경제 부문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부분 활용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시장은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기존처럼 체제 내부의 부분 개선 조치 수준에 머무르는 정책만으로는 민생경제의 활성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의 주장대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면 1980년대의 중국처럼 경제 발전 전략을 근본부터 수정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핵무력 건설 관련 포스터

둘째,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말미암아 외부 자본의 유입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는 20년 이상 지속된 경제 위기로 ‘빈곤의 함정’

에 빠져 있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병진 노선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여전히 내부 자원 동원에

의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내부 자원의 고갈로 장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 3 경제 계획의 수립과 추진

북한은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인 194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즉 1947년~1961년 15년 동안 5회의 단기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반봉건 식민지 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인민경제로의 전환, 6·25 전쟁 수행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 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는 목적의 경제 계획을 추진했다. 이들 계획은 1~5개년의 단기 계획으로,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생산 관계를 구축하는 물적 토대 역할을 하였다.

북한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계획을 본격 추진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년), 6개년 계획(1971~1976년),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년),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 등 총 네 차례의 경제 계획을 추진하여 과도기 사회주의 발전 단계로부터 완전한 공산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표 5-2>가 보여 주듯이 북한의 계획 추진 과정은 계속해서 완충기를 설정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1차 7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부터 살펴보면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과 군수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는 경제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북한 스스로 이 기간에 공업총생산이 3.3배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산업 구조는 급속하게 중공업 위주로 재편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내 지향성 경제발전 전략의 문제점이 나타남과 동시에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본격 추진하면서 경제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그리하여 당초 의도한 1967년에 제1차 7개년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였다.

1971년부터 추진된 6개년 계획의 경우 북한은 기술 발전과 산업설비 근대화, 즉



표 5-2.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장기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분	기본 과업	주요 목표	실적
제1차 7개년 계획 (1961~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공업 발전</li> <li>•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li> <li>• 국방·경제 병진</li> <li>• 전국 규모 기술 혁신</li> <li>• 문화혁명, 국민생활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소득 2.7배</li> <li>• 공업총생산 3.2배</li> <li>• 곡물 수확량 600만~700만 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총생산 3.3배</li> <li>• 기계·금속공업성장률 18.4%</li> <li>• 노동생산성성장률 147.5%</li> <li>• 계획기간 3년 연장</li> </ul>
6개년 계획 (1971~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물질 토대 견고화</li> <li>• 산업설비 근대화화 기술혁명 촉진</li> <li>• 힘든 노동 해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소득 1.8배</li> <li>• 공업총생산 2.2배</li> <li>• 곡물 수확량 700만~750만 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소득 1.7~1.8배</li> <li>• 공업총생산 2.5배</li> <li>• 기계·금속공업성장률 19.1%</li> <li>• 노동생산성성장률 155%</li> <li>• 곡물 수확량 800만 톤</li> <li>• 1976~1977년 완충기 설정</li> </ul>
제2차 7개년 계획 (1978~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li> <li>• 수송의 근대화</li> <li>• 대외무역 확대</li> <li>• 주민생활 향상, 절약운동 강화</li> <li>• 생산원가 인하, 독립채산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소득 1.9배</li> <li>• 공업총생산 2.2배</li> <li>• 곡물 수확량 1,000만 톤</li> <li>• 4대 자연 개조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총생산 2.2배</li> <li>• 전력생산증가율 178%</li> <li>• 곡물 수확량 1,000만 톤</li> <li>• 철도 60% 전철화</li> <li>• 1985~1986년 완충기 설정</li> </ul>
제3차 7개년 계획 (1987~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li> <li>• 대외무역, 기술협력 증대</li> <li>• 기술 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소득 1.7배</li> <li>• 공업총생산 1.9배</li> <li>• 농업총생산 1.4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총생산 1.5배</li> <li>• 지방공업총생산 1.7배</li> <li>• 전력량 1.3배 등</li> <li>• 1994~1996년 완충기 설정</li> <li>* 스스로 실패 인정</li> </ul>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214.

기존 노동력의 양적 증대에 의한 경제 성장 방식으로부터 기술 혁신 및 자본생산성 증대에 의한 경제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도했다. 그러나 당시 자력갱생 방식의 경제 건설 한계를 수정하고자 서방 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기술 혁신을 이룩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심각한 외채 상환 문제에 부딪혔다. 그리고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계획경제 체계의 비효율 현상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1975년에 서둘러 계획의 완수를 선포하고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했다.

1978년부터 추진된 제2차 7개년 계획의 경우 북한은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내걸고 앞의 시기보다 더 높은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힘으로써 다시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원조를 전제로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된 지원·원조들이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인민들의 소비 위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주민 생활 향상 문제를 경제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절약운동도 시행하고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인민경제의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1987년부터 계획된 제3차 7개년 계획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중단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3차 7개년 계획 당시 북한은 대외경제 협력의 확대 문제를 경제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전개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목표로 한 대외경제 관계 자체가 추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989년 88 서울올림픽에 대응해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평양에 대규모 체육관, 선수촌 아파트, 도로 등 비생산적 건설 사업을 벌임으로써 제3차 7개년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1990년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 전환의 과정으로 진입해 나가고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우호성 교역도 중단되자 북한의 산업연관 관계는 파탄나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은 제6기 제21차 노동당 전원회의(1993.12.8)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과거와 같은 장기 경제 계획을 더 이상 세우지 못하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시계열 관점에서 검토해 볼 때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침체→위기'의 과정으로 단계별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현지지도 교시나 김일성 전집에서 각 생산 부문의 가동률 저하, 생산 중단 및 원자재 부족 등이 수시로 언급되고 있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표 5-2>에서 보듯 북한이 스스로 계획 기간마다 세운 목표와 실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 제2절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 1 거시적 현황과 과제

북한은 1965년 이후 거시경제 총량 지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정치 상황의 필요에 따라 어쩌다 일부 지표만 언급할 뿐, 그것도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통계 숫자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 통계는 통치 목적에 따라 체제 선전 차원에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1990년부터 자본주의식 추계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발표하는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가 그나마 의미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과 1인당 국민소득 추계에서 다양하게 입수되는 북한의 산업별 생산량 추계치를 토대로 하되 남한의 물가·환율 통계치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가가치 및 화폐가치가 남한보다 현격히 낮고 물가 구조도 국정 물가와 시장 물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물가와 환율을 적용한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통계는 사실상 과대 추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추계치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 흐름을 시계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치를 통해 북한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민소득과 성장률

### 국민소득 추이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통계에 의거해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1998년 9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 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1990년대의 공장 가동률은 20% 안팎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당시 지방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장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되고 일부 기간산업 및 군수공장만 겨우 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를 정도로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만 제외하고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석유, 원자재 등의 주요 수입 국가이던 소련이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주의 우호 무역에 의한 공급을 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대외경제 부문을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 중단 및 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연관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 경제는 전시경제 체제가 아닌데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축소재생산을 겪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 경제는 극단의 1990년대 축소재생산 추세에서 일단 벗어나

표 5-3.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북한 성장률	-4.3	-4.4	-0.9	6.1	0.4	1.2	1.8	3.8	-1.0	-1.2	3.1	-0.9	-0.5	0.8	1.3	1.1
남한 성장률	9.3	8.9	-5.7	10.7	8.8	7.2	2.8	4.0	5.2	5.1	2.3	0.3	6.3	3.7	2.3	3.0

출처: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게 되지만 회복 추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즉 2000~2005년 6년간 잠시 연평균 약 2.2%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연평균 0%대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약 33조 8,000억 원(한화 기준)으로 남한의 1,441조 1,000억 원 대비 42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8만 원(한화 기준)으로 남한의 2,870만 원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 남북한 GNI 격차가 약 11분의 1, 1인당 국민총생산의 경우 5분의 1 격차에 비하면 엄청나게 벌어진 것이다. 북한이 '빈곤의 함정'에서 계속 탈출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침체 상황을 유지해 나간다면 향후 남북한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 성장을 추이

한편 <표 5-4>에서 북한의 산업별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북한의 실물 산업생산력 부문은 다소 불균등 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4~2008년 5년간 북한의 광업 생산 부문은 연평균 2.3%, 중공업 부문은 연평균 2.5%, 경공업 부문은 연평균 0.42%의 성장세를 각각 보임으로써 2000년대 중반 이후 실물산업 생산력 부문에서 단기간 미미한 회복세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네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5-4.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2	1994	1997	1999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림어업	-10.5	-3.3	2.8	-2.7	9.2	-5.1	4.2	4.1	5.3	-2.6	-9.1	8.0	-1.0	-2.1	5.3	3.9	1.9
광업	-5.6	-5.7	-5.2	-15.8	14.2	5.8	-3.8	2.5	3.1	1.9	1.5	2.4	-0.9	-0.2	0.9	0.8	2.1
제조업	-3.2	-18.3	-3.9	-18.3	7.9	1.4	-1.5	0.3	4.8	0.4	0.7	2.6	-3.0	-0.3	-3.0	1.6	1.1
(경공업)	0.9	-7.6	0.1	-14.2	2.9	6.3	2.7	-0.2	3.8	-0.6	-2.2	1.3	-2.1	-1.4	-0.1	4.7	1.4
(중공업)	-4.1	-21.3	-5.5	-20.3	10.4	-1.0	-3.9	0.6	5.4	1.0	2.2	3.2	-3.5	0.1	-4.2	0.2	1.0
건설업	5.9	-2.4	-26.9	-10.0	24.4	13.5	10.5	0.4	6.1	-11.5	-1.5	1.1	0.8	0.3	3.9	-1.6	-1.0
서비스업	0.7	0.8	2.3	1.1	-1.7	1.1	-0.2	1.3	1.3	1.1	1.7	0.7	0.1	0.2	0.3	0.1	0.3

출처: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첫째로 이 기간에 북한이 식량, 비료 등 무상원조를 외부로부터 많이 지원받고, 이 무상원조에 기초해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전략에 따라 재정자금을 전략산업, 기간산업 등 이른바 선행 부문에 집중 투입시킴으로써 미미하지만 산업연관 관계의 회복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북한은 과거와 같은 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1998년부터 2013년 현재 4차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2003~2005년), ‘기간공업 3개년 계획’(2006~2008년) 등 부문별 중기 계획도 세워 전략산업·기간산업 등 위주로 산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출을 시행했다.

둘째로 2002~2005년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 기능을 부분 도입하여 민생경제 부문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계획경제 부문에 이전시키도록 하는 이원적 선군경제건설 전략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풍부한 강수량, 1990년대 후반부터 주력한 중소형 및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연이은 완공, 1990년대 중반에 홍수 피해를 본 석탄광산의 부분 회복 등의 요인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2003~2008년 연평균 5%씩 증대<sup>12</sup>된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로 1999년 이후 매년 대규모로 유입되는 남한 및 해외로부터의 무상지원,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 확대에 외화 유입 등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북한의 공장 가동률 전반은 1990년대보다 약간 증가된 약 3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표 5-4>에서 보듯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북한의 제조업 분야 산업생산력은 다시 연평균 마이너스 1%의 추세 속에 머물러 있다. 이는 2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지원 축소, 남북 경협 위축, 시장 통제 강화,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구축을 위한 평양 위주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재원 집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표 5-4>를 보면 최근 제조업 부문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공업 부문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2년 4.7%, 2013년 1.4%의



기초식품공장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다. 북한 당국은 2008년 이후 경공업 및 농업 정상화의 핵심인 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 시행해 왔다. 2010년 이후에는 매년 경공업과 농업을 경제정책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여 이 부문의 재정 지출을 다소 늘려 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3년 3월에는 10년 만에 전국 단위의 경공업 대회도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김정은은 “경공업 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어야 한다”<sup>13</sup>라고 연설함으로써 경공업 부문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용품 공장, 방직 공장, 식료품 공장 등에 대한 설비 대체 투자를 몇 개 단위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정상화의 핵심인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어 경공업 부문 전반의 정상화 문제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 (2) 산업 구조

북한의 산업 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공업화 추진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농업 부문의 비중이 하락하지 않고 평균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다음 <표 5-5>에서 보듯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광공업 부문은 40% 이상이었으며, 특히 1980년에는 60% 비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농림수산업은 평균 25% 안팎을 차지하고, 서비스 부문 비중은 하락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공업 발전만을 추구한 사회주의 공업화와 자립경제 노선의 결과로, 자본주의식 공업화 과정과는 상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5. 북한의 산업 구조 추이

(단위 : %)

구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농림수산업	28.9	21.5	20.0	26.8	27.6	30.4	25.0	20.8	23.4	22.4
광공업	41.3	57.3	60.0	42.8	30.5	25.4	28.9	36.3	35.9	35.7
서비스, SOC, 기타	29.8	21.2	20.0	30.4	41.9	44.2	46.1	42.9	40.7	41.9

출처: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업화 과정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농업 부문 하락, 서비스 부문 상승이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2013년 남한은 농림어업 비중이 2.3%, 광공업 비중이 31.3%, 서비스 부문 및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이 66.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상반된 산업 구조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은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 군사·경제 병진 노선과 자립경제 노선을 동시 추구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경제난이 도래한 1990년대 이후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다. 민수 부문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1990년대에 광공업 부문 비중은 급락하는 반면에 농림수산업 비중과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즉 <표 5-5>에서 보듯 2000년의 경우 광공업은 25.4%, 농림수산업은 30.4%,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44.2%의 비중을 각각 나타내는 등 산업 구조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배급제 붕괴와 식량난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이후 북한의 산업 구조는 산업생산력이 불균등하게 일부분 회복하는 추세 속에서 경제난 지속과 시장화 현상을 반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광공업 부문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업 부문 비중이 1990년대 이전으로 복귀하는 반면에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2 경제 부문별 현황과 과제

### (1) 기초 원자재 생산

북한의 산업생산력은 아직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이 199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초 원·부자재의 부족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공급 감소로 철강·시멘트·화학·비료 등 기초 원자재 생산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다시 중간재 생산 부문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최종 소비재의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몇 가지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통해 북한의 기초 원자재 생산력 실태를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표 5-6>을 보면 철광석·비철금속·강철·시멘트·비

표 5-6.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단위: 만 톤)

연도/ 부문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1991	816.8	22.7	316.8	516.9	80.4
1993	476.3	16.4	185.9	398.0	90.1
1996	344.0	11.8	120.8	379.0	53.6
1998	289.0	9.7	94.5	315.0	39.2
2001	420.8	9.2	106.2	516.0	54.6
2003	443.3	9.4	109.3	554.3	41.6
2005	491.3	10.7	116.8	593.0	45.0
2006	504.1	8.6	118.1	615.5	45.4
2007	513.0	9.2	122.9	612.9	45.4
2008	531.6	9.4	127.9	641.5	47.9
2009	495.5	9.1	125.5	612.6	46.6
2010	509.3	9.2	127.9	627.9	45.9
2011	523.2	9.1	122.5	645.2	47.1
2012	519.0	9.0	122.2	644.6	47.6
2013	548.6	9.2	121	660	48.5

출처: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 결과』, 각 연도

료 등 주요 기초 원자재 공급량이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미미한 회복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1년 대비 철광석 생산의 경우 2013년 현재 약 67.1%, 강철 약 38.1%, 비철금속 약 40.5%, 비료 약 60.3%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멘트만 유일하게 약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멘트 생산 부문이 다소 자본 투자 규모가 작고, 북한의 대표 시멘트공장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 해외자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주민을 총동원해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양 10만 가구 아파트 건설, 희천발전소 건설 등 각종 건설 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하게 되면서 시멘트공장 부문 설비 투자를 우선 시행하였다.

## (2) 에너지 생산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북한의 산업 가동률을 떨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식량난과 더불어 북한 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수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북한이 1980년대 수준의 산업생산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 추이와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 원유 도입

우선 원유 도입량부터 살펴보면 1990년에 1,847만 배럴을 도입한 가운데 2012년에는 383만 배럴만 도입함으로써 1990년 대비 약 20.7%에 불과하다. 냉전시대에 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구상무역 방식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은 국제 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했으나 외화 부족으로 말미암아 원유 도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1992년부터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 결제를 북한에 요구함으로써 북한은 최저 한도의 원유만을 도입하게 되었다.

표 5-7.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만 톤, 만 배럴, 억 kWh)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석탄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50	2,500	2,550	2,580
원유 도입	1,847	1,114	667	686	369	285	437	390	384	387	379	385	384	383
발전량	277	247	231	213	170	194	190	206	225	255	235	237	211	215

출처: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각 연도.

〈표 5-7〉을 보면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으로부터 연 300만 배럴대 수준의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의 대부분은 군 경제와 관련된 산업 및 기간산업 부문, 가장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수송·운송 분야,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착화용 등에 주로 이용되고 북한 가계의 난방·취사용 목적의 사용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가정의 석유 소비는 2011년 기준 전체 수요량의 약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가정연료는 나무류, 무연탄, 갈탄, 진탄 등 가공되지 않은 석탄류 순으로 조사됐다.

### 석탄 생산

원유 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북한은 산업연관 관계 회복 및 경제 정상화를 석탄 생산 정상화에 두고 노력해 왔다. 북한은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sup>14</sup>이라고 강조할 정도다. 그러나 〈표 5-7〉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1990년 3,315만 톤에서 2012년 현재 2,580만 톤인 77.8% 정도로만 회복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석탄 생산 부문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부터 자력갱생발전 노선에 따라 산업 에너지를 석탄에 의존하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을 취해 왔다. 즉 석탄 에너지에 토대를 둔 공업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의 1980년대 석탄 생산은 이미 심부화(深部化)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또 채탄 장비 노후화, 신규 설비 투자 부족, 자재 공급 애로까지 겹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점감 추세를

나타내었다. 여기에다 1990년대 중반에 3년 연속 일어난 대규모 홍수는 서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있던 많은 탄광을 파괴시켰고, 당시 수해를 본 탄광들 가운데 많은 곳이 아직도 과거 수준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력 생산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원유 도입량과 석탄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전력난으로 연결되면서 전력 생산량 또한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5-7>에서 보듯 북한의 전력생산량(발전량)은 2003~2008년 6년간 연평균 5%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했

지만 2009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 2012년 현재 1990년 생산량의 77.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전국의 강·하천을 활용한 중소형 발전소 건설 운동을 벌이고, 2000년 이후에는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희천발전소 등 중·대형 수력발전소 20여 개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들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전력 생산 증대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전력난에 대응해 북한 당국은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2003~2005년)을 세우고 북창·평양 화력발전소 등 핵심 석탄 화력발전소의 노후화된 발전설비 교체 및 보수, 전력 및 석탄 생산에 자본·노동력·수송 등의 집중 배분, 일부 탄갱의 기술 개선 및 설비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희천발전소

메탄가스 등 대용 연료 개발 및 풍력, 태양열, 조력 등 대체에너지의 활용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국제 사회와의 경제 협력 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역부족이다. 북한 전력산업의 정상화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 (3) 식량 생산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 집단영농 생산 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침체 등으로 인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여 만 톤의 부족 현상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7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한 546g만을 배급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과 일부 자체 수입 능력 유지 등으로 기근 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이 감소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 급락,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도 400만 톤 이하로 급감하면서 심각한 기근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표 5-8>에서 보듯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995~1997년 3년간 식량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 감량배급(1인당 546g/일) 기준으로도 식량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표 5-8.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단위 : 만 톤)

연도	1995	1996	1997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식량 수요량	534	529	530	518	536	542	548	545	560	543	540	548	546	534	540	543
전년도 생산량	413	345	369	422	395	413	425	431	454	448	401	431	411	425	445	484
부족량	121	184	161	96	141	129	123	114	106	95	139	117	135	109	95	59

※ 주: 식량수요량은 농촌진흥청 추계 시 감량배급(성인 1일 546g) 기준(1995~2010), WFP/FAO 추계 시 1일 최소기준량(인당 458g)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것임.

출처: 농촌진흥청(1995~2010, 1~12월 기준), WFP/FAO(2011~2013, 11월~10월 기준)



협동농장의 거름주기



모내기 모습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 조건, 남한의 지속된 비료 지원과 국제 사회의 농업 지원, 북한 당국의 식량 증산 독려정책 등에 힘입어 400만 톤대 생산을 회복하였다. 특히 2011~2013년 3년간 연평균 약 450만 톤의 생산량 수준을 보여 2013년 부족량이 1990년대 이후 최저치인 약 59만 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매년 약 20만~30만 톤의 상업용 식량 도입량, 주민들의 소토지 경작에 의한 식량 생산량, 시장의 활성화에 의한 식량 거래 등을 고려할 때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북한 식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도 일부 지방과 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분배 체계 왜곡과 시장의 단속, 부패 만연, 경제 양극화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 이후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빈민층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 계층의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3 세계 식량불안 상황’ 보고서(2013.10)에서 북한의 2011~2013년 3년간 평균 영양실조 인구를 전체 인구의 31.0%인 760여 만 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만성 식량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치는 근본 개선책이 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분조관리제’ 개선(1996년), 20만 정보에 이르는 토지정리사업(1999~2005년), 식량작물 위주 및 밀식 재배로 대표되는 주체농정의 수정, ‘기간공업과 농업 3년 연속계획’(2006~2008년)에 의한 농업 예산 지출 증대, 7·1 조치를 통한 협동농장의 부분 분권화 조치 및 개인 경작지 확대, ‘포전(圃田)담당책임제’의 일부 실험, ‘6개월 농사제’<sup>15</sup> 등을 실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집단 경작 방식 및 소유제를 개혁하지 않아 농업 생산력의 일대 전환을 일으킬 만

한 증대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7·1 조치에 따른 부분 개선조차도 3년 만에 중단하였다.



북한의 다락밭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따라 협동농장에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분조 내 최종 생산 단위 규모를 3~5명으로 축소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하고, 생산량 초과분의 자율 처분 및 현

물 분배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과분마저 국가 수매로 하고 기존의 협동농장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1980년대 초반 인민공사를 해체한 중국의 농가생산책임제 개혁처럼 소유제 개혁을 시행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

분조관리제는 1966년에 모든 협동농장에 도입한 제도로, 협동농장의 기층 단위인 분조 내 노동 단위(10~25명)에 일정 면적의 농경지와 생산 도구 등을 주고 국가가 해당 분조의 정보당 수확량을 정하여 수행 정도에 따라 분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1996년에 식량난 심화로 곡물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분조 내 노동 단위 규모 축소(7~8명), 분조에 목표 생산량의 초과분에 대한 현물 처분권 부여 등 일부 내용을 바꾸었다. 그러나 목표량 자체가 비현실적인 데다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 자체도 늘 부족해서 1990년대의 분조관리제 개선 조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2004년부터 협동농장 분조관리제의 분조 내 노동 단위 규모를 7~8명에서 3~4명으로 축소하여 가족 단위 영농이 가능하도록 시범 실시한 제도다.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2006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2012년 이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 (4) 재정 규모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 배분 기능, 경제 주체들에 대한 통제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재정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가 국영기업소의 자본 형성 및 투자 외에 운영 자

표 5-9. 북한의 재정 규모 추이

연도	달러 표시(억 달러)	북한 원화 표시(억 원)	대미 환율(원)
1990	165.9	355	2.14
1994	191.7	414	2.16
1995~1997	-	-	-
1998	91.0	200	2.20
1999	92.2	200	2.17
2000	95.7	210	2.19
2001	98.1	217	2.21
2002	-	-	-
2003	22.3	3,234	145
2004	25.1	3,488	139
2005	29.0	4,057	140
2006	29.7	4,193	141
2007	32.6	4,406	135
2008	34.7	4,510	130
2009	35.9	4,815	134
2010	51.3	5,210	101.6
2011	57.7	5,669	98.3
2012	61.2	6,217	101.5
2013	66.2	6,563	99.2
2014	71	6,990	98.4

※ 주: 2014년 재정 규모는 계획 규모. 북한의 예결산은 매년 증감률만 발표하므로 금액은 추정치, 달러 표시 금액은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실제 환율과 다를 수 있음.

출처: 통일부

금까지 부담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까지도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다. 소련의 경우 1980년에 65% 수준이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이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1996~2001년의 경우 90% 안팎 수준이었다.

<표 5-9>를 보면 달러화 기준 북한의 재정 규모는 식량난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1994년 191억 7,000만 달러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2003년 까지 지속 감소하였다. 2004년부터는 재정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약 71억 달러(예산계획 기준)로 1994년 대비 16.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부



터 급격히 하락하여 2009년부터 20%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규모 축소는 북한의 계획경제 기능 전반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부문에서 계획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왜곡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 위기가 지속되자 북한은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재정 개혁도 함께 실시하였다. 즉 북한은 7·1 조치를 계기로 재정관리 체계를 지출에서 수입 위주로 바꾸고 재정 확충에 치중하기 시작하였고,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해 가격편차 보전금, 기업보조금 등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 및 배급제를 축소 시행하였다. 반면에 예산 수입 증대를 위해 토지 사용료 등 새로운 조세 항목을 신설하고, 2003년 5월 10년 만기의 인민생활공채(복권방식)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06년에 토지사용료를 부동산사용료로 개편하고, 사회보험료를 기업에도 부과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통화 발행을 통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신·구 화폐를 1:100으로 교환하는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 개혁들은 재정 비중을 과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의 낮은 재정 비중은 산업 생산력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다.

최근에는 재정이 사실상 비계획경제 부문의 경제 활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계획 부문의 경제 단위들이 시장과 연계하여 계획지표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 단위가 시장 활동에서 얻은 수익금을 이익금, 거래 수입금 등 국가납부금 명분으로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 당국은 국가 재정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각종 공공재 건설, 각급 학교 운영비, 인민군대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보급 등도 '사회적 과제'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준조세들로 충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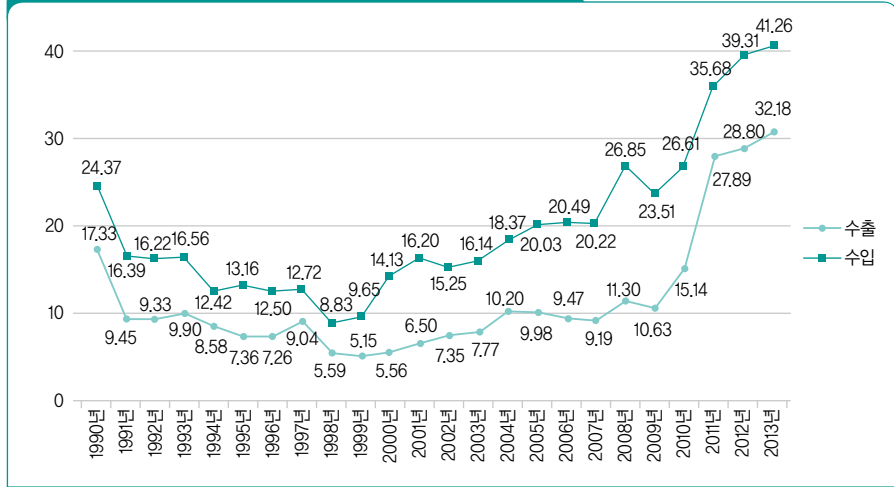
## (5) 대외무역

### 수출입 추이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 발전 노선을 정책 기조로 삼아 오고 냉전 시기 소련이 원유 등 전략 물자들을 사회주의 우호 무역에 따라 공급했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

그림 5-2.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북한 대외무역동향』, 2013.

존도가 거의 10%가 넘지 않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제난이 본격화하기 직전 무렵의 무역 규모가 가장 높던 1990년에는 42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도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림 5-2>을 보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탈냉전 이후 1998년에 14억 4,000만 달러까지 급락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한 국민총소득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는 1999년부터 회복 조짐을 보였다. 2000~2013년 4년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00년대 전·후반기로 기록을 보인 경제성장률과 달리 매년 연평균 13.2%의 성장세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2006년 이후 연평균 0%대인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무역액은 커다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북한과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액을 수집해서 추산하고 있으며, 남북교역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기간의 남북교역액까지 포함시키면 북한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연평균 12.2%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게 된다.

### 대외무역 구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경제의 기초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둔 무역의 확대가 아님을 볼 수 있다. 북

한 무역 규모의 양적 확대는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및 후진국 전형의 무역 형태로 구조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세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역 규모와 적자 규모가 함께 확대되는 만성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1999년 10년간 연평균 4억 9,000만 달러에서 2000~2013년 4년간 연평균 약 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내부에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수출은 1차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수출 증가가 수입 확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의 무역 규모 증가는 중국과 남한에 편중되는 구조,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빠르게 증대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999년에 북한 대외 무역에서 북·중 무역과 남북 교역을 합한 비중은 약 38.8%(남북 교역까지 합한 총액 18억 1,000만 달러 가운데 북·중 무역은 3억 7,000만 달러로 약 20.4%, 남북 교역은 3억 3,000만 달러로 약 18.4%)였지만 2013년에는 약 91%(남북 교역까지 합한 총액 84억 8,000만 달러 가운데 북·중 무역은 65억 5,000만 달러로 약 77.2%, 남북 교역은 11억 4,000만 달러로 약 13.4%)로 급증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대남 도발 이후 남북 교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북·중 무역 비중은 증가함으로써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북 교역을 제외하고 북한 대외무역에서 대중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9년만 해도 25%였지만 2013년에는 89%를 넘어섰다.



중국 세관을 통과하고 있는 화물차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중 무역의 비약적 증대는 다음 네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광물자원 투자가 2005년 이후 증대하기 시작하고, 이에 힘입어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

표 5-10.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연도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	25.0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0	78.5	83	89.1	88.3	89.1

※ 주: 남북 경협을 제외한 비중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이 노후된 산업 설비의 기술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장 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대중국 수입 수요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대로 중국산 공산품의 북한 시장 지배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넷째는 북한의 도발로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이 중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응해 중국도 북·중 경협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로 북한 무역 구조는 기초 원자재, 공업완성품, 에너지, 식량 등을 주로 수입하고, 수출은 1차 자원(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및 위탁가공 제품에 편중되는 후진국 전형의 무역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2000년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광물자원(광물성제품 및 비금속제품) 비중은 50%에 못 미쳤지만 2013년 현재는 70.6%나 되고 있다. 여기에 농림수산물 제품까지 합하면 1차 자원 수출 비중이 76.3%나 된다.

반면에 북한은 2013년 대중국 수입에서 원유 등 광물성 연료 20.6%, 섬유제품 17.5%, 플라스틱·화학제품 11.2%, 기계제품 7.2%, 전기전자제품 6.9% 등 1차 산품부터 공업품과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수입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원유 등 광물성 연료, 식량, 비료 등을 3분의 1 정도를 지속 수입하는 경직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위탁가공 원부자재인 섬유제품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이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대중 무역편중 현상, 후진국형 무역 구조, 만성적 무역 역조 현상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3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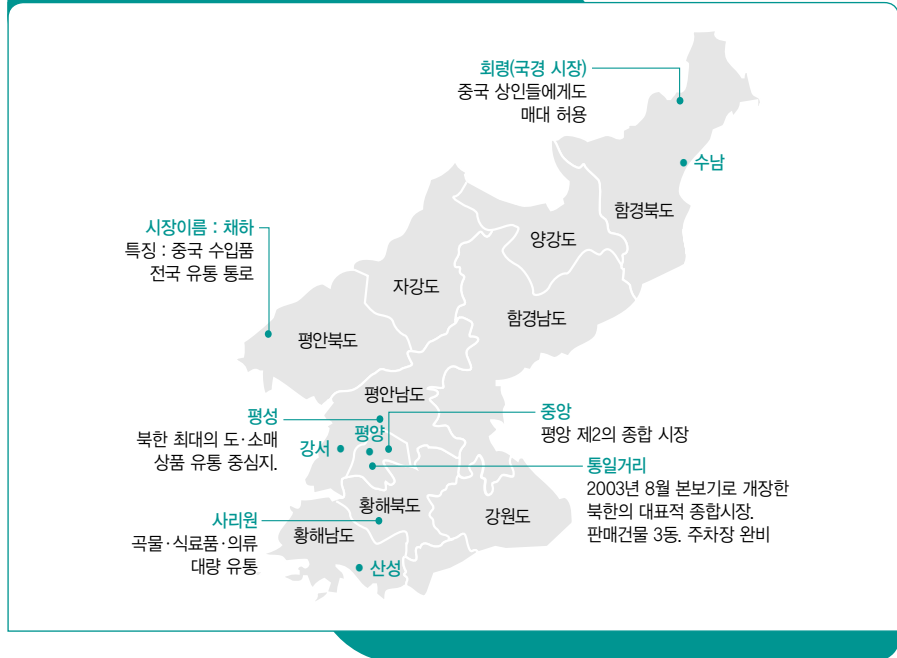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난은 산업연관 관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축소재생산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의 투자 재원을 군수공업 및 연관 기간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민생경제는 자력갱생 원리에 맡기는 이원적 경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경제 건설 노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명칭 아래 전통의 군사·경제 병진 노선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화 개혁을 시행하지 않은 채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 → 시장을 통제하는 ‘역개혁(counter-reform)’ → 시장 묵인 → 시장 기능 부분 활용의 재시도 등을 반복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 시장의 활용과 통제

#### (1) 시장화 현상

주민들의 민생경제를 자력갱생 원리에 맡긴 북한의 정책은 점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을 확산시켜서 2000년대 초에 북한 경제 내 시장이 양과 질로 구조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식량 및 생필품의 부족이 확산되자 기존의 10일장 형태로 열리던 합법 농민시장이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으로 변화되고, 1990년대 중반 들어 배급제가 마비되자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국가가 금지하는 식량·공산품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3.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배급 중단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한 식량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거래자’로서 농민시장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점차 국경무역 개방 및 국가재산의 전유·약탈·탈취 등을 통해 식량과 생필품, 기타 물품들이 장마당에 유입되자 여러 번의 교환 활동으로 부가가치와 교환가치를 획득하는 원리를 깨닫고 상업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장마당에 참여한 개별 주체들은 처음에는 ‘등짐장사’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지역 간에 부족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장사인 ‘되거리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장사’ 및 ‘차판장사’ 등으로 전문화·분화해 나갔다.

1990년대 말부터는 상설시장에서 장사하는 ‘매대장사’로 정착해 나갔다. <그림 5-3>에서 보듯 대표성을 띠는 시·도 종합시장



지방의 장마당

들이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발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소도시까지 유통망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계획경제 부문 내의 국영기업소나 생산 단위들은 계획 체계가 마비되자 ‘계획지표’가 아닌 ‘기업 자체 지표’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로 국가계획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즉 본래 그 국영기업소의 생산 활동과 상관없는 무역 활동이나 상업 활동 등으로 국가납부금을 내거나 투자자인 ‘돈주(전주)와 결탁해 생산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 활동 내에서 합법 비계획(시장) 활동 또는 불법 비계획(시장) 활동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경제 내에 시장화 현상이 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된 것은 1995년 공장·기업소·기관별로 식량 문제를 알아서 자체 해결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경제 단위는 식량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각기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어서 상업 및 무역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북한의 유통시장이 확장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1990년대 중반에 군부가 협동농장, 공장, 철도, 운수, 체신 등 경제 부문의 전 영역에 걸쳐 경제 활동의 대체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군 경제 기관들에 의한 비계획 활동도 증가되었다. 군 및 당의 경제 기관과 같은 특권 기관들이 자본을 보유한 이른바 ‘돈주’들과 결탁하여 비계획 경제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북한의 시장화 공간은 더욱 확대되고,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 경제 내의 시장화 현상이 유통 부문을 넘어 생산 부문에까지 확산되고, 시장 활동의 행위자도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당·정·군 기관들에까지 확대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2) 시장 기능의 부분 제도화

시장화 현상의 양적 확산과 질적 구조화 조짐은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계획

기능의 분권화와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을 모색하도록 압박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재정 위기로 국가에 있는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과 이와 연관된 기간산업 및 중공업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여타 경제 부문들은 불가피하게 일부분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위해서는 여타 경제 부문들로부터 잉여 경제의 이전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시장 기능의 부분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셋째로 이미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 공간을 제도 및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군수생산 부문은 계획경제 체제로 국가가 관리하고, 민수생산 부문의 경우 부분 분권화 조치와 일부 시장경제 기능의 도입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표명하였다. '실리사회주의'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의 성과에서 실리를 최대한로 획득해야 한다는 논리다.

7·1 조치는 ①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경영 분권의 부분 허용 ②'변수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지표 변경 ③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 가격의 현실화 ④협동농장 분조 축소와 개인경작지 규모 확대 ⑤주민들의 모든 소비품 및 식량 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2003년), 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2002년), 수입물자들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2004년)의 개설 ⑥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치로서 2005년 10월경까지 추가되고 보완된 조치를 해 나가며 시행되었다.

그러나 7·1 조치는 “계획형 경제관리 내에서의 부분 시장 허용”이라는 취지가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에 북한 당국은 2005년 10월 이후 7·1 조치를 후퇴시키고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 (3) 시장 통제와 화폐 개혁 시행

#### 시장의 통제

북한은 2006년 이후 다시 시장 통제와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전통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왜냐하면 시장기능의 제도적 부분 허용 이후 북한당국이 체제위기 의식을 가질 정도로 시장이 발전해 나갔기 때문이다. 시장이 생계형적 형태에서 부의 축적 공간으로 발전되어 나감으로써,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중간 계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개인 경제활동(임노동, 장사, 개인 경작, 개인 가정교사, 개인 식당운영, 개인 숙박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계획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력 이탈 현상이 확대되어 나갔다. 나아가 계획경제 부문이 점차 시장경제 부문에 침식당하거나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인민경제 내에 군 경제, 당 경제 등 특권경제 부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권경제 기관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합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불법 행위로 시장에서 더욱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부패경제 확대 현상도 나타났고, 북한 주민 대부분의 소득 취득과 소비 생활이 공식경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심각한 체제 위협을 느끼면서 시장 통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종합시장의 개장시간 제한, 장사 연령 제한, 매대 장사품목 수 제한, 매뚜기 장사꾼(종합시장에 고정 매대가 없는 장사꾼) 단속 등의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종합시장마저도 철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시장을 없애려는 북한 당국의 조치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공식 임금은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매개로 한 개인경제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조차도 재정난의 지속으로 사실상 시장을 활용하는 '변용'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2009년에 들어와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하면서 대규모 도매시장의 대명사인 평성시장을 폐쇄하였

고, 계획경제 체제의 복원을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 화폐 개혁

화폐 개혁은 예고 없이 신·구 화폐를 1:100 비율로 전격 교환하는 조치였다. 북한 당국이 이 조치만 내렸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 통제 목적의 화폐 개혁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조치와 함께 가구당 북한 원화 10만원(후에 50만원으로 조정)까지만 교환해 주고 종합시장 철폐, 외화 사용 거래 금지 조치들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의 복원을 목표로 했음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민간에 유통되는 화폐를 모두 회수하고 국가가 다시 발행하는 화폐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발권 능력 회복과 함께 재정 확충도 도모한 것이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군 및 당 경제 부서 산하에 무역회사가 난립돼 있어서 이들 특권경제 기관에 국가 재정에서 파악되지 않는 외화의 축적을 금지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장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화폐 개혁은 시행되자마자 북한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경제정책들에 많은 차질과 타격을 자초하였다. 첫째로 무엇보다 북한 원화 가치의 추락과 북한 경제의 위안화·달러화 현상을 가속시켰다. 둘째로 물가의 극심한 불안정과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였다. 북한의 시장 물가는 2013년 11월 말 현재 쌀 1kg의 가격이 화폐 개혁 직전보다 약 2.5배 상승하는 등 250~300%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셋째로 화폐 개혁은 단기로 북한 당국의 재정 능력을 확충시켜 주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장마당 경제의 침체와 그럭저럭 작동되고 있던 국영기업소와 계획경제 부문까지도 위축되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북한의 화폐

화폐 개혁은 북한 경제에 깊이 확산된 시장화 현상에 제동을 걸고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졌으나 공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북한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오히려 시장 활동이 제한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북한 당국은 2010년 2월 초 이후 다시 종합시장 및 외화 거래 허용과 특권 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의 활동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후 시장을 김정 은 정권 출범 때까지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 화폐 개혁의 내용

- 신·구 화폐 1:100 교환(저금소 저축은 1:10 교환)  
가구당 10만 원 상한 교환 → 나중에 상한선이 5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짐
- 화폐 개혁과 동시에 시행된 조치들
  - ① 종합시장 폐쇄, 농민시장으로 강제 전환
    - 상인 보유 물자, 화폐 모두 국영상점으로 이관 및 국가기관 납부
  - ② 외화 사용 금지
    - 개인의 외화 상거래 불법, 보유 외화 모두 당국에 헌납
    - 기업소·무역회사 외화 수입은 24시간 내 저금소(은행) 입금
  - ③ 노동자·농민의 임금 종전대로 지불
    - 1인당 500원 배려금 지불, 농가 가구당 15만 원 현금 분배

#### (4)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 재시도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북한 경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1990년 이후 산업연관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2013년 말 현재까지도 아직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산업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극심하게 확대된 경제의 양극화 해결과 함께 민생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건설 노선과 시장 통제 정책은 민생경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게다가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2012년 강성국가 전략이 주로 평양 위주의 위락시설 및 건축물 건설에 집중됨으로써 일반 주민 및 지방 주민들의 민생고가 악화되었다.

셋째로 경제관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의 위기 상황이 더욱 확대되는 모순에 처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북한 경제 내에 시장이 체계를 갖춰 고착되어 있음에도 시장 기능을 제도화하지 않은 채 시장 통제와 묵인 정책을 반복해 왔다. 이는 일반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어렵게 한 반면에 특권 세력 및 기관들에 의한 임대 소득과 부패 경제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즉 시장 활동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 및 잉여가치가 국가의 재정으로 유입되어 산업경제 정상화에 투입되는 경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암시장(black market)만을 확산시켜 왔을 뿐이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한 가운데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일부 경제 단위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일 정권처럼 북한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시장화 현상 일부를 수용해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거 7·1 조치가 공식 추진된 것과 달리 아직 대외적으로 그 전모가 공표되어 있지 않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신보,<sup>16</sup> 해외 언론과의 북한 경제학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분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농업 분야에서는 분조(15~20여 명, 50정보) 내에서 포전담당책임제(3~5명)를 실시하고 국가 몫 납부 후 현물 분배를 실시하는 것, 둘째로 공장·기업소에 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일부 생산품의 시장가격 판매를 허용하며, 판매 수입 가운데 국가 몫을 납부한 이후에는 이익금을 자율 처분토록 허용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내용은 아직 대외로 공식화되지 않아서 평가하기 곤란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7·1 조치 중단 이후 더욱 확대된 제도와 경제 현실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화 현상을 일부분 재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경제 건설·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아래 시장 기능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므로 의도하고 있는 성과들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 2 제한적 개방

### (1) 모기장식 개방과 4대 특구 개설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연관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 되기 시작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는 소련으로부터 북한 산업 가동에 필요한 원유, 코크스, 기초원자재 등을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일성 사회주의 체제 고수가 최우선 과제인 북한으로서는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조차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 개방’론을 대외 경제 개방론으로 내세우고 사상 최초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1991년 12월 경제특구로 선포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고 이 지역이 시장경제 독자 단위로 운용되도록 허용하였다.

북한은 처음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중개 등 기능을 종합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자를 공업 부문 약 36억 달러, 인프라 부문 약 9억 달러, 서비스 부문 약 1억 달러 등 총 투자 건수 119개에 47억여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1996년 9월과 199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포럼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나진·선봉 경제특구 정책 역시 실패로 끝났다. 2000년 12월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약 1억 2,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그쳤다.<sup>17</sup> 그나마도 대부분 호텔, 식당, 카지노, 운수업, 상업 등 서비스 분야에 치중되었다. 투자자도 화교 자본이 거의 3분의 2, 조총련 자본이 약 20%를 차지하는 등 서방 자본의 투자는 10%도 유치하지 못했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모기장식 개방론’에 의거해 내륙 지역과 차단된 고립된 경제구역으로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1990년대 나진·선봉 경제특구 정책은 성공할 수 없었다. 대외개방은 대내 개혁과 동시에 진행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이지만 북한은 대내경제의 부분 개혁조차 시행하지 않았고, 남한 자본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1990년대 9년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침체된 산업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변방의 경제특구를 좀 더 확대해 나갔다.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나선·선봉 경제특구 외에 신의주·개성·금강산 등까지 합한 4대 경제특구를 개설하였다.

신의주는 특수행정 단위로서 중앙의 관할 아래에 두지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자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다. 정치제도 면에서는 홍콩식 제도, 경제특구 제도 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선천 특구를 선별 혼합한 방식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획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반대로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자본이 단독 투자·개발하는 형태의 특구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조항이나 남북한 합의와 달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이에 따른 남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잠정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시행된 2009년 이후 몇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 166일간이나 잠정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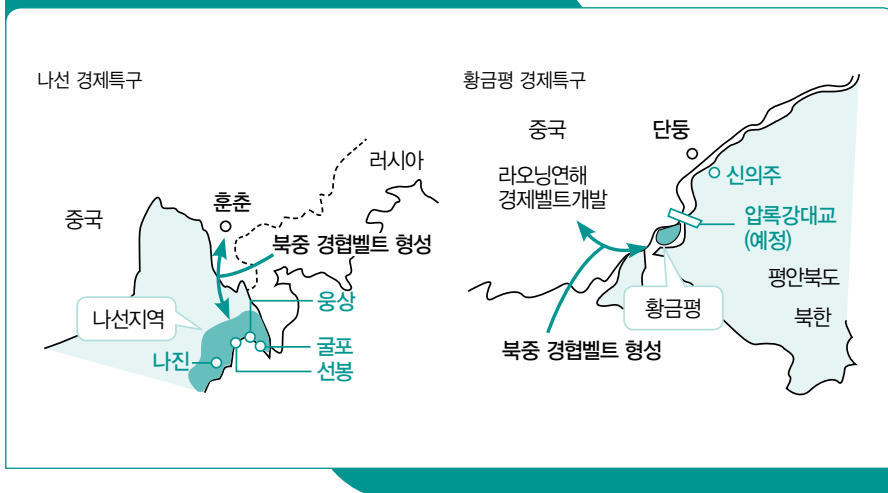
## (2) 대중국 개방 확대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연이은 대남 도발로 남북 경협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정책을 변화시켰다.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1991년에 개설된 이래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나선 경제무역 지대와 함께 중국과 공동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 지역의 교량,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려는 데는 정치 요인도 있겠지만 내심으로는 북·중 간 경제적 수요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5~2010년) 추진 이후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동북 3성 지역을 삼았다. 따라서 동북 3성 지역 개발에 주변 접경 지역인 몽골,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 지역 연계 발전이 절실해졌다. 특히 2009년 9월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의 개발에는 북한의 북부 지역 항을 이용한 동해로의 출로 확보가 절대 요구되었다. 결국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수요와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 수요가 일치함으로써 북·중 간 접경 지역 공동 개발이 추진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2011년 6월 공동 착공식 당시 합의한 양 지역 경제특구 개발은 서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북·중 간에 4대 산업(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을 육성하기로 합의한 황금평·위화도 특구의 경우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진·선봉 특구의 경우 중국 자본 투자가 주로 식당·가라오케·물류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이고, 북한의 나선특구 개발 계획에 필요한 제조업 부문 투자는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 자본의 대북 투자

그림 5-4.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역시 북핵 문제가 적극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위험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중 간 접경 지역의 공동 개발은 북한을 좀 더 개방화로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가 적극 도입되지 못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중국 자본 역시 대규모로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북·중 간 경제특구 공동 개발은 향후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 (3) 경제개발구 신설

최근 북한은 나선,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4대 중앙 특구 외에 지방에도 경제특구를 개설하려 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지방급 특구 13개, 중앙급 특구 1개를 신설할 것을 발표하였다.<sup>18</sup> 북한은 중앙이 관리하는 ‘국가급 경제특구’와 지방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이원화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함경남도 북청군의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의 ‘온성섬 관광개발구’, 남포시의 ‘와우도 수출가공구’처럼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일종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소규모로 개설하는 특구다. 북한은 이를 위해 내각 산하에 기존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기구로 민간급 단체로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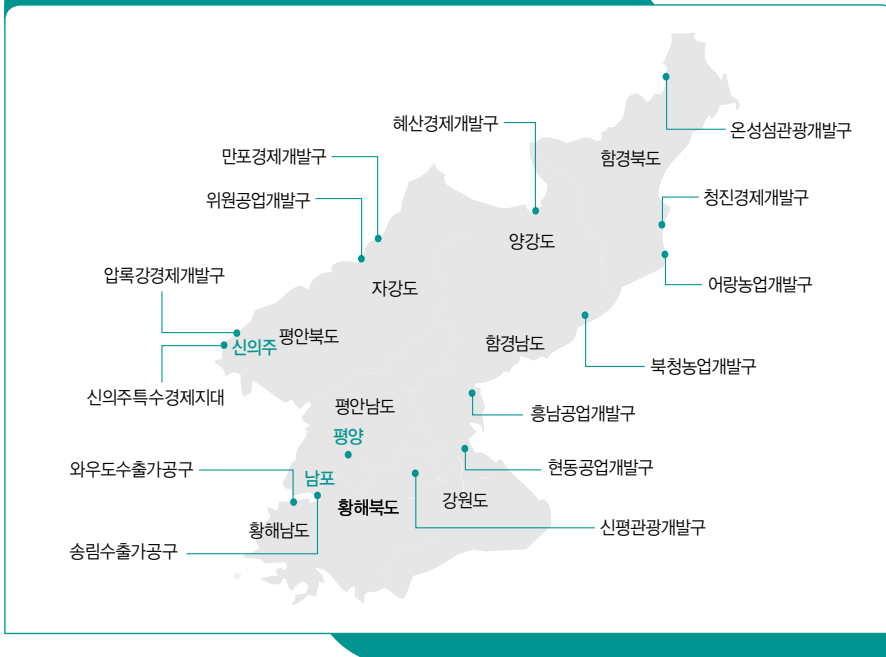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여러 면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신설 개발구들의 규모를 1.5~8km<sup>2</sup>(약 45만~240만 평)로 정하고 총 15억 9,000만 달러의 외자 유치를 의도하고 있지만 외자 유치가 쉽지 않은 여러 현실 여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북한의 시장 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시장경제 의지 및 전문가 부족 등의 조건들은 외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중국 정부가 확고하게 개혁·개방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부터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외자 유치의 관건은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인프라 등 자본 유치의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핵 보유 의지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림 5-5. 북한이 추진 중인 14개 경제개발구(2014.6 기준)



### 3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김정은 정권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적극 편입하여 해외 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제도는 계획경제이지만 현실은 시장화가 확산되어 있는 경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화 확대를 통해 산출되고 있는 부가가치들을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정권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대신 김정일 정권이 추진하던 ‘7·1 조치’와 ‘4대 경제특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다시 시도하려 하고 있다. 즉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아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2012년 김정은의 ‘4·6 담화문’에서 “선군경제 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 2013년 3월 경제 건설·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선포하였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열병식에서 행한 연설문에서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서는 안 된다”라고 표명하였다. 2012년 11월 9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군대에 있어서 원민(援民)은 결코 부차적인 사업도 아니며, 실무적인 문제도 아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사회적인 과업으로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즉 핵 능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모색하고자 하는 이중 전략을 김정은의 방식으로 재차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는 한정된 재원을 여전히 핵 개발 및 국방공업에 우선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은 일부에서만 시범 시행되고 있을 뿐 아직 공식으로 전면화·제도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 역시 지방의 시·도·군에도 경제특구를 개설하려는 면에서는 대외개방 폭을 좀 더 넓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경제개발구 개설을 “개혁·개방의 맥락에서 보지 말 것”<sup>19</sup>을 강조하고 있어서 여전히 제한된 개방 정책의 틀 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대외 개방은 대내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포기 의지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내 개혁도 거부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개방 정책이기 때문에 외자 유치의 조건이 개선될 여지도 낮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이중 전략은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제한된 성격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선포하면서 당시 중국이 초급 사회주의 단계에 있다고 보면서 이데올로기를 수정하고, 국제시장에의 적극 편입을 의도하는 비교우위 발전 전략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모델을 경제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개혁·개방 용어를 적극 사용하면서 중국경제의 현대화와 시장경제화를 의도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유제 개혁도 동시에 진행하여 다원화된 소유제 방식을 허용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 ‘북한식 변화 경로’의 중심스러운 모색·중단을 반복해 왔다. 제한된 개방과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이라는 양면 정책을 반복함으로써 북한 경제 체제의 모순을 확대시켜 왔다. 북한 체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김정은 정권 역시 이러한 반복된 정책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체제의 딜레마란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경제 개발을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내구력에 손상을 입히고 체제 전환을 가속화시켜 나갈 가능성을 의미한다. 세습독재 체제인 북한으로서는 항상 북한식 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제 회복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의 극복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Footnote

- 1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433
- 2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183
- 3 대안의 사업 체계란 김일성이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남포시 대안구역)을 방문하여 지시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경제 관리 형태를 말한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공장·기업소의 최고지도 기관으로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종합 지도하는 생산 지도 체계를 뜻한다.
- 4 청산리방법이란 김일성이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협동농장을 방문하여 지시한 데서 비롯된 경제 관리 방식을 뜻한다. 청산리방법은 당초 농업 분야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모든 경제 분야의 기본 지도 방법으로 통용되었다. 김일성이 지시한 청산리방법의 내용은 ①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돕고 뒷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서로 합심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것 ②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 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는 것 ③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 각각의 열정과 창의성을 동원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④일반 지도와 개별 지도를 옳게 결합하는 것 ⑤사업에서 선후를 가려 중심 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⑥모든 사업을 계획하여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 등이다.
- 5 『경제사전 2』,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p.208
- 6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 7 『로동신문』, 2012. 10. 21.
- 8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715-716.
- 9 『로동신문』, 1966.10.8.
- 10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70~72.
- 11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 전문, 2013년 4월 2일자.
- 12 통일연구원, 『2008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2009, pp.21~24 참조.

- 13 노동신문, 2013.3.19일자.
- 14 민주조선, “어버이수령님의 경제강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2011.7.5일자.
- 15 ‘6개월 농사제’란 협동농장의 일부 경작지를 기관·기업소에 나누어 주어서 경작하게 하는 제도다.
- 16 조선신보는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서 새 경제관리 체계에 따른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고(2013.4.11),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013.11.6).
- 17 KOTRA, “2002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경제관계를 중심으로”,  
www.kotra.or.kr/main/info/nk.
- 18 노동신문 2013.11.23일자.
- 19 조선신보, “도 단위 경제개발구 창설의 의도와 발전 전망”, 2013.11.29일자.

# VI

## 북한의 교육과 문화

제1절 북한의 교육 제도와 학교생활

제2절 북한의 문예정책과 실태

제3절 북한의 언론과 기능

## Key Point

### 01

북한은 무상 의무교육을 표방해 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상 의무교육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 하고 교육 기자재 파손, 교육시설 낙후, 출석률 저하 등 유명무실해져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 02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지도자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의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등이다. 그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와 혁명 활동을 학습시키는 정치사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03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을 전달하는 선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과 예술 작품은 국가 독점의 통제 아래 미(美)를 추구하는 대신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강조한다.

### 04

북한 체제에서 언론의 일차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 사업을 선전·옹호하며, 당이 내세운 혁명 과업 실천을 위해 주민을 조직·동원하는 데 있다. 북한의 언론은 인민 대중의 집단 교양자, 조직 동원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 체제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제1절 북한의 교육 제도와 학교생활

### 1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

#### (1) 교육 목표

교육은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서 사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주목하여 광복 이후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제도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 전 교육, 무상 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 제도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의 교육 제도는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무상 의무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 심지어 학교 건물 관리에서 교육 기자재, 연료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학생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정, 부패의 일탈 행위 등이 교육에도 반영됨으로써 부정 입학과 성적 조작 등 각종 교육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

무상 의무교육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교육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육 기자재 파손, 교육시설 낙후, 출석률 저하, 수업 질 하락, 교권 하락 등과 같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교육 운영의 파행 최소화, 사회 전 분야의 사상성 이완 방지 등을 위해 정치사상 교육 강



화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 제도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일차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sup>1</sup>와 ‘교육법’ 등 북한의 교육 관련 법령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와 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은 교육의 목적에 따른 교육 정책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령

표 6-1. 북한 교육 관련 법령

연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채택 (제정) 시기	1977.9.5 노동당 제5기 14차 전원회의	1999.7.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847호 (2005.12.13, 2007.12.11 수정 보충)	2011.1.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355호	2011.12.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36호
구성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li> <li>• 사회주의 교육 내용</li> <li>• 사회주의 교육 방법</li> <li>• 사회주의 교육 제도</li> <li>• 교육 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 조 등 5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법의 기본</li> <li>•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li> <li>• 교육 기관과 교육 일군</li> <li>• 교육 내용과 방법</li> <li>• 교육 조건 보장</li> <li>•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등 6장 5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교육법의 기본</li> <li>• 무료의무교육의 실시</li> <li>•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li> <li>• 보통교육일군의 양성</li> <li>• 교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등 6장 5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의 기본</li> <li>• 고등교육의 실시</li> <li>• 고등교육기관의 조직</li> <li>• 고등교육일군과 학생의 조직</li> <li>•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li> <li>• 고등교육사업의 조건 보장</li> <li>•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등 7장 68조</li> </ul>
특징	김일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쳐 방향과 지침을 종합 정리한 문건	‘수재교육의 원칙’ 규정과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 및 교류 협조를 강조하는 ‘교육후원기금의 설립’ 등의 신설 규정	경제난 이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법규 규정: ‘교과서 및 교육기자재의 생산 공급(제16조)’와 ‘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제26조),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 강화 차원에서의 처벌 규정(제52조, 53조) 명시와 기초과학기술 및 외국어 교육 강조(제40조, 48조), 수재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사항(제11조, 23조) 명시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을 신설해 수재교육(42조)과 학생과학연구소 운영(43조), 초빙강의(44조), 실습견학답사조직(45조), 유학생교류(46조) 명시와 함께 연령 제한 없이 우수한 자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수재 교육 강조(제9조)

을 제정하여 북한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 교육 관련 법령은 취학전 교육, 초중등학교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 분야별로 학 교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내용, 행정 및 운영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 시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법 제정과 개정이 급격히 증 가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교육 관련 법령을 발표하였다. 교육법(1999), 보통교육 법(2011), 고등교육법(2011)에 이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 등이다. 이런 법령들은 1977년 9월 5일 발표된 ‘사회 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sup>1</sup>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북한의 교육 목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 닌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교육법’ 제1장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법에 명시 된 인재를 구체화한 인간형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전반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로 키우는 것이다.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 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교육 목적은 사회주의 헌법(1972) 제43조에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으로 키운다”로 명시되어 있다.<sup>2</sup> 북한이 교육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제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투쟁하는 공산주의 인간형이자 혁명 사상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형이다. 북한 교육에서 추구하는 공산 주의 인간형이 갖추어야 할 요소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혁명 사상이다.

북한 교육에서 혁명 사상 교육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 노동당 정책 및 혁명 전통 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등이다. 또 과학기술 교육 은 선진과학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다. 체육 교육은 노동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 목표는 공산주의 인간형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는 노동에 적극

임하는 인간,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춘 인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교육행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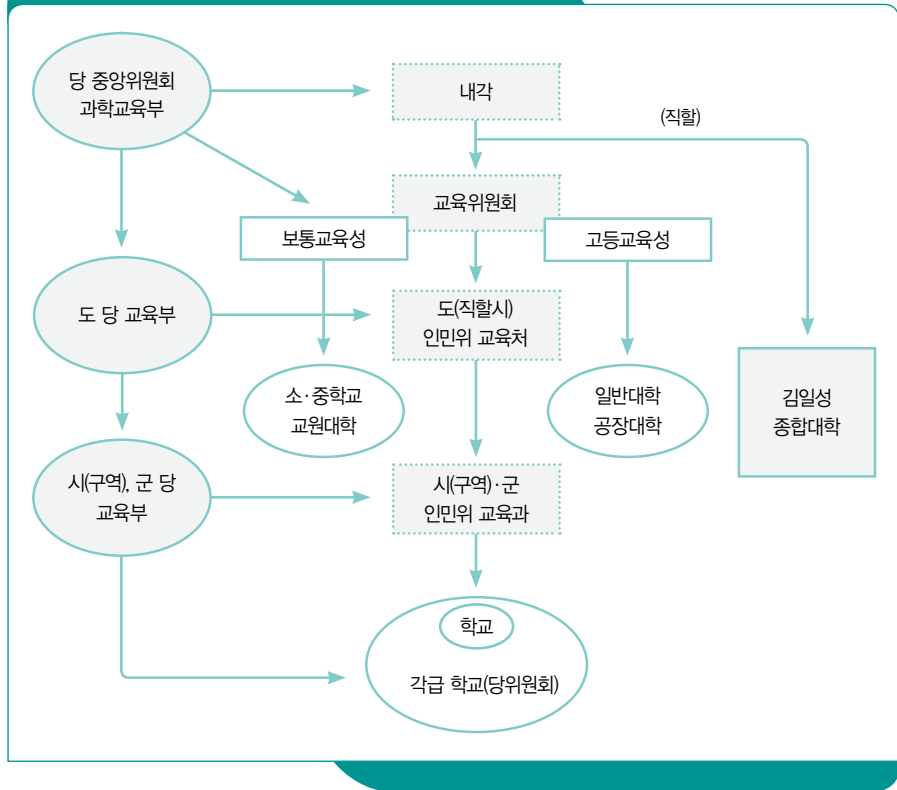
북한의 교육행정은 노동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다. 북한은 당-국가의 사회주의 체제로서 최고 권한을 쥐고 있는 당이 국가기구와 사회조직 일체를 통제하고, 이들 기구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수립과 지도 총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정책의 집행 및 교육과 관련된 행정의 총괄은 내각의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각급 교육기관은 당-내각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이 관계는 <그림 6-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당은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은 당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구체화해 관장하며, 학교는 교육을 실시한다.

## 노동당

교육과 관련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 위원회와 내각에 지시·전달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권한을 우선 행사하고 인사나 교육 문제를 다룬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형식상 교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지만 실권은 학교에 파견된 당 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이 장악해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고 교수 교양 사업과 사상 교양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 내각

행정·실무 업무는 내각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육성과 고등교육성이 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 유치원과 소학교·중학교 및 교원대학, 고등교육성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각각 관장한다. 교육성은 교육 지침을 각 도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교육과로 송부한다. 교육 지침이 각급 학교에 최종 하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이 실시된다.

### 학교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행정 조직은 학교장과 학교 단위 초급당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 각 분과와 경리주임 등으로 이루어

어져 있다. 중학교에서는 교과별 분과, 소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분과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학교 당 위원회가 있고, 이 당 위원회 산하에 교원사회 단체 및 학생 사회 단체 등 사회·정치 활동 조직이 있다.

당 우위의 통치 체제에서 당의 통제력은 실제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행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당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학교 관리·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의 권한을 능가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교육행정 체제는 교육 부문에 당의 개입이 제도화된 교육의 당 통제 체제라는 특성을 띤다.

### (3) 학제

#### 1) 교육 제도의 변천

##### 사회주의 교육 제도 확립

북한 교육 제도는 시기별로 정권 수립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사회의 필요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해 개편이 이뤄져 왔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정권 수립 초기의 북한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 도입 시기(1945.8~1950.6)로 학제 개편을 통해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학제로 재편되었다. 광복 후 6·25 전쟁 발발 전까지 북한 지역은 소련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위한 일련의 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 부문은 '북조선 학교 교육 임시 조치 요강' 발표(1945.10)에 이어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바꾸고 인민학교 4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년의 학제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의 북한 교육 제도는 사회주의 교육으로 개편을 시도했으며, 특히 문맹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교육을 위한 '성인학교 체제'가 도입되었다.

6·25 전쟁 후 복구시기(1950.6~1959.10)는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던 시기로, 이 시기의 북한 교육 제도는 전후 복구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라'는 구호 아래 학생들의 노력 동원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한편 1956년부터 4년제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58년부터는 중학교까지 7년제 의무교육을 확대

하여 노력 동원과 이데올로기 교육의 강화를 위한 체제 개편을 시도하였다.

1960년대 북한은 전후 복구와 함께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교육에서 기술 교육을 강조했다. 기술교육 강조 시기(1959.10~1966.12)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기술 전문학교를 창설한 데 이어 고급중학교를 철폐하고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하여 1인 1기 기술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학제는 4년제 인민학교, 3년제 중학교, 2년제 기술학교, 2년제 고등기술학교, 3~5년제 대학으로 구분되었다.

북한의 기술 교육 강조는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의 실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3년제 중학교와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어 인민학교 4년과 중학교 5년의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2년제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 ‘주체적’ 교육 체제 수립과 변천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주체적’ 교육 체제 수립이 시도되었다. 1972년 노동당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1975년 9월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포괄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 교육 전반에 걸쳐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어린이 교육보육교양법」 등이 제정·공포되었다. 학제도 2년제 유치원, 4년제 인민학교, 6년제 중등학교(1978년 고등중학교로 개명),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교육도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교육의 전문성과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수재 교육 등이 행해졌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해 각 시·도에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를 신설하고 컴퓨터 분야의 중등영재 교육 기관을 지정하며, 대학에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또한 소학교 4학

표 6-2.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6·25 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5~201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3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년부터 주 1시간씩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2년 9월에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11년 의무교육 제도가 2012년 9월 12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하기 이전까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 교육 기관인 인민학교는 소학교, 중등 교육 기관인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각각 개칭되었다. 북한은 2012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4년제 소학교 과정을 1년 연장하여 5년제 소학교, 중학교 6년을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를 분리하여 교육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2013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2014년에 시작하여 2~3년 안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난 이후 파행되고 있는 무상의무 교육제도의 재정비로 체제의 정비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학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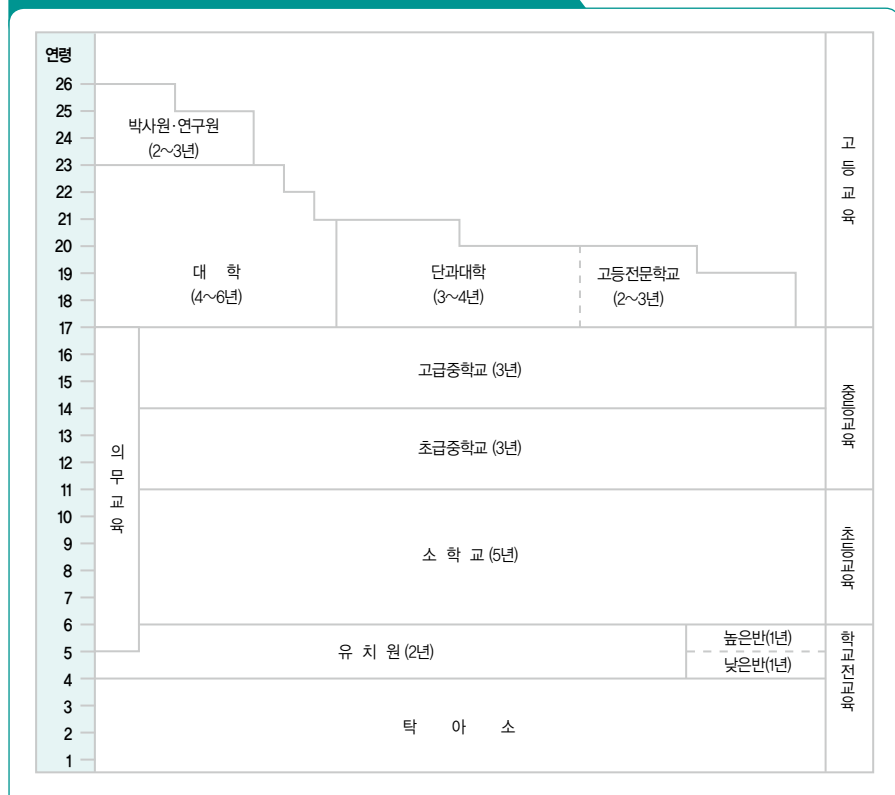
북한의 학제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5-6-4(6)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된다. 본래 북한의 학제는 4-6-4(6)년제로 1975년부터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등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2012.9.25)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 발표로 인해 2013년부터 소학교는 5년, 중학교 6년 과정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돼 운영되

고 있다. 12년 의무교육제는 2013년 4월 일부 개정된 헌법(3장 45조)에 명시되어 북한의 기본 학제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기본 학제와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 같은 출신 성분에 따른 특수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고등 교육과 특수 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교원 대학과 전문 대학은 3년제,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다. 사범 대학은 4년제로 운영된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인문과 학부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 최근 들어 자연과학부의 졸업 연한이 1~2년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2. 북한의 학제





북한의 학기는 1969년 이후 9월 1일에 시작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개학일이 4월 1일로 환원되었다. 방학으로는 여름방학(8.1~31), 겨울방학(1.1~2.16), 봄방학(3월 말 1주일)이 있다. 3월에 학년말 시험을 치르고, 4월 1일 새 학년이 시작된다.

## 보통 교육

북한에서 보통 교육은 가장 기본이며 기초가 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광복과 더불어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종래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예비반 1년 과정을 포함한 6년제 인민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 후 수차례 학제를 개편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제는 2012년에 개편된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 등 유치원과 초·중등 단계를 포괄한 12년제 의무교육이다. 북한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인적 교육을 위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체계화해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조직을 갖추고 체계화된 교육이 공산주의 인간형으로의 개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무상교육은 모든 자원이 정부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물 역시 정부가 소유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못한다. 더구나 인간 발달의 전면 육성을 명분으로 들어 학생들을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시켜 각종 근로지원 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근로지원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어 있다.

소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사철에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일반중학교 학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1~4학년) 내지 10주(5~6

학년) 동안 농사 지원이나 건설현장 지원을 나가야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행해지는 ‘김매기 전투’, 모내기를 하는 ‘봄 전투’와 가을걷이를 하는 ‘가을 전투’는 각각 5월 초와 9월 말에 시작되어 20~30일씩 계속된다.

또한 교재와 기자재 구입 및 학교 시설 개·보수 등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의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이후 더욱 가중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결석률 증가와 취학을 급감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 수준 전반도 저하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무상의무 교육은 북한의 선전과 달리 그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평등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리 중심의 교육과 수재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학교에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학교는 수학과 물리 분야 과목, 농촌 지역 중학교는 생물과 화학 분야의 과목에 각각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 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와 군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난으로 부족한 자원을 선택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수재 교육과 외국어·컴퓨터 교육 등 특수 교육은 실제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일부 지역의 특수 계층에게만 기회가 부여될 뿐 일반 학생은 열악한 교육 환경과 부실한 교육 운영 속에 교육 외 각종 노력 동원과 가중된 세외 부담 등으로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교육 기간을 1년 연장한 최고인민회의 ‘결정(2012.9)’에서도 이 같은 실정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내실 있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 지도와 법률 통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된 국가 동원 이외의 무질서한 동원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 등에 과도한 사회 과제 부여 방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 고등 교육

북한에서의 고등 교육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김일성종합 대학을 평양에 설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6·25 전쟁 후 3개년 복구 건설기(1954~1956)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등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해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 대학과 사범 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에는 경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 대학·야간 대학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 기간에는 공장 대학이 증설되었다.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기간에는 부족한 각급 학교 건설을 위해 소규모 공장 대학, 통신 대학, 전문 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군관 등 3개의 종합 대학 및 일반 단과 대학과 함께 농장 대학, 어장 대학, 공장 대학 등 산업체 부설 현장 대학이 설립되었다.

북한의 대학 진학은 보통교육과 다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보통 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이므로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으나 대학 진학은 대학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내각 교육위원회가 도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해 주고, 시·군 인민위원회의 대학 모집과는 도에서 할당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이며, 이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 환경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이른바 ‘직통생’이라 한다. 시험에 떨어지면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사회인으로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은 보통 시험성적 순에 따라 결정되지만 성품이나 소질도

중시돼 일종의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별 성적 차를 인정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 실시로 지역별 학력 차를 감안하여 합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부정 입학, 성적 조작 등 교육 비리가 확산되면서부터 대학의 입학 요건은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 교재·교복·숙식비 등 각종 교육 경비, 학교 시설 정비, 유지와 같은 학교 운영 경비 등을 감당할 정도의 경제력이 부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명문 대학 내 당·정 간부, 외화벌이 지도원 등 권력층 자녀들의 부정 입학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 특수 교육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 교육 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무용, 음악, 조형예술, 교예 등에 소질이 있는 특기자들을 가르친다.

북한은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영재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1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옹계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 개성, 청진, 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확대되었다. 교육은 과학, 수학, 물리 등 이과 계통의 과학자 양성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 성분만이 아니라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제1중학교에서는 일반 중학교와 다른 특수 교재(전문대 수준)로 자연과학, 컴퓨터, 영어 등을 배운다. 졸업 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대 1 교육을 받으면서 농촌지원 활동과 군 입대 면제 등 혜택을 받고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수재교육 기관의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다. 북한 당국의 수재 교육 강화는 “정보산업시대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

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으로 경제 건설과 국가 발전을 기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이 북한이 경제난 이후 학교 운영에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재 교육 강조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과 함께 부족한 교육 예산을 선택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 교육 기관으로는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킨다. 이 학원의 입학 자격은 소학교 졸업자로서 혁명 유자녀, 영웅 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 가운데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다.

최근 북한은 보통교육법 제정(2011.1.19)에 이어 고등교육법 제정(2011.12.14)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일꾼 양성과 함께 기초 과학기술과 외국어 교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어져서 ‘새 세기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이끄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의 새로운 학제 시행과 함께 첨단기술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혁명 학원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 교육 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

표 6-3. 북한의 수재 교육 기관

분야	학교	교육현황
예체능 분야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 예술전문학교 등	소학교~중학교 과정 1960년 신설
자연과학 분야	제1중학교 금성학원 ‘컴퓨터 수재반’	중학교 과정 1984년 신설
외국어 분야	외국어학원	중학교 과정 1958년 신설
혁명 유자녀 학교	만경대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소학교~중학교 과정 군사·정치·여성 간부 양성 1947년 신설

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어 8년제로 운영되는 특수학교로, 입학 자격은 혁명 유가족 및 당·정 고위 간부 자녀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모두 기숙사 생활과 엄격한 군사 조직 아래 의무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 속에 최고 대우를 받으며 졸업 후 군 또는 특수 요직에 진출한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수업 모습

## 2 교육 과정과 방법

### (1) 교육 과정

#### 초등 교육 과정

초등 교육의 경우 <표 6-4>에 제시되어 있듯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sup>3</sup> 특히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크게 정치사상, 과학 기술, 체육, 예능, 국방, 외국어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당 수업 시간은 국어·수학·자연·체육·음악·도화공작의 순으로 하여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 수학이 4분의 1 등 이 두 과목의 시간 배당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소학교 학생들

표 6-4. 북한의 소학교 교육 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1
4	사회주의 도덕	2	2	1	1
5	수학	6	6	6	6
6	국어	6	6	7	8
7	자연	2	2	2	2
8	위생				1
9	음악	2	2	2	2
10	체육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영어			1	1
13	컴퓨터			1	1

주) 1.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학제 개편 이후의 교육 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2. 1학기 16주, 2학기 18주(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 말 1주일 간 봄방학)

## 중등 교육 과정

중등 교육의 경우 <표 6-5>에 제시되어 있듯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의 교과목 역시 과목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학교 과목과 유사한 내용을 가르친다.

국가와 당이 교육의 전반을 관리·통제하는 북한의 교육에서 개별 학교 및 학생에게는 교육 내용은 물론 교과목의 선택권이 없었으나 2001년 4월 1일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제가 중등 교육에 도입되었다. 예컨대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교육, 어촌 지역에서는 어업 관련 교육, 산간 지역에서는 임업 관련 교육, 경공업 공장 지역에서는 경공업 관련 교육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선택과목제가 도입되면서 광업, 기계, 임업, 식료, 피복, 약전(弱電, 통신공학) 등 6종의 교과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표 6-5. 북한의 중학교 교육 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1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역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1	1
20	미술	1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주) 1.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학제 개편으로 중학교 과정이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되었으나 아직 교육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편 이전의 자료를 수록하였음  
 2.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 대학 교육 과정

대학의 교육 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르나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 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과



와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일반기초 과정은 전공 학과의 특성에 맞게 지정한 과목과 전 대학에 규정된 공통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공기초는 전공에 필요한 준비 과목으로 강좌별로 결정되고, 전공은 지정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

교과영역별 수업시간 비중을 보면 대학의 설립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교과 영역 비중이 다르지만 보통 정치사상 교과 25%, 일반 교과(외국어, 체육) 10~15%, 일반기초 10~40%, 전공기초 10~40%, 전공 10~15% 등이다.

최근 북한은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실용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 및 컴퓨터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 설치하여 IT 중심 학부로 대학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여러 학과 및 학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와 학과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안을 개편하고 있다.

## (2) 교육 내용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으로 구분된다. 정치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와 혁명 활동, 과학기술 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각각 가르친다. 체육 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교육은 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배양이다. 이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즉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시절’이나 ‘혁명활동’ 등 교과목을 배운다.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교양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자본주의 요소 유입에 대한 경계와 핵과 미사일 등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미 대결과 투쟁 의식 고취 등과 같은 계급 교양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미 적대 및 투쟁 의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미 교육과 함께 제국주의 사상 및 문화 침투를 배격하는 교육 강화,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 입대 장려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사상 이완의 방지를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 교육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와 영어와 중국어가 그동안 제1외국어이던 러시아어를 누르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부분 중학교에서는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양외국어대학의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도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 교육 강화에 이어 최근 외국어 교육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시켜서 외국어 실기 능력과 일상 회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어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과목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강의도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과학 부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외국어 교수 경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북한이 외교관 및 무역 일꾼 등의 육성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sup>4</sup>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고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가운데 선 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 및 내용을 볼 때 북한의 교육 과정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컴퓨터 수업

우선 북한의 사상교육 강화는 교육을 사상 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교육과 정치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 과정에 기초기술 교육과 실습 또는 생산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북한의 교육은 생산 활동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고 있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5</sup>

### (3) 교육 방법

북한의 교육 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규정된 다섯 가지 사회주의 교육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sup>6</sup>

첫 번째 교육 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으로, 학생들 자신의 사고 활동으로 교수 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 방법에는 설명을 통한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문답식 학습을 통한 교육, 직관을 통한 교육, 실물을 통한 교육, 긍정 감화 교육 등이 있다.

설명을 통한 교육은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은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으로 폭넓은 견해를 쌓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답식 학습 방법은 같은 책상에 앉은 학생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종 시험에 대비한 문제집을 교사가 미리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 주면 답안집을 만들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데 활용된다.

직관 교육, 실물 교육은 교수 내용을 직관으로 이해하도록 학습 수단으로 실물을 많이 활용하여 이론과 실기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장 견학과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 감화 교육은 사상학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범 사례를 대중 앞에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총화하고 분발하도록 이끄는 사상 교육 방법이다. 북한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전형 가운데 하나인 ‘...따라 배우기’ 운동이 이 교육 방식의 한 사례다.

두 번째 교육 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 이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식 혁명 인재로 키우는 데 필요한 방식이다.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의 답사와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세 번째 교육 방법은 조직 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의 강화다. 조직 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은 학생들을 정치사상 측면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학생들은 학생소년단, 청년동맹 조직에 가입하여 녹화근위대 활동을 하고 사회주의 건설 지원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네 번째 교육 방법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이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후대 교육을 전 사회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은 학교 이외에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아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 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정치사상 강연, 과학 토론회 발표 모임 등 다양한 소조 활동으로도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교육 방법은 취학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 교육의 병진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이 어릴 때 형성되어 평생 동안 공고히 발전된다는 전제 아래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평생 전면에 걸친 지속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각각의 수준에 맞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확립·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교육 방법은 북한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보화·세계화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능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북한은 단순한 지식 습득만이 아닌 지적 능력과 지식 탐구 방법의 향상을 위해 지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암기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환시켜서 시험을 암기테스트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실시하는 한편 컴퓨터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사고 능력 배양 교육인 지능 교육을 위해 학교마다 과목별 지능문제 만들기,

소논문 집필, 지능문제풀이 경연,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등을 실시하고 교수방법 강습, 과목별 교수교양경험 발표회, 교수방법 토론회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재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한 교사에게 '새 교수방법 등록증'을 수여하고 우수 교원에게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는 김정일이 2003년 무봉중학교 현지 지도를 실시한 것을 기념하여 우수 교원에게 칭호를 수여한 제도다. 또한 2006년부터 지역 간 경쟁으로 교육의 물적 토대와 질 향상을 위한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육이 기본으로 북한 체제가 원하는 구성원, 즉 체제 순응형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 3 학교생활

#### (1) 수업과 과외 활동

북한의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소학교의 수업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초·중학교가 6시간, 고·중학교가 7시간이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보통 오전 8시에 시작한다. 소학교의 경우 8시에 1교시를 시작하여 낮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는 20분간의 '업간체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5교시를 마치고 1시간 30여 분 동안 점심시간을 갖는다. 중학교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의 오후 교과시간이 있어 1~2교시가 더 진행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교과 운영 전체는 소학교와 유사하다.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상학 전 검열이 실시되며, 8시 반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이며,

오후 강의는 4시에 시작하여 1강좌를 하고 5시 반에 정규 강의가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원이나 노력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강좌를 더하여 7시까지 강의를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체능 과목 위주로 교원들에게 불법 과외를 받기도 하지만 과외 받는 학생의 비율은 지역·계층별 격차가 크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근접한 성격이 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는 보충 수업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 소조, 외국어 소조, 예체능 소조 등이 있다. 매일 방과 후 2~3시간 실시된다.

북한 학생들의 과외 활동 특징은 노력동원과 조직생활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은 생산 활동과 결합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은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 소학생은 연간 2~4주, 중학생은 연간 4~10주, 고등 전문 학생은 연간 10주, 대학생은 연간 12~14주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이 길어진다.

북한의 주민은 모두 조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 7세가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된다.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하고, 소년단 일원의 상징인 붉은 머플러 대신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 또한



소년단 입단식

청년동맹 가입 후 곧바로 교내 군사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들어가게 된다.

군사교육 훈련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해당된다. 대학생이 되면 준군사 조직인 대학교 교도대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교도대 복무 졸업증이 없으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 북한의 학교는 그 자체가 군대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연대, 학부는 대대,

학과는 중대, 학급은 소대로 각각 편성된다.

## (2) 학생의 일탈과 처벌

북한 학생들은 학교 규칙과 조직생활(소년단, 청년동맹 등)에 의해 규율 통제를 받지만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일탈 행위를 하기도 한다. 북한 학생의 일탈 행위는 주로 결석을 비롯한 각종 학교 규율 위반과 용의복장 불량, 흡연과 음주, 이성 교제 등의 생활규율 위반이다. 경제난 이후의 규율위반 행위는 절도와 마약(빙두) 거래·복용 등 불법 행위를 비롯해 장발, 종대바지(졸바지), 외국어가 쓰인 옷 등 ‘자유주의’나 ‘황색바람’ 등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문화 유입에 따른 모방 행위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학교 규율 위반 현상은 특히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난 이후 가족 해체와 북한 사회 전반의 통제 이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규율 위반 학생에 대한 처벌 권한은 청년동맹에 있다. 물론 교원들도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이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등에게 처벌을 하지만 교실 밖에서는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서 벌을 준다. 수업을 받으면서 방과 후 교양을 받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양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시·군·구역별로 문제 학생을 모아 놓고 집단 교양을 하기도 한다.

## (3) 교원

북한에서는 교사·교수를 통칭하여 교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사용하며, 대학 교원의 경우 교수라고도 하는 점은 우리와 같다. 일반 교원의 경우 임금은 노동자의 상급 수준을 받고 대학 교원은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등 북한에서 교원의 사회 지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국가 혜택이 줄어들고 학교 관리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면서 교원의 처우와 인식이 나빠졌다.

한편 교원들도 끊임없는 업무와 배급 중단에 따른 생활고로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들은 직업 혁명가라고 하여 마음대로 조직생활에 빠질 수 없고 장사에 나서거나 퇴직할 수도 없는 사회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난 이후 교원은 인기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였다.

도시 지역의 남성 교원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농촌에서는 패기밭 농사로 연명하기도 한다. 미혼 여성 교원들은 병이나 결혼 등을 빙자하여 휴직한 후 장사에 나서고, 기혼 여성 교원들도 직접 장사에 나서기 위해 결근하기도 하는 등 수업의 파행 운영도 일쑤다. 또한 교원들은 몇 조로 나누어 시·군 당 교육부 모르게 7~10일씩 교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학교에 남은 교원들이 학급 몇 개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몇몇 교원들은 성적 조작과 입시 부정과 같은 불법 행위나 비밀 과외학습 지도 등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사범대 출신 가운데 성분이 좋은 집 자녀들은 학교 졸업 후 보위부나 안전부 또는 시·군 교육기관이나 군 당 지도원으로 빠져나가고 교원직은 주로 성분 나쁜 학생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 양성 대학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고, 각 도에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 교원대학은 3년제로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각각 양성한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원 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 교육 이외에 통신·야간 교육을 실시하며, 교원 재교육도 실시한다. 북한의 주요 교원 양성 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다.

교사의 주 업무는 물론 교육이지만 방과 후 학습 부진 학생 또는 우수 학생의 학습지도 외에 월요일에는 학습과 총화시간을 가지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 모임을 갖는다. 나머지는 교재 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중학교 교원의 분과 모임은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 모임은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교원들은 갖가지 노동 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철도공사 지원, 주변농장 지원, 식수, 국토정리 등 시기마다 제기되는 노력 동원과 봄·가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제2절 북한의 문예정책과 실태

### 1 문예정책

#### (1) 목표

북한의 문학예술은 문학을 비롯한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다. 북한은 목적주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예정책은 예술성보다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즉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 정권 유지를 위한 홍보와 선전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창의를 중시하는 예술 가치는 배제되고 단순히 정치 도구로 전락하였다.

북한 당국이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여 동기 부여,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 북한에 의한 통일의 정당성 확보다.

####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

첫째로 북한의 문학예술은 광복 후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북한의 문인과 예술인들은 시기별 당의 노선에 따라 초기에는 토지 개혁 등을 찬미하고, 1950년대 후

반에는 ‘천리마운동 영웅’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사회주의 건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창작·보급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과 지도자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숨은 영웅’을 발굴하여 선전하는 ‘숨은 영웅 형상문학’이 집중 창작되었다. 소련의 붕괴, 동구권의 체제 전환 등 사회주의권이 급변하는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지키세〉 〈어머님은 붉은 기와 함께 계시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등과 같이 북한 주민들을 사상성으로 결속시키고 사회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 지도자(수령)에 대한 충성심 확보

둘째로 북한의 문예정책은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김일성의 유일지배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나름대로 미학 측면을 추구하고 있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sup>7</sup> 계열의 문인이 대거 숙청되고 김일성의 반제항일 투쟁을 주제로 하는 ‘항일혁명투쟁’ 작품만이 정통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 이른바 5대 혁명가극(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 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5대 혁명 연극(〈성황당〉 〈혈분 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대회〉)과 〈불멸의 역사〉 시리즈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되는 1980년대에 이르면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총서인 〈불멸의 향도〉 등 이른바 ‘지도자 형상화’ 작품이 나타나게 된다. 통치자에 대한 정당성 고양에 역점을 두는 작품은 경제난 등 체제의 총체 위기에 처하게 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되어 〈나는 첫 세대다〉 〈받으시라 인민의 환호성을〉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등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찬양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진다. 2000년대에는 “문학예술작품은 마땅히 시대정신에 맞아야 하며 시대의 숨결을 담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 집권 이후 주창되고 있는 선군정치와 이를 정당화하는 선군 영도 업적을 작품에 반영하는 ‘선군혁명 문학예술’의 창작이 독려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문학예술 소재에 다양성을 보이면서 시문학의 서정화 경향이 나타나고 도시와 농촌 갈등, 세대 간 문제, 여성 문제, 애정 문제 등 다양한 현실 문제가 소재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북한 주도 통일의 정당성 확보

마지막으로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남한의 현실을 비판하고 반자본주의 이념을 본격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이 “문예작품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때부터다. 이후 북한에서는 문학예술 작품에 한국 사회의 부패상,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식 행태, 특히 주한미군의 병폐를 집중 부각시켜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정책은 선전선동에 일차 목적을 두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과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2) 문예 이론

북한에서는 초기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계열의 문학을 계승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 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예술에 무게를 두기보다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창작의 형식 측면에서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내용 면에서 사회주의 경향성, 즉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체문예이론

북한의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군중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속도전 이론, 전형화 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주체문예이론<sup>8</sup>’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 이론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관, 기본 이념, 창작방법 등 모든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에서 찾는 이론이다. 유일사상의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지배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에 입각한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와 창작 방법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작품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하고, 혁명 투쟁의 관점에서 노동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인민 대중의 감성에 맞게 혁명 사상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의 호응도와 인기를 고려하여 대중성도 가미되고 있다.

## 종자론

북한 문예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종자론<sup>9</sup>’은 주체문예이론에 기초하여 예술 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 강령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따르면 종자론은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이론의 새로운 개념”이며,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 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 주제, 사상을 밀접한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자 핵이며, 종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의 핵심은 사상성, 즉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서 이에 의거한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 군중예술론

군중예술론은 문예 창작이 타고나거나 선천성과 같은 재능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창작의 주체가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여 대중의 참여를 고무하는 이론이다. ‘군중예술론<sup>10)</sup>’에 따르면 예술은 개인의 독창성이나 창조성이 아닌 집단에 의해 창조되고 향유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 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바수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창작 제도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에 걸맞게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 또한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집단 창작은 김일성이 제안하고 김정일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3위 1체 체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3위 1체 체제란 당, 행정기관, 문학·예술인(또는 그 단체)이 공동으로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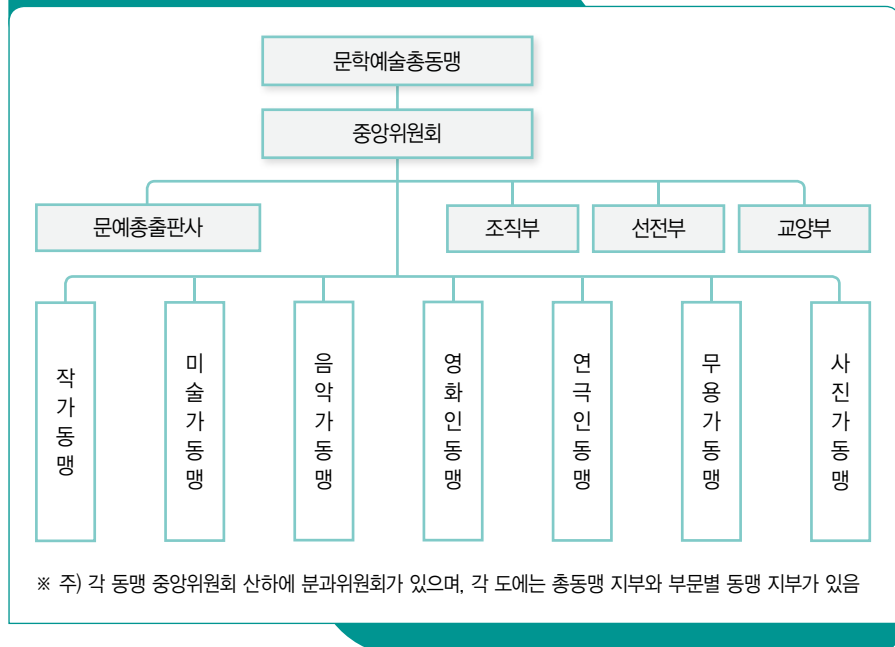
당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을 감독하며, 문화성과 같은 행정 조직은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되어 작품을 창작한다. 즉 문학·예술가들은 작품을 자발적으로 창작하기 보다는 정권 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며, 예술 작품 구상 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및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 평가에 이르기까지 문화성과 문예총 산하 해당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창작의 집단화를 대표하는 조직으로는 문학예술총동맹이 있으며,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은 이 단체에 소속되어야 작가·예술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문예총은 <그림 6-3>에 제시되어 있듯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음악가동맹 등 분야별 문학·예술인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서 근로인민 대중의 예술 활동은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 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이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

들 가운데 일부는 각 동맹의 후보명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명원이 됨으로써 직업 작가나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 밖으로 작품의 현상 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전업 작가 가운데 약 40%는 문학통신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직장인으로서 현상 모집에 응모하여 작가의 길에 들어선 경우다.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 조직도



## 2 문학예술의 실태

### (1) 문학

북한에서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본으로 인식된다. 이는 문학이 모든 장르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 북한은 문학을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문학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에서 비롯된 창작이 아니라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술성보다는 얼마나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된 1970년대 초반부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 단원의 운명> 등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작품들을 장편소설로 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 내고자 하였다. 이는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거 지주와 자본가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 평가가 모범·공정의 인물들로서 노력영웅을 이상화하는 구도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는 북한 문학의 소재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 중앙(김정일)’의 지시로 김일성 가계를 소재로 하여 한 방향의 충성만 촉구하던 문학이 생활 속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러한 변화상이 반영되어 사상과 주제는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지만 줄거리는 남녀의 애정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 등이 대표작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 등 4개의 새로운 문학개념이 나타났다. 추모문학은 김일성의 사망을 추모하는 문학으로, 김만영의 서사시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여기에 속한다. 단군문학은 1990년대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군릉을 발굴·복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년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나타난 문학 개념으로,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위인상을 사상 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2000년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잇는 개념으로,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을 문학 작품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를 미화하기 위해 전우애를 강조하거나 강성대국 건설을 굳이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출하는 작품이 눈에 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인 <총대> <라남의 열풍> <조국찬가>를 비롯하여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조국이어 청년들을 자랑하리〉 〈백두산총대〉, 서정시 〈나는 주체사상탑과 이야기한다〉 등이 대표 작품이다. 또한 선군문학의 본보기 작품으로 김정일 외 김일성, 김정숙 등 소위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 창작이 강조되어 2009년 김일성의 업적 등을 형상화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인 〈변영의 시대〉와 〈대박산마루〉 등이 출판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의 일상성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과 유머 등 간단한 읽을거리는 물론 성애를 소재로 하는 작품도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 주민의 일상 삶을 다룬 작품인 김성욱의 〈나의 멋〉과 〈유치원마당가에서〉 등이 있고, 〈조선예술〉을 비롯한 정기



황진이

간행물 등 유머란에 다양한 유머를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홍석중의 〈황진이〉는 성애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 (2) 음악

북한의 음악은 인민의 계급 의식과 공산혁명 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양 및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기능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음악은 서사음악과 성악음악, 사실음악과 민속음악, 단순한 화성음악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발간한 노래집의 절반 정도는 소련 민요와 중국풍의 국민 가요식 민요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치중하고 있다. 화성은 단조로워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으나 변화가 없으며, 창법에서는 비성(鼻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요로는 당 정책 선전 가요, 서정 가요, 혁명 가요, 조선 가요 등이 있는데 김일성 부자 찬양을 위한 송가(頌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문학예술



년감」(1998)에 실려 있는 보천보 전자악단, 왕재산 경음악단, 인민군 협주단, 만수대 예술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76곡의 악보를 보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음악이 52곡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 악기와 합주하도록 하는 등 전통 음악의 양악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음악은 비정치적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노래도 많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통 민요의 발굴에 역점을 둔 작품이 창작되었다. 2003년에 나온 <황해산타령> <새타령> <느리개타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이다. 계몽기 가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감흥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 아래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음악가동맹 주관으로 계몽기 가요를 발굴·정리했으며, 190여 편의 노래가 수록된 ‘계몽기 가요집’을 2000년에 펴내기도 했다. 북한은 “민족의 수난의 그 세월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가요들”이라며 <고향의 봄> <반월가(반달가)>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일제강점기에 부르던 계몽기 가요를 편곡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리랑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음악이 창작됨으로써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을 거쳐 선군정치가 완성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선군장정의 길>과 민요풍의 대중가요 <강성부흥아리랑>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북핵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면서 ‘조국애’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널리 불리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결전의 길> 등과 같은 전시가요가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음악은 “정치에 복무해야 하며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는 김정일의 음악관과 음악정치의 강조에서 알 수 있듯 체제 결속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3) 무용

북한의 무용은 가극의 한 부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여타 예술 분야에 비해 독자만의 정체성이 미약하고 음악·재담(코미디)과 결합하여 소 부문으로 삼입되는 정도이며, 아동무용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무용의 동작은 우리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기본을 이루지만 무용 형식에서는 신체미, 율동미, 시감의 메시지보다 힘·규모·조직 과시를 특징으로 한다. 무용수의 보조기구도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용은 전투성 짙고 선동하는 동작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무용표기법

1970년대 말부터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주력하면서 춤동작, 가락, 보법(步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사랑하는 4대 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으로 불리는 현대무용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국민 환영식에 수만 명이 동원된 화려한 집체예술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02년부터 2013년의 12년에 걸쳐 9차례 공연된 <아리랑>을 들 수 있다. <아리랑>은 2002년 김일성 생일 90돌을 맞아 체제 결속을 위해 기획되어 4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5·1 경기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음악과 무용뿐만 아니라 매스게임·카드섹션·체조·서커스 요소까지 포함되어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서장과 4개의 장, 10경,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8월에 개막된 <아리랑> 공연에서는 5장 ‘친선 아리랑’을 새로 창작하고 ‘6·25 전쟁 및 중국 참전 60주년’ 기념 내용을 반영하여 7장 14경이었으



2013년 &lt;아리랑&gt; 공연

나 2011년에는 1장 5경이 추가되어 총 8장 19경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의 공연에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백두산 모형을 입체화해 형상하였으며, 과수·양어 등 인민경제 부문의 발전을 과시하는 내용 등을 새롭게

담았다. 2012년 공연 역시 8장 19경으로 구성된 가운데 김일성 출생 100년을 기념하여 ‘주체조선 100년 시작과 번영’을 형상화하고, 김정일의 영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더욱 화려한 배경 무대와 조명·음악·색상 등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2013년의 공연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과 정권수립 65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아리랑> 공연은 북한 전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관람을 유도함으로써 강성대국, 선군정치에 우월함을 선전함과 동시에 실리 경제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고양하기 위한 동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고된 장기훈련과 동원에 따른 인권 유린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4) 미술

북한에서는 전통미술을 배척하고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항일혁명미술을 참된 미술로 평가한다. 전통미술은 착취 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했을 뿐 계급투쟁 문제를 예술성으로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항일혁명미술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참다운 인민미술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돼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북한 미술에는 ‘기념비 미술’이라는 명칭의 작품이 많다. 즉 노동자들이 망치 들고 노동하는 장면, 농민들이 벼이삭을 들고 만면에 미소를 짓

는 장면들을 보여 주는 작품이 많이 등장한다. 북한의 미술에서는 ‘추상은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상화나 추상조각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북한에서는 미술을 재료와 기법에 따라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눈다.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 유화, 벽화, 출판화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채색과 서양화의 기법을 혼합한 것이다.

조각에는 환각, 부각, 투각 등이 포함된다. 애국열사릉 및 혁명열사릉에 조각된 군상은 사실주의풍이면서 분노와 비탄, 투쟁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선전한다.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다. ‘만년화’라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모자이크화처럼 그려서 일상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공예다. 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 관련 조형물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2004년에 만수대장작사가 제작한 대형 병풍 형식의 작품 〈백두산천지의 216 봉우리〉는 이른바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 (5) 영화, 연극, 텔레비전 드라마

### 영화

북한에서 영화는 다른 어느 예술 장르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 「조선중앙연감」에서는 「영화연감」을 별도로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09년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영화 관련 업무의 효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영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갖추기도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영화가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부문의 모든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 장르로서 대중에게 호소력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크게 작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 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도 하고 정서 교양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지침으로 삼는 「영화예술론」(1973)에 따르

면 “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 감정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배우는 단순히 연기가 아닌 공산주의 사상, 감정, 생활체험 등을 미적·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구체화해서 재현하는 노동계급 예술가로서 연기하도록 요구된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는 긍정전형(肯定典型)과 부정전형(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시로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강화됨으로써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의 전형인 주인공의 감화로 오류를 시정하는 줄거리도 주요 주제가 되었다.

영화는 1960년대 천리마운동 이후 대형화되어 20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제작되는 등 방대한 작품 제작에 치우쳤다. 그러나 시리즈물이 해외영화제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서정성과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1987년에 제작된 <보중>도 북한 영화의 기존 틀을 깨뜨리고 북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권위주의, 토대와 성분에 따른 인간 차별 등을 표현하였다. 신(申)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이러한 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한 자주성 확보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는 원래 10부작으로 계획됐으나 김정일의 지시로 50부작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에 다시 100부작으로 제작이 확대되어 2006년 현재 70부작까지 제작되었다.

최근의 북한 영화는 「선군혁명 문학예술론」에 따른 선군정치를 반영한 작품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군사 관련 영화다. 2003년 대표작으로는 <이어가는 참된 삶>이 있다. 이 영화는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1968년) 당시 전사한 병사의 자녀와 그 주변 인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 밖에도 <그들

은 제대병사였다)와 <여병사의 수기> 등이 2003년에 제작된 대표 영화이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선군 정치에 부응하는 영화작품으로 <그는 대좌였다> <젊은 녀단장> 등 이른바 군인의 혁명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군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제작되었다. 또한 2006년에 상영된 <한 여학생의 일기>와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 포스터

같이 경제난 이후 자본주의 요

소 투입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사상 이완 세태를 반영한 영화 등이 사상교육 강화 차원에서 제작됐다.

2009년에는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을 기리는 김정일 일대기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1~3부)의 제1부 <조선을 빛내이리>, 제2부 <혁명전통을 빛내이시며>, 제3부 <온 사회에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려>를 잇따라 제작하였다. 김정일 생애에 관한 기록영화 제작은 <위대한 력사> 제21부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시여> 등 이른바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 제작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3대 세습의 후계 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지도자에 대한 ‘대를 잇는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기록영화는 계속 제작됐다. <영광의 기치 1년> 등은 김정은 집권 1년의 행적을 미화한 2011년 작품이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에서는 신상옥·최은희가 북한에서 제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7편과 이훈구의 시나리오로 만든 <봄날의 눈석이> <생의 흔적> <자연에게 물어보라> 등이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이들 영화가 사실주의에 충실한 데다 다소 정치성·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 색채가 풍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연극

북한에서 연극은 가극에 비중을 두고 있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용과 노래 등을 결합한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는 북한 연극은 1980년대에 들어와 대작 위주로 창작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성황당> <혈분 만국회> <팔 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등이 있다. 이들 연극은 모두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혁명연극’이다.

1978년 6월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에 음악·무용 등을 가미하여 대규모 무대에서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공연된 <초식> <어머니와 아들> 등은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에 기초하여 주제와 사상을 심화시킨 연극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단막극, 경희극 등과 같은 가벼운 코미디성 희극 공연이다. 북한에서 희극은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웃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활발하게 공연되고 있다.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코미디극인 <우리>(2005년, 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제작)를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영화보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비슷한 것으로는 텔레비전 소설, 텔레비전 연속소설, 텔레비전 연속극, 텔레비전 단막극 등이 있다. 텔레비전 소설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텔레비전 단막극은 텔레비전 드라마로서 텔레비전 소설, 연속극은 1편으로 끝나는 단막극과 각각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 영화도 있다. 텔레비전 영화는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로서 일반 예술영화와 달리 등장인물도 적으며, 상영시간도 길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텔레비전 영화의 경우도 단편보다는 시리즈 형식이 많다.

## 드라마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심 주제는 지도자 가계에 관한 것과 함께 지도자를

도와 항일혁명에 참가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도 생활 속에 드러나는 부부 간 갈등이나 세대 차이 등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갈등을 다룬 연속극 <엄마를 깨우지 말아>(3부작, 2002년)와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소재로 한 <가정>(9부작, 2001년)은 이전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연속극 <따뜻한 우리집>(2부작, 2004년), <수업은 지속된다>(8부작, 2006년), <사랑의 샘>(3부작, 2009년), <우리 여자축구팀>(3부작, 2011년) 등이 지속 제작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현실성 가미 등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예술 작품의 사상교양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김정일의 '신사고'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실천해야 한다'는 '신사고' 정책에 의해 문학예술 작품에서 다양성과 오락 요소가 강화되고, 일부 작품에서는 내용이나 소재·형식 측면에서 파격을 간간히 보여 준다.



## 제3절 북한의 언론과 기능

북한의 언론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고 있다. 공산주의 언론은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인민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로 간주되고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언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67조에서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sup>11</sup>

이런 점에서 북한의 언론은 북한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 매체에 보낸 친필 서한에서 언론 매체가 사상 교양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체제 결속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대중의 지도자 및 안내자로의 존재 가치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에 부과된 일차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 사업의 선전·옹호에 있다.

# 1 신문

북한은 다양한 매체 가운데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북한의 출판물은 인민 대중의 집단 교양자, 조직 동원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이론」에서는 북한 신문의 선전·선동 기능과 조직자 기능, 문화·교양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급성과 당성, 인민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을 제시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북한의 신문은 노동 계급의 이익 복무를 비롯해 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에 충실해야 하는 계급성 및 당성을 띠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성과 대중성을 고수하며,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진실성과 전투성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신문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다.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된다.

북한의 주요 신문으로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비롯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여 개의 지방지가 있다. 이 밖에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육신문’ ‘교통신문’ 등 기관지, 공장 및 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다.

이상 북한의 신문들 가운데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간되는 지방지 등은 일간지다. 기관별로 발행하는 신문들은 격일간이나 주간지로 발행되며, 발행 부수도 많지 않다.

###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노동신문사가 발행하는 북한 대표 신문이다.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출발했으며, 1946년 9월 1일 신민당 기관지인 ‘진진’을 통합하여 현재의 노동신문으로 개칭되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전당과 전체인민을 김정일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당 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sup>14</sup>

또한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 및 어떤 계기가 발생했을 때 정론이나 사설 등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 역할을 하고 있다. 총 6면으로 발행되는 조간신문이다. 조직으로는 최고책임자인 ‘책임주필’ 밑에 고문 부주필과 3~7명의 부주필이 있다. 그 아래로 편집국과 당 역사교양부, 당 생활부, 혁명 교양부, 과학문화부, 남조선부, 국제부 등이 있다. 노동신문의 또 다른 특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이름이나 교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에는 다른 글자보다 눈에 띄게 하기 위해 고딕체의 크고 진하게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북한의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로서 1946년 6월 4일 창간되었다. 1945년 10월 15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의 직속 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한 이후 이를 개편하여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1948년 9월부터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 당정책 관철에로 힘 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sup>15</sup> 민주조선사에서 대형 판으로 주 6회 발행되고 있는 민주조선은 내각 기관지 특성상 행정 실무와 관련된 문제 등이 많이 실리고 있으며, 정권 기관에서 채택한 결정 사항이나 정령·법령 등을 상세하게 취급한다. 조직은 책임주필과 부주필이 관리하는 가운데 그 밑에 편집국, 인민행정부, 공업부, 교육문화부, 국제부, 재정경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의 경우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1면과 2면의 내용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정치 지도 동향과 사진, 이들에게 보내온 외국의 축전이나 편지 내용, 우상화 선전 시·수필 등을 게재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내각의 기관지이면서도 중앙당 선전선동부의 지도 통제를 받고 있다. 기사는 주로 조선중앙통신사와 노동신문의 보도부,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 등은 6면으로 발행되고 있는, 노동신문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신문이다.

##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북조

선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민주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후 1964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연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제호도 ‘노동청년’으로 바뀌었다. 1996년 1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대표자회에서 명칭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되면서 이 단체의 기관지인 ‘노동청년’도 명칭이 ‘청년전위’로 바뀌었다.

청년전위는 “청소년들 속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설 선전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서 키우며 청년 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을 임무를 하고 있다.<sup>16</sup> 즉 청소년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며,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여 이의 완수를 위한 일에 헌신하도록 권고하고, 청소년들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교양할 것 등을 주 임무로 한다.

청년전위의 기사 내용은 ‘노동신문’에 실린 여러 문제를 청소년과 결부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조직은 책임주필과 부주필 아래 편집국 안에 청년생활부, 학생부, 군중문화부, 사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방송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하며,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밑에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방송 사업 체계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나 통일선선부에서 방송 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 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기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내각 문화성의 산하 기구로서 문화성이 각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관리 및 일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는 당과 내각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조직 편제상으로는 내각에 속해

있으나 위원장은 노동당에서 임명하고,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의 방송 체계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하부 기관으로 유선방송중계소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앙 조직으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존총국과 10여 대의 직속 국처들이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는 지방방송을 관장하는 시·도 방송위원회와 하부 조직으로 제3방송(유선방송)을 담당하는 군·리 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6-4. 북한의 방송 체계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 개요」, p.419

### (1)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등이 있다. 대외 방송으로는 노어(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 방송이 있다. 북한을 대표하는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 방송으로,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조국개선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 방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제 치하

에 있던 평양방송국을 모체로 출발하여 1967년 12월 제1중앙방송(대내)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으로 분리됐다가 1972년 11월 제1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 제2중앙방송은 평양방송으로 각각 개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용)으로 출발했으며, 1972년 11월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였다. 뉴스 보도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의 보도, 사설, 논평, 노선기사 등을 대부분 인용 보도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시작한 ‘평양FM 방송’은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 방송으로서 북한의 혁명가곡을 비롯하여 베토벤, 브람스, 비발디 등 클래식 음악과 혁명예술 등을 방송하고 있다.

북한에는 ‘제3방송’으로 불리는 독특한 유선방송이 있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우리의 케이블TV와 달리 전 가구를 유선방송망으로 연결,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어서 일종의 사내방송이나 대학방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2) 텔레비전 방송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비롯하여 ‘교육문화텔레비죤’, ‘만수대텔레비죤’, ‘개성텔레비죤’ 등이 있다. 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주체사상과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1963년 3월 ‘평양방송국’으로 개국하여 1970년 4월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 1974년 4월 15일 김일성 62회 생일을 기해 컬러 방송을 시작했으며, 1999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54주년을 맞아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개성텔레비죤’은 개성에 위치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1971년 4월 15일 방송을 시작하여 1991년 10월부터는 컬러 방송을 시작한 대남 전용 방송이다. ‘교육문화

텔레비죤'은 1997년 2월 16일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맞아 신설한 텔레비전 방송으로, 평양 일원을 가시청권으로 한 대내 방송이다.

1983년 12월 개국한 '만수대텔레비죤'은 평양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및 명절에 한해 예술 공연, 영화, 스포츠 등을 주로 방송하고 있어 평양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 텔레비전 방송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필요에 따른 주민의 사상교양을 위한 선전선동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내용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드라마를 이른바 방송 황금시간대(오후 8:30~9:30)에 편성하는 한편 작품 소재와 내용도 당 및 수령과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 이외에 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 갈등 해결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 Footnote

-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북한 교육 체계의 기본 골격과 교육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김일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하여 공포한 것으로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하고 있다. 전문,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과 방식, 사회주의 교육 제도, 교육 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2009년 헌법에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가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로 문구가 수정되었다.
- 3 학제 개편으로 소학교 과정이 4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였으나 북한의 교육과정 자료 미공개로 개편 이전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 4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과외교육 기관이다. 소학교~중학교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위해 건설된 일종의 학생회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을 ‘학생소년궁전’으로 부르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2,000석 규모의 극장과 도서관을 비롯해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의 소조실과 활동실 200여 개가 갖추어져 있다. 여기에 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 전시장 등이 있다.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함께 평양의 대표 청소년 시설로, 특기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한 특수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5 조정아, 「북한의 교육: 체계와 문화」, 2005년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pp.330~332.
- 6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32』, pp.389~398.
- 7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은 1920년대에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면서 박영렬, 안석영, 김기진 등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좌익 문예 단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한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 8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에서 사실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모든 문제를 주체 사상에 입각하여 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체의 중심에 수령을 두고 이를 예술로 형상화하는 창작 방법이다. 주체문예이론은 인민 대중을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유일사상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예관을 잘 드러내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9 종자는 작품 창작이나 어떤 일에서든 중심이 돼야 할 사안, 즉 핵심을 뜻한다. 종자의 핵심은 사상성, 즉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자론’은 문학예술 부문에서 지도자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가 반영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수령 체계 및 김정일의 후계 체제와 연계되어 사상 뿌리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10 군중예술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1950년대에 등장한 문예 정책으로, 근로 대중에게 문학예술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예술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 노선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문학예술의 군중화는 1982년 김정일이 전국문학통신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고 강조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서한으로 말미암아 ‘창작의 군중화’라는 당의 방침을 강조하여 모든 군중이 예술을 통해 좀 더 쉽게 사상을 접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집체작과 집체적 예술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 11 『노동신문』 1만호 발간기념사설(2001.12.1)
- 1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96
- 13 배순재·라두림, 『신문리론』, pp.25~26
- 14 『조선대백과사전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489
- 15 『조선대백과사전10』(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97
- 16 『조선대백과사전2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31



# VII

## 북한의 사회와 주민생활

제1절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

제2절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제3절 북한의 종교

제4절 북한 주민의 일탈과 사회 통제

제5절 북한의 인권

## Key Point

### 01

북한의 계층 구조는 핵심계층, 동요계층(기본계층), 적대계층(복잡계층) 등 3계층 45개 부류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은 출신 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형 불평등 구조를 하고 있다. 성별 불평등도 구조화되어 있는데 북한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 02

북한 주민은 당국이 지향하는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야 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자신의 이해에 부합된 가치관을 지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북한 주민은 하루 생활과 생애 과정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으며, 일생을 노동당 외곽 단체에 의무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중앙 공급에 의존해 오던 의식주는 이제 자체 해결해야 하며, 명절과 일요일에도 여가 생활을 하기 어렵다.

### 03

북한은 종교를 아편 또는 미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의 종교 단체는 노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대외 선전 도구 또는 외부 지원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04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난 10여 년간 사회 질서가 이완되면서 생계형 범죄, 권력형 범죄, 공공질서 위반 행위 등 일탈과 범죄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졌다. 북한 당국은 집단주의 학습과 조직 생활로 자발성 동조를 유도하는 한편 군이 사회 통제에 가담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 05

북한은 시민권과 정치권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자의로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이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지속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인권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주민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제1절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

사회 구조란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작용 중에 드러나는 정형화된 질서를 의미한다. 일상의 상호작용이 규칙되고 반복해서 발생할 때 그 상호 작용은 유형화되며, 이에 따라 예측 가능한 질서를 이루게 된다. 사회 질서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체제 지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계층 제도는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 계층이란 물질 또는 상징성의 보상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화된 계층 간 불평등을 의미한다. 계층 개념으로 계급이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정의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없다. 다만 막스 베버의 계층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차원(소득과 부 등)을 계급, 정치적 차원(영향력 등)을 권력, 사회적 차원(교육과 직업 등)을 지위로 각각 분류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 1 사회 계층

북한은 1950년대 말에 전후 복구 사업을 마감하면서 사회주의 제도 개혁에 본격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 조사 사업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 배경과 사회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식’ 계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들의 정치 성향

파악과 관리·통제 효과를 노린 사전 정치 작업이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성분 조사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내용은 <표 7-1>에 요약되어 있다.

북한이 계급 정책을 공식 수립한 것은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식 계층 구조의 골간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공민증 갱신사업'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성분 조사를 지속 실시하였다.

북한의 차별화한 성분 정책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통제 아래 실시

표 7-1. 북한 주민 성분 조사 사업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 재등록 사업	1966.4~1967.3	100만 적대위의 사상 결속을 위한 주민 성분 분류 (직계 3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 사업	1967.4~1970.6	주민 재등록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 요해 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 동태 조사·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 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해 갱신하면서 불순자 색출과 통제 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 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 자료로 체계화
북송 재일교포 요해 사업	1981.1~1981.4	북송 교포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 자료로 체계화
주민증 갱신 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 문건 정비
주민 재등록 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 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 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공민증 교체 발급	2004.4	비닐코팅식 공민증에서 수첩식 공민증으로 교체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332.

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자세히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부류를 조정할 따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 상당수가 불법 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 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하였다.<sup>1</sup>

북한은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표방하였다. 북한은 분단 이듬해인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피상적 관찰일 뿐 북한 여성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 격리 현상,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를 분석할 때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여성의 사회 참여는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이라는 이념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주체적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라는 정치·경제적 목적에 동원된 결과일 뿐이다. 북한 여성은 광복과 동시에 ‘민주여성동맹’이 창립되고 나서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다양한 정치 사상 운동에 대거 동원되었다. 경제 측면으로는 노동력 수요·공급 불일치에 대한 완충 작용의 ‘산업예비군’ 역할을 하였다.

경기가 다소 좋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여성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자 여성은 직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 사정이 점차 악화되면서 개인 부업 성격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이 운영되고, 여기에 여성 ‘유휴노동력’이 대거 동원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른바 ‘밥 공장’이나 ‘반찬 공장’ 또는 탁아소와 유아원 증설은 여성해방이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노동에 공식 참여하는 여성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노동(가사노동) 또



한 거의 온전히 담당함으로써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여성은 공식으로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활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혁명가의 아내, 혁명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가부장제가 아직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며, 상당한 경우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가계 유지 활동에서 여성의 기여도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지위도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하늘처럼 모시던’ 남편들도 집에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엄격한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부분적인 변화를 근거로 북한 여성의 지위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차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여성 정책이 여성을 참다운 인격체로서 사회 참여를 장려하였다기보다는 노동력 착취와 체제 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는 북한 여성의 사회 지위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계층 이동과 계층 구조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의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계층 이동이라고 한다. 수직 이동은 계층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동, 수평 이동은 계층 지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 간 또는 직업 간 이루어지는 이동을 각각 의미한다. 이 가운데 북한 주민의 계층 이동은 주로 수평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수평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계층 지위가 의미 있게 변했다고 결론짓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북한의 계층 이동은 성분 정책에 의하여 인위로 통제되며, 거주 지역과 직업은 주로 성분 정책에 의하여 배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사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계층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복잡 계층 주민이 '수원'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상층 이동을 경험하는 경우다. 임대농과 고용농의 분리, 전주(錢主)의 등장도 북한에 계층 이동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이는 북한의 계층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계층 구분에서 경제적 지위 또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지위 변화로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결론을 맺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정치 배경, 개인의 연줄, 기술 수준, 물질적 신분 상승 욕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 요인이 기존의 성분 정책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sup>2</sup>

북한의 계층 구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출신 성분과 '당성(黨性)'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보통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객관화된 요소로 측정되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요소의 불평등은 인위에 따른 성분 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상위 계층일수록 고등 교육과 특수 교육 등 교육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또한 상위 계층일수록 지위가 높고, 권한이 큰 직업을 배정받으며, 각종 분배에서도 특혜를 받게 된다.

둘째는 귀속 지위(ascribed status)에 근거한 폐쇄 체제(closed system)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핵심 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범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핵심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 지위가 이어진다. 반면에 출신 성분이 나쁘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위 계층으로의 진입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기본 계층이 핵심 계층으로, 또 복잡 계층이 기본 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당성'이라는 정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계층 구조는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강화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의 토지 개혁으로 지주 계급을 완전히 해체하고 토지를 소작농, 빈농, 고용농 등에게 무상 분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화(집단화)를 전면 단행하였다. 이후 의식주 관련 생활용품을 노동당 등 정권 기관의 통제 아래 분배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하여

당국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북한의 경직된 성분 정책은 북한 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절대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계층 구조가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층 정책을 근본부터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는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층 구조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표와 정책 노선이 근본부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지속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흔히 사회 지배층은 그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최우선으로 제도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하루 생활과 여가 등 일상생활도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의 획일화는 더욱 효과 높은 사회 통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다.

### 1 북한 주민의 가치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수립과 김일성의 권력 강화, 김정일 및 김정은의 권력 승계,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배 논리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한편 정치 교육으로 이런 논리의 전파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의도에 따라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새로운 가치관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북한이 발전시켜 온 가치관의 논리는 크게 사회주의 혁명(건설), 사회 안정, 위기 극복으로 나눌 수 있다(표 7-2 참조). 사회주의 혁명(건설) 논리는 구 체제인 봉건주의와 타도 대상인 자본주의에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봉건주의는 ‘썩어빠진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 착취 사회로서 혁명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로서 집단의 노력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이상사회다.

표 7-2. 북한의 이념 체계와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주요 내용
사회주의 건설 (혁명) 논리	자본주의·봉건주의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취 사회, '씩어빠진' 사회, 불평등 사회</li> <li>· 혁명의 대상</li> </ul>
	공산주의(사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계급 사회, 평등사회, 집단주의</li> </ul>
안정 논리	수령(김일성) 우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사상 '창시' 및 변형</li> <li>· 혁명적 수령론</li> <li>· 사회정치적 생명론</li> <li>· 사회주의 대가정: 수령·당·인민의 일체감</li> </ul>
	김정일 우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교 덕목 강조</li> <li>· 은덕정치/광포정치</li> <li>· 충성과 효성</li> </ul>
위기극복 논리	북한 사회주의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식 사회주의</li> <li>· 조선민족제일주의</li> <li>· 과학적 사회주의</li> </ul>
	지도자(김정은)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왕가: '태양절', '대를 이은 충성'</li> <li>· 절대 충성 요구: 수령결사옹위정신</li> <li>· 21세기의 태양, 선군혁명의 계승자</li> </ul>

북한에서는 1960년대 말 김일성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주로 사회 안정 논리를 전파해 나갔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의 권력을 정당화하며 북한 주민에게 무조건 충성을 요구한다. 수령(뇌수)-당(몸통)-인민(팔다리)으로 구성되는 혁명적 수령관, 수령(아버이)-당(어머니)-인민(자식)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대가정, 사회정치적 생명의 부여자라며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김일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다.

김일성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고 김정일의 권력 세습이 결정되면서 김정일 세습 및 우상화 논리도 개발되었다. 유교 논리가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그 핵심 요소인 충효사상과 가부장 중심의 가치관을 동원하였다. 북한 주민은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성과 효성을 보여야 했으며, 김정일에게도 '대를 이은 충성'을 보여야 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발전이 정체되고 급기야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과학적 사회

주의 등 새로운 논리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또한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1세기 태양’으로, 결사옹위 정신과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하여 목숨으로 보워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켜 왔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김일성 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야 했다. 이들 가치관은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체제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인 가치관(ideal valu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이런 가치관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국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반면 내면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현실 가치관(real value)을 발달시켜 왔다. 결국 북한 주민의 행동 양식은 이상 가치관과 현실 가치관 간 타협의 산물이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가치관 특징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사경제 활동이 심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주민들 사이에는 돈과 금전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시장경제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 집단주의보다는 가족주의나 개인주의 성향도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실정에 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 (1) 평등주의와 차별 의식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토지, 자본, 공장 등 생산 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하고 이념상으로 평등주의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평등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하는 평등 이념은 사회주의 혁명 및 권력의 일인 집중을 정당화하는 수사(rhetoric)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차별과 불평등 의식이 만연되어 있다. 북한 사회가 불평등 사회이며 그 불평등 구조는 인위적인 성분 정책

시행 결과라는 점에서 악성 불평등 사회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도 당 간부의 전횡과 성분에 따른 차별 대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대우도 당연시한다. 3대 세습 체제는 권력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불평등 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능력이 아니라 출신 성분에 따라 진학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 및 거주지까지 영향을 받으며, 특히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 계층과 일반 주민 간에는 의식주 확보, 교육, 경제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사회적 신분 상승 등 조직 생활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회와 삶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 (2) 집단주의와 사회 나태 현상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를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본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다. 헌법에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집단주의에서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성보다 동지에 및 의리를 중시한다.

집단주의는 공동 노력과 공동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일상에서 ‘사회적 나태(social loafing)’ 현상을 보인다. 사회적 나태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비해 개인의 기여도가 작아지는 현상이다. 북한 주민이 겉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취도가 낮으며, 이러한 사회적 나태 현상이 북한 경제 생산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3) 획일주의와 선호위장

북한은 당의 혁명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권리·이익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북한 주민 모두가 단일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단일 생활양식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획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 통제, 조직생활 통제, 당·정·군에 의한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 수단을 동원한다. 북한 주민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획일주의를 대표하는 현상이다.

획일주의와 사회 통제의 결과는 실생활에서의 '선호위장(選好僞裝)'으로 나타난다. 선호위장이란 공적 선호와 사적 선호 간의 괴리 현상으로, 공식 공간에서는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개별 영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중성격의 가치관이다. 북한 사회가 표면으로는 단결되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 내면이 취약한 것은 선호위장의 결과다.

#### (4) 수령중심주의와 집단사고

북한은 가부장 중심 권위주의 사회로서 권위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수령과 함께하도록 요구된다. 북한 주민은 '수령의 교시' 및 '지도자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슴에 단 배지('초상휘장')에서부터 가정·직장·사회 등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수령과 함께' 생활한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어야 하며, 집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모든 교과서에는 단원별로 '수령의 교시'나 '지도자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생활총화에서도 '수령의 교시'나 '지도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비판해야 한다.

수령중심주의는 그 결과 집단사고(groupthink)를 가져왔다. 집단사고란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본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나 대안은 무시하고 내리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북한 사회의 경직성은 수령과 체제에 대한 충실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논란이 발생하거나 불편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 2 하루 생활과 생애 과정

### (1) 하루 생활

북한 주민의 통상으로 이뤄지는 하루 일과는 연령과 직업 등 집단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로 볼 때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대체로 오전 6시를 전후하여 기상한다. 아침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 일반 주민은 대부분 잡곡밥이나 강냉이(옥수수)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 반찬이다. 계란 프라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나은 경우에 속한다.



궤도 전차를 타고 출근하는 평양 시민들

북한 주민은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은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지방에서는 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출근을 하면 독보회

및 당 지시 사항 전달, 강연회 등 당 정치 사업을 한다. 독보회는 노동신문을 보면서 토론하는 등 약 30분간 진행된다.

정규 작업은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등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 농민의 경우 100분 노동에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낮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점심 시간이다. 점심은 보통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직장에 인접한 동료 집에서 먹는다.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먹기도 한다. 주로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먹으며, 여유가 있는 집안은 김밥에 감자볶음이나 소시지를 먹기도 한다.

상당수의 여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밥, 빵, 파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물·돼지풀·채소 등을 채취하고, 집에 도착하면 집짐승(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 등)에게 먹이를 주며, 오후 작업을 위해 농장에 나가기 전까지 텃밭에서 잔일을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오침시간을 가지며, 오후 일과는 2시에 시작하여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장원의 경우 일의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총화 시간이며, 일주일에 한 번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비판’과 동료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호상비판(상호비판)’을 하는데 비판 기준으로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 노동을 하거나 학습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평일에 개인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이 동물이 저조하다 보니 노동자 상당수가 잡담을 하는 등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오전에 퇴근하여 장사를 하기도 한다. 일과 후 잔업도 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 정기 개최가 되지 않는다. 생활총화를 오전에 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보낸다.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저녁을 먹으려고 한다. 저녁식사는 아침식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는 개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남자의 경우 집을 수선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자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 텃밭에 나가 김을 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땀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 (2) 생애 과정

### 유아기

아기가 출생하면 세대주는 주거지 분주소(파출소)에 가서 출생신고서 양식을

받아와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인민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등록을 하며, 다시 분주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구역)·군 안전부에서 확인을 받아 직장 식량 취급자에게 제출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민족 등을 기록한다. 아이는 생후 3개월이 지나면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일반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높다. 나이가 만 4세에 이르면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만 5세가 되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높은반에 편입된다.

### 아동기·청소년기

만 6세가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5년간 교육을 받으며, 만 11세가 되면 중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높은반(5세)에서부터 중학교 6학년 까지가 북한에서 말하는 ‘전반적 의무교육기간’으로, 그 기간은 모두 12년이다. 만 7세가 되면 소년단에 편입되며, 만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편입되어 집단생활을 하면서 정치 학습을 받는다.

### 성년기

중학교를 졸업하면 크게 대학 진학, 군 입대, 직장 배치 등 3개의 진로가 기다리고 있다. 남자는 대부분 군대에 가며, 여자는 주로 직장 배치를 받는다.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직통생’은 중학교 졸업생의 약 13%다. 직장생활 또는 군대생활 중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기도 한다.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 거의 상관없이 배치된다.

북한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은 연애 위주로 하지만 농촌 지역에는 중매 전통이 많이 남아 있다. 배우자를 찾을 때 혼인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해 지면서 그 기반도 출신 성분보다 사랑과 경제 능력으로 변하고 있다. 혼수는 대체로 여자가 장만한다. 예식장은 따로 없으며, 공공회관이나 신랑의 집에서 식을 올린다. 혼인식이 끝나면 공원이나 김일성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린다. 신혼여행은 없으며, 신랑의 부모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것이 일반 치례다. 혼인 휴가는 1주일이지만 보통 사흘 쉬고 출근한다.

## 노년기

1960년대는 김일성이 ‘60청춘 90환갑’이란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갑이 사라졌으나 1970년대에 부활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혼인과 회갑 등의 행사를 간소하게 치를 것을 권장한다. 북한의 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식량 배급이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없으면 공원 등지에서 소일하거나 손자를 돌보기도 한다. 노년층은 배급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점차 회복되어 최근에는 약 69세에 이르고 있다. 북한도 우리처럼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약 7년 길다. 장례는 보통 3일장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고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1~2일장이 보편화되었다. 장례를 치를 때 남자는 검은 완장을 차고, 여자는 흰 리본을 꽂는다. 1970년대는 화장이 강요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장이 일반화되었다.

## 3 조직 생활

북한 사회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조직 생활은 집단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다. 북한 주민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직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북한의 어린이는 출생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탁아소 생활을 하면서 조직 생활을 익히게 되고,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공식 조직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당이나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등 노동당 외곽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야 한다. 직업이 없는 전업 주부인 경우 민주여성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표 7-3. 북한의 주요 사회 조직

단체명	가입 대상	조직 규모	구성 방법 및 활동	창립일
민주여성동맹 (여맹)	여성: 31~60세	약 2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li> <li>당 후비대 사상·교양·노력 동원</li> </ul>	1945.11.18
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협동농장원: 31~65세 (여: 60세)	약 13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li> <li>사상교양, 농촌사업 지도</li> </ul>	1946.1.31
직업총동맹 (직총)	노동자, 사무원: 31~65세 (여: 60세)	약 16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자, 사무원, 직장 단위 조직</li> <li>9개의 산별직업동맹</li> <li>사상교양, 기술 습득, 노력경쟁 지도</li> </ul>	1945.11.30
김일성 사회주의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4~30세 학생, 군인, 사회인	약 50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원을 제외한 해당 연령층</li> <li>사상교양, 당 후비대 사업, 경제 건설, 통일 및 대남 정책 지원 등</li> </ul>	1946.1.17

출처: 통일원, 『1995 북한개요』, 1995, p.84,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53 등

### (1) 소년단과 청년동맹

북한 주민의 조직 생활은 사실상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만 7세가 되는 소학교 2학년 때부터 공식 시작된다. 북한의 소학교 학생은 2학년이 되면 예외 없이 소년단에 입단하여 활동하며, 만 14세가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 활동을 한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한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모두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입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단 입단식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김정일 출생일)과 4월 15일(김일성 출생일), 소년단 창립기념일인 6월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든 학생이 입단할 때까지는 친구 간에도 소년단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구분되는데 먼저 입단한 학생은 자랑스러워하는 반면에 입단을 하지 못한 학생은 친구를 시샘하여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 소학교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먼저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먼저 입단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동

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성분도 좋아야 한다.

먼저 입단하는 아이들의 경우 입단식 자체도 거창하게 진행한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 맹세를 읽게 한 뒤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 주는 행사를 치른다. 입단식에는 시(구역)·군의 간부들을 포함하여 항일 빨치산 운동이나 다른 일로 훈장을 받은 노인들이 참가하여 입단하는 아이에게 직접 붉은 넥타이를 매어 주면서 자부심을 심어 준다. 입단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사회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앞으로는 공부만 잘할 것이 아니라 조직 생활을 충실히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소년단에 입단하고 난 뒤에는 학교 소년단 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실천하는 등 조직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각 학교에는 조직 생활을 지도하는 조직 담당 위원장과 사상 담당 위원장 등 학생 간부가 있다. 학교 소년단 위원회는 학급별로 특정 과업 수행을 지시하며, 학생들은 조를 짜서 이를 관철해야 한다.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고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이 과업의 가장 대표 사례다. 또한 소년단의 날인 토요일에는 분열 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한다. 소년단 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한 뒤 만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만 14세가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은 소년단 입단 과정과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즉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도 소년단 입단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 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시(구역)·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합격해야 최종으로 소년단의 표지인 붉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 가입식을 거쳐 청년동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이것이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허리에 차고 다닌다.

소년단과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하여 조직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원의 영향력도 크지만 무엇보다 시(구역)·군 청년동맹 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지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 등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평정서<sup>3</sup>에 최종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2) 노동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사실상 의무 가입 조직이라면 노동당은 자발 가입 조직이다. 북한의 체제상 노동당은 국가보다 상위 조직으로서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려고 하지만 소수의 선택된 주민만이 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동당 입당은 1년 동안의 후보당원 기간을 거쳐야 한다. 후보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당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해야 하며, 당세포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자격 유무를 결정하면 시·군 당 위원회에서 비준해 준다. 예외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화선입당(火線入黨)<sup>4</sup>, 즉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당에 입당하기도 한다.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 조직으로, 당의 조직 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 단위다. 한 직장에 당원이 5명도 안 되면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노동당 가입자는 청년동맹에서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입당하지 못하면 30세까지 청년동맹에서 조직 생활을 지속한다. 30세가 되어도 입당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자는 직업총동맹(직총), 농민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각각 소속을 옮기게 된다. 직업총동맹 산하에는 세부 직업별로 직업동맹(직맹)이 구성되어 있다.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않는 전업 주부가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민주여성동맹(여맹)으로 소속을 옮긴다.

직맹, 농근맹, 여맹의 조직 생활은 당세포의 조직 생활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 농촌의 경우에는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 생활이란 크게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로 나누어진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으로, 보통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강연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 당원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당원반과 근로자반은 높은반 및 낮은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 정책,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혁명노작’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습 과정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생활총화는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모임으로, 대체로 1주일에 한 번(주총화) 조직별로 개최한다. 생활총화를 할 때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 및 ‘말씀’을 근거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한다.



### (3) 인민반의 가두 조직

북한 주민은 소학교에서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직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인이나 전업 주부 등 직장이 없는 주민은 크게 노동당, 여성동맹, 인민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인민반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당원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직장이 없는 노인이나 전업 주부 가운데에는 당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동당에서 조직 생활을 하며, 전업 주부의 경우는 여성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그럼에도 인민반 생활을 등한할 수도 없다. 노인들은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 생활을 하고, 대다수 '가두여성(전업 주부)'들은 여맹 활동과 별도로 인민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은 대체로 20~40가구로 구성된다. 도시에서는 아파트 동별로 인민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민반을 구성하는 가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원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세대주인 남자들은 각각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당이나 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인민반 활동은 주로 노인이나 전업 주부인 가두여성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인민반에서는 인민반장의 지도 아래 학습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고 생활총화를 진행하는 등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있는 조직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인민반별로 배정된 과업을 수행한다. 인민반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의 지시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민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 생활에서 빠지거나 과업 수행에 등한시하는 사람도 증가하였다. 특히 돈이 주요 생활 수단이 되면서 경제력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과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북한 주민의 조직 생활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조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선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공식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이사를 위해서는 공식 통제 기구를 제외하고도 인민반 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에 이르기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 활동 평점

을 잘 받아야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직장에서의 승진도 마찬가지다. 조직 생활에 불성실할 경우 ‘자유분자’로 낙인찍히는 등 주민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으며, 생활총화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조직 생활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4 의식주 생활

### (1) 식생활

북한 주민의 식량 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즉 배급에 의한 방법과 스스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다. 배급에 의한 방법은 북한 주민의 전통적·제도적 식량 조달 방법이다. 북한에서는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식량 공급 급수를 책정하며, 이 급수에 따라 식량을 차등해 공급하여 왔다. 식량 공급 급수는 모두 9급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에 따른 1일 공급 기준은 <표 7-4>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이는 영아에게 주는 분량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다. 유해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량 부족으로 인해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배급할 경우에도 등급별 정량이 지켜지지 않는다.

연로 보장을 받는 노부모와 직장에 배치되기 전의 자녀, 세대주의 부양을 받는 전업 주부(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눠 준다.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로 배급받는다. 각 농민이 받는 결산분배량은 작업반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작업반에서 원래 계획의 80%를 달성하면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는다. 따라서 분배량은 작업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작업반에서는 같은 양의 분배를 받다고 할 수 있다.

표 7-4.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 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 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근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 보장자, 전업 주부(가두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1~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미만의 유아

물론 식량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 부터 애국미 명목으로 10%를 감축하고 다시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12%를 감축 하는 등 양을 지속 줄여왔다. 배급도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한두 달씩 건너뛰기도 하였다. 급기야 1995년 말에 이르러서는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 배급을 중단하였다.

식량이 부족하고 배급 체계가 평양 시민과 일부 군부대 등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 와해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거나 농장에서 식량을 훔치는 사람도 늘어났다. 텃밭과 폐기밭 등 사경작지를 가꾸거나 돼지나 염소를 키우는 농민도 증가했다. 도시 주민들도 텃밭을 갖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식량을 구입하는 곳은 주로 장마당이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으며, 아직까지도 생필품 대부분은 장마당에서 거래된다. 장마당은 대다수가 암시장 성격이 강하다. 물자는 다양하고 풍족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는 없다.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2009년 11월 말에 전격 실시된 화폐 개혁 조치로 인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보유 화폐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화폐 개혁과 함께 금지된 장마

당은 다시 허용되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 현상을 보이면서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2) 의생활

배급 제도는 의생활 분야에도 오래 동안 적용되어 왔다. 공급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에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인민반에서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국정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의복 또한 식량과 마찬가지로 당국에서 배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중앙 공급 대상자와 일반 공급 대상으로 나누는 등 의복을 급수에 따라 차별 배급해 왔다. 중앙 공급 대상자는 고급 모직물을 배급 받는다. 특히 예술가와 기자·교원 등 특수 집단과 당 및 내각의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히 좋은 옷감과 의복을 공급한다. 그러나 급수가 낮아질수록 반모직이나 그보다 질이 나쁜 옷감을 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 의복들은 공급 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 판매품이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구입한다.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의복의 공급은 사실상 식량보다 먼저 중단되었다. 의복의 개인 구입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은 의복을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서 구해 입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학생복은 아직도 배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2년에 한 벌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최근에는 국정 가격으로 공급한다. 국정 가격은 장마당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만 공급 물량이 모자라서 학생복 구입도 대체로 장마당에서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명분으로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을 입고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블라우스,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국인과 해외 교포의 왕래가 많은 평양, 원산, 청진 등의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을 많이 하였다. 1980년대에는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 기사들이 실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 영역이 머리 모양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다.



파마머리를 한 북한 여자 아나운서

북한 주민의 복장이 변화된 계기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일명 평양축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차림새는 북한 주민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외국인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새를 흉내 내는 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당국이 ‘민족전통’을 강조하자 매체에서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칭송하는 등 전통 복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북한 여성의 옷차림은 다소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생활고로 말미암아 옷을 여러 벌 구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일반 주민들은 점퍼나 스웨터·인민복·작업복 차림이 보통이며, 주로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 젊은 여성의 경우 머리를 손질하고 가볍게 화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이 든 여성들의 경우 머리 모양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 (3)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 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 소유 역시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 형식으로 거주한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 유형으로 배정된다. 예를 들어 1호로 분류되는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협동농장원은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또는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 문화주택을 배정받는다. 2호인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3호인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 단위 부부장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을 배정받는다. 4호인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은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배란다 시설이 딸린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그리고 특호로 분류되는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은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 주택을 배정받는다. 주택 배정은 직장과외 거리를 감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경우 주택을 다시 배정받기도 한다.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체육인에게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동에 위치한 원통형 아파트와 함께 개인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반 주민의 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sup>5</sup>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혼부부도 입사증이 나올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아파트 한 채에 2세대가 더불어 사는 '동거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 문화주택

북한 주택 문제의 하나는 취약성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색도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택의 개인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음성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정식으로 입사증을 받아 주택을 배정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선 동거인으로 등록한 뒤 세대주를 변경하는 편법을 써서 주택을 거래하는 식이다. 주택을 옮기기 위해서는 원래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주민들은 비록 주택의 소유권은 없지만 돈만 있으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 살 수도 있는 셈이다.

가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장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을 이른다. 6기는 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사진기 또는 녹음기 등이다. 가구는 개인별로 장만해야 한다. 권력층의 경우 5장 6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제 가구와 가전제품을 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경우 5장 6기를 다 갖추기는 힘들다. 신부가 시집갈 때 2장 3기만 갖춰도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다.

## 5

### 여가와 명절

#### (1) 여가 활동

북한 주민은 생산 활동은 물론 생산 외 조직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일찍 취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가를 생산과 취침 이외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여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도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규 노동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제도로 보장된 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북한 주민도 기회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긴다. 북한 주민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여행은 여전히 통제된다. 사·군·구역의 경계를 벗어날 때는 여행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그동안 개인 용무의 허가증은 좀처럼 발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여행증이 쉽게 발급되고 불법적 여행도 묵인되는 등 여행이 다소 자유로워졌다. 여행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정보 유통도 원활해지고 있다. 북한 주민의 여행은 대부분 장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연극) 감상은 북한 주민이 그동안 즐겨온 여가 활동이다. 오미란, 홍영희 등 인민배우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생활비’)에 방 2칸짜리 주택을 배정받는다. 화장품값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도 따로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평양을 중심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팬레터(‘공연축하 성과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단체로 극장에서 관람했지만 최근 단체 관람의 빈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북한 주민이 가장 빈번하게 즐기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다. TV 보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모여서 시청한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정전에 대비하여 축전지를 준비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음주가무는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온 여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친구의 결혼식 등 행사가 있을 때 노래를 많이 부른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 등 정치성 짙은 노래, <사랑 사랑 내 사랑> 등 연속극 주제가, <휘파람> 등 서정가요가 주로 불린다. 비공식 모임에서는 <그때 그 사람> <사랑의 미로> 등 주로 남한 노래의 인기가 높다. 최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두만강> <찹레꽃> <홍도야 울지마라> 등 ‘흘러간 노래’가 ‘계몽기 가요’라는 명목으로 해금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다. 평양에는 노래방(‘화면반주 음악실’)도 있다.

술 배급이 중단되면서 권력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정규 공장에서 만든 술(‘국주’)을 마시기 어렵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마시는 술은 가정에서 만든 밀주다. 이를 ‘민주’라고 부른다. 우리의 막걸리와 유사한 술로는 농가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농태기’라고 부른다. 북한 남성들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성인 남자는 흡연을 한다. 그러나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여자는 드물다.



대동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

북한 주민도 낚시 등 놀이와 축구나 배구 등 스포츠를 즐긴다. 낚시는 북한 주민의 주요 취미 활동 가운데 하나다.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는 북한 주민이 즐기는 안주감이다. 배구는 직장에서 일이 없을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대표 스포츠다.

강이나 해안에서 수영을 하기도 한다. 평양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외국인과 특정 계층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는 독서와 주패놀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와 바둑을 두는 주민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화된 오락이라고 하기 어렵다.

## (2) 명절과 기념일

북한에서 편찬된 「조선말대사전」(1992)에 따르면 북한의 명절은 크게 국가적 명절, 경축기념일, 국제기념일, 민속명절로 나눌 수 있다. 국가적 명절은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에서 매우 의의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우리 인민의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고 있다. 경축기념일은 사회 또는 경제 부문의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6·6절(소년단 설립일), 교육절, 광부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기념일은 “국제로동계급과 세계인민들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축하는 기념일”로서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월 1일)과 국제부녀절(3월 8일)이 여기에 속한다. 민속명절은 우리 민족이 전통으로 즐겨 오는 설, 정월대보름, 추석 등을 일컫는다.

## 국가적 명절과 기념일

북한은 명절 가운데 김일성 생일(4월15일)과 김정일 생일(2월16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일컫는다. 김일성 생일의 경우 1962년 50회 생일을 기하여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고 명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공휴일로 지치지 않다가 56회 생일이 되는 1968년에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였으며, 60회 생일이 되는 1972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김일성 사후인 1997년에는 이날을 ‘태양절’로 정하고 김일성의 출생 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생일의 경우는 1975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명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976년에 ‘국가적 명절’, 그리고 1995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표 7-5. 북한의 주요 명절과 기념일

날짜	명칭
1.1	양력설
1.1(음력)	음력설
2.16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1.15(음력)	정월대보름
3.8	국제부녀절
4.5	청명절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4.25	인민군 창건일
5.1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1절)
6.6	소년단 설립일
7.27	정전협정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8.15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9.9	정권수립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8.15(음력)	추석
8.25	선군절
10.10	노동당 설립일(조선노동당창건일)
11.16	어머니날
12.27	헌법절

출처: 통일부, 「2014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다른 명절과 달리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등 행사가 다채롭고, 특별 배급품을 나눠준다. 언론 매체에서는 이날을 전후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하편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매일 전하면서 온 세계가 함께 이 날을 축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날이 되면 “백두산에서 눈보라가 불다가 아침 해가 솟을 무렵 갑자기

멋졌고 밀림도 잠잠해져서 장쾌한 해돋이가 펼쳐졌다”는 등 각종 신비한 자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선전한다. 이 날이 되면 특별배급품으로 설탕, 식용유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특별배급품이 없는 ‘깍뎠키 명절’과는 다르

다는 인식을 한다.

이 밖에 국가적 명절로는 인민군창건일, 정전협정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광복절(조국해방의 날), 정권수립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헌법절, 소년단 설립일(6·6절)이 있다. 2012년부터는 어머니날, 2013년부터는 선군절을 기념일로 제정하여 각각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념일로는 1909년 미국 시카고 여성들의 시위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제부녀절(3월 8일)과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념하여 제정한 근로자의 날(국제근로자절, 5·1절)이 있다.

### 민속명절

민속명절은 양력설과 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절, 한가위(추석) 등 전통으로 지켜 오는 명절이다. 민속명절은 1967년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철폐되고 양력 설 하나만 인정했다. 그러나 1972년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를 허용하는 등 전통 명절을 일부분 부활하기 시작해 1989년에 음력설, 한식, 추석을 민속명절로 지정했다. 2003년에 음력 정월 초하루를 앞두고 김정일이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쉴 것을 지시하였으며, 정월대보름도 하루 휴식하고 단오와 추석을 예전의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2012년에는 청명절(4월 5일)도 명절로 지정하였다.

민속명절은 제도화된 휴일이라기보다 그때그때 당국의 지정에 따른다.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해당 명절을 앞두고 며칠 전에 내각에서 올해 음력설이나 추석은 휴무일로 정해서 쉬는 것을 공식 발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곧 내각에서 그해 민속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민속명절이 되면 당국이 북한 전역에서 율놀이와 농악무, 민족음식 품평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씨름경기를 개최하는 등 명절 분위기를 돋우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대다수 주민들은 민속명절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민속명절을 진정한 명절로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이라고 특별한 놀이를 한 기억이 없다고 전한다. 다만 설날이 되면 “새해를 축

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나누며,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다.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벽에 걸려 있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올리고 난 뒤 차례를 지낸다.

## 제3절 북한의 종교

광복 당시만 해도 북한 지역은 남한에 비해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유명한 사찰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독교와 천주교 역시 남한보다 먼저 전파된 지역으로서 신도의 수도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1950년에 펴낸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광복 당시 북한에는 천도교도 약 150만 명, 불교도 약 37만 5,000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 7,000명 등 총계 약 200만 명의 종교인이 있었다. 이는 당시 북한 인구의 22.2%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의 종교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종교인 대부분이 월남하였거나 전쟁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북한에 남아 있던 종교인들은 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가 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1 종교관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견해는 마르크스의 종교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사회마다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는 부르주아의 지배 아래 있으며, 따라서 부르주아 지배 계급의 역할을 정당화하고, 피착취 계급의 혁명 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는 노동자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북한 당국의 종교관도 종교를 ‘아편’으로 보며, 기껏해야 봉건시대의 낡은 잔재인 ‘미신’에 불과하다고 본다.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sup>6</sup>

1981년에 펴낸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종교는 ‘신’, ‘하느님’ 등과 같은 자연과 사람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의지해서 살게 하며 이른바 저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는 그러한 조작... 역사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인민을 속이고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근대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종교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다.”

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부정적 입장은 1985년 출판된 「철학사전」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사전에 따르면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라는 김일성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어떤 형태의 종교든 현실이 인간의 의식에 환상처럼 왜곡되어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전체가 허위적’이다. 또한 종교는 비교적 오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착취사회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종교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면 헌법 규정이 바뀌는 등 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점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1972년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개정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종교 규정이 다소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그리함에도 북한에서 종교가 인정된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에 종교가 없다는 주장이 결코 자량이 될 수 없으며, 국제 사회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대남 교류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을 계기로 종교 단체들을 내세워 남한과 외국 종교 단체들의 인도 지원 활동을 요청했다.

## 2 종교 실상

오늘날 북한의 대표 종교 단체로 활동하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 단체는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조직되었다. 그 뒤 1980년대 들어 재외동포 종교인을 상대로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천주교인협회(1999년 조선카톨릭교협의회로 개칭, 현재의 조선카톨릭협회)와 조선종교인협의회(KCR) 등 몇몇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다. 1988년에는 평양에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세웠고, 그 이듬해에도 역시 평양에 칠골교회를 건립하였다.

불교계에서도 1988년 5월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탄절 법회를 처음 시작한 뒤 매년 열반절과 성도절 등 불교의 3대 기념법회를 개최해 왔다. 2004년에는 특히 불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1999년 이후 계속해 온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는가 하면 금강산 신계사 복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59개 사찰의 단청 사업도 진행하였다.

러시아 정교도 북한 당국의 관심을 끌어 왔다. 2002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순방했을 때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하여 북한에 성당을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했는가 하면 2003년 1월에는 러시아 정교 신부가 평양을 방문하여 성

탄절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곧이어 6월에는 평양에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사원을 착공하는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면 북한에도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존재하는가? 북한의 강지영 조선종교인 협의회(KCR) 상임위원은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종교 단체나 인권 기관들은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가장 혹독한 종교 탄압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내 기독교 선교 단체인 ‘오픈 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5만~7만 명의 신도들이 수용소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가 있다면 김일성교만 존재할 따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 종교 관련 통계를 조사해 공개하는 ‘애드히런츠닷컴(adherents.com)’은 북한에 주체사상 신봉자로 약 1,900만 명이 있으며, 이는 기독교·이슬람교·힌두교·불교 등 전통 종교에 이어 세계 10대 종교에 속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도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해 본 종교인들은 북한의 신도들이 찬송가를 아예 모르고, 성직자도 종교의 단편 지식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 뇌리에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 지도자 대부분을 ‘무섭고 악착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정치 교육으로 종교 지도자를 부정적 모습으로 묘사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지금도 여전히 황해도 신천의 신천박물관에 기독교 선교사를 인민을 핍박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묘사하는 전시물을 내건 채 북한 주민들을 교양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1800년대 말에 연희전문학교와 새문안교회를 건립하고 YMCA를 조직하는 등 4대에 걸쳐 봉사해 온 언더우드 일가가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나오자 그들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침략의 발판을 닦아 온 길잡이”로서 “미국의 조선침략을 위한 첩보활동”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제4절 북한 주민의 일탈과 사회 통제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은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이처럼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사회일탈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행위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탈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사회통제라고 한다. 북한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통제의 대상이 되며, 통제는 인권 억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전환기를 맞으면서 일탈 및 범죄가 급증한 반면에 사회 통제가 다소 이완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범죄 내용을 일절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특성상 신문·방송 등에도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는 그 정도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계량화 작업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범죄

#### (1)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 분류

북한 형법은 혁명성(사회주의 혁명)과 계급성(노동자 계급)의 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형법의 제정 목적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범죄

표 7-6.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과 범죄명

대분류	중분류	범죄명(일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반국가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 행위죄
	반민족범죄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은닉죄, 반국가범죄 불신고죄
경제 침해 범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침해 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 탐오죄, 고의적 파손죄, 과실적 파손죄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	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 상 행위죄, 상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 외화벌이죄,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 질서 침해 범죄	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 남도벌죄, 산을 개간한 죄, 과 실산불죄
	노동행정질서 침해 범죄	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문화 침해 범죄		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도굴죄, 마약밀수·밀매죄
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일반행정질서 침해 범죄	집단적 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		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 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죄
생명재산 침해 범죄	생명, 건강, 인격 침해 범죄	살인죄, 중상해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 인 성교죄
	개인소유 침해 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 주) 북한 형법상 범죄의 대분류는 모두 7개 유형이며,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법률출판사(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2004, pp.784~840.

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 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 하는 데 있다.

북한의 형법은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부분 개정이 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등 모두 7개의 범 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과 구체화된 범죄명은 <표 7-6>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은 형법의 기본 원칙과 새로운 범죄가 대폭 추가되는 등 기존 의 형법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개정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형

벌 불소급의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개정 형법이 새로운 범죄를 대폭 추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의 범죄를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반국가 범죄에 시위와 습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서 하나의 조항으로 있던 마약 관련 조항은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마약밀수·밀매죄 등 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는 새로이 출현한 범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즉 예전에는 다소 북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회 통제도 유효하게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 변혁기를 거치면서 기존에 없던 범죄가 새로이 생겨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 질서 침해 범죄인 탈세죄·상행위죄·고리대죄·밀주죄,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인 매음죄와 음탕한 행위죄 및 도박죄가 여기에 속한다.

## (2) 일탈과 범죄 유형

북한은 고도의 조직 사회로 통제 기제가 잘 작동함으로써 비교적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일탈과 범죄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범죄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당국자들이 문제로 삼아 왔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자는 반당·반혁명 요소의 발호, 간부 계층의 부정부패 만연,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 만능 풍조, 청소년 계층의 사상성 유약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와 일탈행동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경제범

경제범은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 경제 활동으로서 절도죄, 밀수죄, 고리대죄 등 북한 형법상 주로 경제 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범은 북한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절도는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표 경제사범이다. 절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는 양곡 창고와 기타 생필품 배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 등이 있다. 개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절도는 주로 장마당, 역, 기차 등지에서 상인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통한 밀거래 빈도도 증가하였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는 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 등 1차 상품도 있지만 대체로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2차 상품도 많다. 여기에는 전기선·전화선을 절단한 구리(銅), 공장 부품, 도굴품 등이 속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으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비롯하여 신발과 옷 등 의류품, 소금과 치약 등 생활용품, 안경과 필름 등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이 밖에도 경제적 목적의 범죄와 일탈행위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갈 및 사기 범죄도 확산되었다. 불법 상행위는 단속과 목인을 반복할 정도로 하나의 일상사가 되었다. 주민들이 ‘국주’(국가에서 제조한 술)와 ‘민주’(개인이 제조한 밀주)를 구분할 정도로 밀주도 일반화되어 있다. 축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도용하기도 하며, 권력층 및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한다.

## 사회범

사회범이란 일상생활에서 생명, 신체, 사회 규범을 침해한 범죄를 말한다. 주로 대인범죄와 문화침해범죄를 들 수 있다. 대인범죄로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문화침해 범죄로는 외부의 문화를 반입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 북한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사회범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변혁기를 맞으면서 유형이 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 질서가 이완되면서 북한 주민들 간에는 싸움이 자주 발생한다. 금

전 이권을 둘러싸고 종종 패싸움도 벌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신매매도 북한 당국을 긴장시키는 신종 범죄다. 인신매매는 매우 치밀하게 조직을 갖춰 이루어지고 있다. 인신매매단은 주로 ‘결혼’을 미끼로 하여 북한 여성들을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 동포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챙긴다.

이른바 ‘퇴폐’ 문화반입·유포죄와 ‘적대’ 방송청취죄는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화침해범죄 사례를 대표한다. 북한 주민 상당수는 우리 노래를 부르며 우리 드라마를 시청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한방송 청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우리 방송을 직접 청취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남자의 경우 과반수가 직접 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 공공질서 위반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성(性)과 도덕성이 관련된 범죄다. 여기에는 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위반, 풍기문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범죄는 가해자 외에 뚜렷한 피해자를 규정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희생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의 형법상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또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불법혼인죄, 사례금·이익금 유용죄 등이 포함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성(性)을 금전으로 거래하는 매매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춘 행위는 주로 장마당이나 역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장마당의 경우 젊은 여자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춘하며, 역 주변에서는 ‘대기숙박업’을 하면서 매춘 행위를 겸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대기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북한의 신종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합법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남녀 관계의 유형 가운데 하나는 사실혼이다. 북한의 ‘가족법’에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혼이 증가해 왔다. ‘부

화(간통) 및 사실혼의 증가는 결국 이혼율의 증가로 연결되며, 높은 이혼율 때문에 가정 해체가 증가해 왔다.

도박 및 미신 행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범죄다. 도박은 상인들이 주로 하며, 전문 도박 조직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미신 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운세·건강·장사와 관련하여 점을 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력자도 가담하고 있다.

###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포함된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일컬어 “돈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고 할 만큼 뇌물 수수는 북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을 정도다.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 학교 진학, 직장 배치와 진급, 주택 배정,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이권 행위는 물론 암시장 거래나 무단 이동 또는 교통 법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진다.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간부들이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농작물이나 생필품을 훔쳐 가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권력자들은 또한 국가 재산이나 배급 물자를 유용하기도 하며, 일부는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례금 착복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기타 물질적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비공식 사례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이 착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사회 통제

북한은 사회 통제를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체제동조 이념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 조직생활 통제, 당과 정권 기관을 통한 물리적 통제 등이 포함된다. 한 예로 북한은 능라인민유원지·유경원 등 주민 대상의 대규모 위락·편의 시설을 개관하고, 공연·방송에서 미키마우스 등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등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에 체제 이완 차단과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국분주소장회의 및 전국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 개최 등은 물리적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표 사례다.

### (1) 체제동조 이념

#### 집단주의와 조직 생활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을 전면 구현하려는 사회다. 김정일도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이념은 정치경제 측면에서 ‘군중노선’으로 나타나며, 사회 측면으로는 ‘공산주의적 미풍’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속도전<sup>8</sup>, 3대혁명소조운동 등 군중 노선은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동원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화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적 미풍’의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체제동조 이념을 몸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고아 입양을 장려하고, ‘영예군인(상이군인)’과의 혼인을 권장하며,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도 고향에서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의 가치는 유아 시절부터 시작하여 학교와 직장 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학습되고 장려된다. 북한의 어린이는 생후 이르면 3개월부터 탁아소에 수용되어 집단주의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북한 주민의 생활을 집단화하는 사회 조직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직업총동맹(직총),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민주여성동맹(여맹)을 대표로 들 수 있다.

### 주체사상

북한 사회에서 반복·주입되는 집단주의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 자체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념적 도구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노동계급이며, 노동계급의 당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이다”라는 명제를 주장함으로써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관계로 변질되었다.<sup>9</sup>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루며, 북한 주민은 수령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념적 도구로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에서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심각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으며, “소련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무사하겠는가?”라고 회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킬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는 건설과정 중 한 번도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허구’라고 비판하던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동강 유역의 유적을 전격 ‘발굴’하여 중국엔 ‘대동강 문화’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대동강 유역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아득한 태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며 인류의 초기 문화가 싹튼 유서 깊은 역사의 성지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식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유럽권처럼 붕괴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주체 연호와 태양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체 연호는 김일성이 출생한 해를 기점으로 계산하며,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다. 북한의 개정 헌법(1998년과 2009년)에서는 헌법을 ‘김일성 헌법’, 201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각각 규정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김씨 일가의 소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그 어느 체제(자본주의 체제든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든)보다도 우월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이를 대표한다고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인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 (2) 사회 통제 기관

북한의 사회 통제는 그동안 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행정 기관이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 질서가 급격히 이완되고 선군정치가 실시되면서 군이 직접 사회 통제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사회 통제 체제는 당·정·군의 3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 노동당

북한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자 북한 사회의 전 분야를 조직하는 중추 기관이다. 모든 기관

에는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간다. 일반 주민을 직접 통제하는 당의 하부 조직으로는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있고, 말단에는 당원 5~30명까지 통제하는 당세포가 있다.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 기관과 일반 주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한다.

### 행정기관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 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은 주민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이른바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 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 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또한 김정은 호위, 각급 행정 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 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 동태 감시는 물론 김씨 일가 부자세습 체제 구축에서 야기되는 제반 분야의 저항 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보위부는 중앙에서부터 도·시(구역)·군 및 리·동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상주시키며, 기관·기업소는 물론 군부대의 중대 단위에도 요원을 파견한다.

인민보안부는 공공질서의 유지·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하고, 개개인의 신원조사와 사생활 감시를 한다. 인민보안부는 평양에 본부를 두고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서를 두고 있으며, 말단 조직으로 분주소(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원은 현역 군인이나 제대군인 가운데 출신 성분과 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제6기 최고인민회의(1977.12)에서 주민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신설된 사찰 기관이다. 이 기관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의 준법 분위기를 확립토록 하는 과정에서 당의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생활은 5호담당제,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을 통하여 이중삼중으로 통제되어 왔다. 5호담당제는 북한의 전 가구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총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비행을 감시·규제토록 하는 통제 제도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그 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인민반(도시)과 분조관리제(농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인민반은 통상 20~30가구로 구성되며,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감독한다. 인민반은 월 2회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에서는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 동원, 청소 동원, 공원질서 유지, 안전사고 방지 외에도 목욕과 이발 등 세세한 일상생활까지 통제 대상으로 삼고 토론과 자아비판을 하게 한다.

### 군사기관

김일성이 “총창 위에 사회주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주장했듯이 군사 기관은 당의 지도 아래에서 대남적화 임무를 전담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난과 사회일탈의 증가 등 체제 위기 요인이 증대되자 이른바 ‘선군정치’를 명분으로 군대가 직접 사회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군 요원이 단위 기관을 비롯해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있으며, 각 대학에 군 요원을 상주시켜서 대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는 인민무력부가 직접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처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당국의 위기 의식을 반영하는 조치로,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통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 제5절 북한의 인권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 인권선언(1948)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정치적 권리와 문화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권 후진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로 주민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인위적인 계층 정책으로 성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시민·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실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 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 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생명권의 침해 내용으로는 공개 처형과 탈북자 불법 처형, 불법 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 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 가운데에서는 성분에 의한 적대계층·월남자가족·종교인 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격리 수용 등이 문제가 된다. 자유권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등 침해가 쟁점이다. 참정권은 정치 활동 제한과 투표의 자유 침해 등에서 문제가 된다.

### (1) 공개 처형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 행위는 공개 처형이다. 공개 처형은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도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고 이념·체제 동조가 약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95년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영화계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처형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고, 1997년에도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비서가 공개 처형되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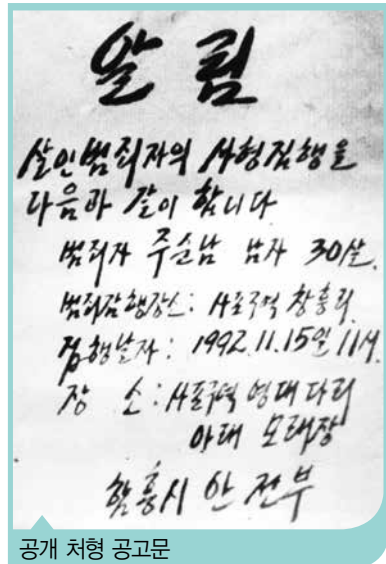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서도 공개 처형은 계속되고 있다.<sup>11</sup> 혁명 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를 중국인에게 팔았다는 죄, 성인용 녹화물을 판매한 죄, 소를 잡아먹었다는 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를 훔쳤다는 죄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마약(속칭 ‘빙두’) 밀수 및 밀매자, 국가 수출 물자 횡령자, 나무 밀수꾼이 공개 장소에서 처형되는 등 공개 처형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 처형은 보통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학교·기업소·농장 등 조직별로 공개 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 처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형식으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여 진행하며, 판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처형된다.

공개 처형은 제도 자체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sup>12</sup> 첫째로 북한의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 처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로 집행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집행은 사형집행 지휘 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 집행 기관이 검사의 참여 아래 집행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 (2) 정치범수용소

이른바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다. 북한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 분자로 몰아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 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 계층을 특정 지역에 집단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의 세습 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과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까지 후계 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하여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과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과 청진 등 5개 지역 수용소에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sup>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 음모자, 유일사상 체제 위반자, 북한 탈출 기도자, 일부 납북 인사들과 이른바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 등으로 구성된다.

수용자들은 일단 특별독재대상 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

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 권리가 박탈당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 연락도 불가능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를 비판하고 사상 개조 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 등 개인 용무를 마치고 작업장에 출근해 7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오전 작업을 오후 1시까지 하고, 오후 작업은 밤 9시까지 계속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 작업과 벌목·개간 등 중노동이며, 철저하게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식량이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대다수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뱀, 개구리, 쥐, 새가 이들의 중요한 영양보충 육류가 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는 또 다른 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이 설치되어서 규율을 어긴 자, 도둑질한 자, 성 행위를 한 자, 감독의 지시 위반자를 수용하고 있다.<sup>14</sup> 수용소는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소들은 광산 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높이 3~4m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곽에는 함정이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경비원이 경비전을 데리고 무단히 순찰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사면될 때까지 무한정 갇히게 된다.

### (3) 기타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북한은 체제 자체가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 사회로서 개인의 자유는 찾아보기 힘들며, 시민·정치적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적시하기 힘들 정도다. 예를 들면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거주 이전은 직장 이동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되며, 직장 배치 자체가 당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 이전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행도 원칙상 시(구역)·군 내에서만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민반장부터 시작하여 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특히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북도 등 국경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며, 평양을 사사로이 여행하기 위한 승인번호는 좀처럼 받을 수 없다.

북한은 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에 따라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거나 기껏해야 과학의 근거가 없는 미신 행위로 간주하면서 종교 활동을 탄압해 왔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종교인이 자취를 감추었다.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등 일부 종교 시설이 1980년대부터 세워졌지만 이는 국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전용 시설일 뿐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시설이 아니다.

참정권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북한도 법으로는 일반·평등·직접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이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포스터

언론의 자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 수단을 통제한다. 북한 주민은 라디오, TV, 녹음기 등 매체를 입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봉인이 뜯겨져 있을 경우 불법으로 외국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범으로 처벌된다.



##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기본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인권 실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1) 생존권 침해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외부 사회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공개리에 외국에 식량 지원을 호소한 1995년이다.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은 일정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식량이 부족함에도 가용 재원을 세습독재 체제 구축,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정치·군사 용도에 집중시키는 한편 식량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용한 식량은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려 왔다. 이 결과 1990년대 중후반에 상당수의 주민이 아사하는 등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02년에 7·1 조치가 내려지면서 배급 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국영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조치에 의해 생활비(임금) 또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시장에서의 식품가격이 40~50배나 상승함으로써 생활비만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11월 말에 단행된 화폐 개혁은 시장 활동으로 축적한 부(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에는 500만 톤에 근접하는 등 북한 전체의 식량 사정은 호전되었지만 분배 대상과 방법 등 분배 체계의 왜곡으

로 인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등 국제 사회는 분배의 불투명성과 지원의 피로도(fatigue) 증가로 인해 대북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상태다. 북한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식량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 (2) 직업 선택의 권리 침해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에서의 직업 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장 배치 때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 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신 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로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이러한 ‘무리배치’는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근거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및 탄광과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및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간부 자제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을 배치받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주민은 노동단련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제도상으로 하루 결근 또는 3일 지각에 하루치 식량을 공제하여 왔지만 배급이 중단되면서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대신 자신의 농사에 전념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무단결근하는 자는 노동단련형을 받는다. 물론 배가 고파서 결근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돈이 있는 경우는 뇌물로 해결하기도 한다.

### (3) 기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들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고 다른 사상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문학·예술 등 문화 활동도 당이 완전히 통제한다. 노동당은 모든 출판물을 직접 검열·통제한다. 대부분의 출판물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화, 권력 강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문학·예술 활동은 노동당의 외곽 단체인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을 통해 통제되는 가운데 작품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내용 묘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검열을 받아야 한다. 한국을 좋게 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 제도는 일부 선택받은 계층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주민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기 어려우며,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해도 약은 스스로 구해야 한다. 병원 자체가 간부 전용 병원과 일반 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병원의 경우도 간부과와 일반과로 구분하여 진찰하도록 되어 있다.

## 3 북한의 인권 문제 대응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원인은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정치 체제로는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경제 체제로는 중앙집권식 계획경제, 사회 체제로는 조직된 통제사회, 문화 체제로는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였고 이 체제는 인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sup>15</sup>고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리식 인권’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크게 문화 상대주의 원칙에 따른 인권의 상대성, 국가 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sup>16</sup> 첫째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 단결된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둘째는 인권의 배타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북한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관은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실제로 북한은 시민·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해 시정할 것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인권위원회(UNCHR)와 총회에서 2003년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꾸준히 채택하여 왔다. 특히 2004년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다.

문타폰(V. Muntarbhorn) 초대 보고관(2004~2010)은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의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여성·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6가지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9년에 제10차 인권 이사회(전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2010년에 임명된 다루스만(M. Darusman)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와 형법 등 제도상의 억압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3년 3월 개최된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고문과 강제 노역 등 반인도 범죄 행위에 관해 포괄 조사 권한이 있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제63차 유엔 총회부터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 노력해 왔다. 2009년 제64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심각하게 조직화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협조, 인권과 기본 자유의 존중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09.12) 때 제기된 권고 사항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2011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고문과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하면서 인권보고관의 현지 조사를 촉구하였다. 2013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표결없이 채택하였다. 유엔은 2014년 3월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안에 따라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체제안보 관점과 현실적 필요성 등 두 가지 기준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체제안보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인권 공세’ 및 ‘인권 소동’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불과하며,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의 일환’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방북 요구를 지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일부분 수용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권 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규약의 이행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오고 있다. 이 국가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인권 압박을 벗어나야 할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 내 인권 보장을 홍보하는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의 인권 압력에 부응하여 법을 개선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대응해 왔다. 1998년에는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8조)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런 규정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선된 규정 자체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요약하면 북한은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체제 특성상 인권이 경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시민·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대표적 인권 후진국이다. 그리고 외부의 관심에도 인권의 상대성과 배타성을 주장하면서 인권 개선 태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Footnote

- 1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p.330~331.
- 2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정영철 등,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pp.162~229.
- 3 평정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 성분과 조직생활 참여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은 문건이다. 유치원 높은반에서 작성되기 시작하며, 조직을 옮길 때마다 따라 간다.
- 4 화선입당은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에 들어가는 일종의 특권이다. 주로 전쟁이나 건설 현장 또는 국제 대회에서 공헌이 큰 사람에게 이 특권이 부여된다.
- 5 입사증이란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다. 북한에서 주택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배정하기 때문에 새 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입사증이 있어야 한다.
- 6 북한, 『김일성저작집 5 (1949.1-1950.6)』(평양: 로동당출판사, 1980).
- 7 성숙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방송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42~44.
- 8 속도전은 1974년에 채택한 사회주의 노력경쟁 운동을 말한다. 1950년대 ‘평양속도’, 1960년대 ‘비날론 속도’ 등 속도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100일 전투’, ‘200일 전투’, ‘1980년대 속도 창조운동’, ‘1990년대 속도창조 운동’,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의 형태로 전개 되었다. 최근에도 ‘마식령 속도’를 언급하는 등 여전히 속도전을 중시하고 있다. 속도전의 중심 내용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고취,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낡은 사상 배격, 전력 전·섬멸전 적용, 기술혁신 운동과의 결부 등이다.
- 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pp.369~393.
- 10 김병로,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57~58.
- 1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67~91.
- 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70~71.
- 1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158

- 14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상권)』, 시대정신, 2003, pp.176~189.
- 15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평양), 『조선말대사전』, 1992.
- 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49~53.



## 찾아보기

### ㄱ

- 가두여성 304
- 가을 전투 241
- 가정혁명화 287
- 가족법 324
- 감량배급 204
- 감정제대 144
- 강반석혁명학원 244
- 강성국가 44, 74, 218
- 강성대국 20, 23, 32, 35, 53, 128, 243, 262, 264
- 강성대국론 39, 74
- 개성공업지구 185, 221
- 개성공업지구법 221
- 개성신문 274
- 개성텔레비전 278
- 개인부업경리 178
- 건설신문 274
- 건전한 안보관 11
- 결프전 137
- 검찰동일체적 체제 69
- 검찰소 64
- 결사옹위 정신 293
- 결산분배 305
- 경제개발구 185, 223, 225, 226
- 경제개발구법 185, 223
-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23, 66, 97, 75, 92, 189, 190, 212, 219, 225
-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의 위원회 의정서 119
- 경제의 군사화 131
- 경제특구 185
- 경축기념일 312
- 계획경제 14, 16
- 계획경제 체제 14
- 계획의 세부화 181
- 계획의 일원화 180
- 계획지표 214
- 고난의 행군 32, 41, 74, 195, 264
- 고등교육법 233, 244
- 고등교육성 235
- 공개 처형 332
- 공군절 128
- 공산주의 언론 272
- 공산주의 인간형 233, 240
- 과학교육부 234
-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197
-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113
- 과학적 사회주의 292
- 관리소 333
- 관병일치 73, 146
- 광폭정치 268
- 교도대 130, 153
- 교육문화텔레비전 278
- 교육법 232, 233
- 교육신문 274
- 교육위원회 234, 235, 242
- 교통신문 274
- 구상무역 106, 201
- 9·11 테러 99, 155
- 9·19 공동성명 85, 96, 101, 102, 155

국가경제개발위원회 223  
 국가경제개발총국 223  
 국가계획위원회 17, 180, 181  
 국가급 경제특구 223  
 국가안전보위부 69, 144, 286, 325, 328, 329, 336  
 국가영화 위원회 267  
 국가적 명절 312  
 국가주석 34, 48, 49, 64, 68, 88  
 국공내전 89  
 국교정상화 회담 94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 188  
 국방위원회 31, 35, 42, 47, 48, 50, 63, 64, 65, 66, 130, 138, 139  
 국정 가격 307  
 국제근로자절 312  
 국제기념일 312, 314  
 국제부녀절 312  
 국제원자력기구(IAEA) 98  
 국제인권규약 341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143  
 군민일치 73  
 군 방송위원회 277  
 군사·경제 병진 노선 183, 186, 191, 199, 212  
 군사선행 원칙 42  
 군사칭호 144  
 군산복합형 187  
 군수동원지도국 153  
 군인혁명정신 41  
 군정배합 73  
 군중 노선 51  
 군중동원 노선 30  
 군 중시 사상 41  
 군중예술론 259, 260  
 군축 및 평화연구소 88  
 금강산관광지구 185, 221  
 금강산관광지구법 221  
 금성친위부대 쟁취운동 143  
 금성학원 243  
 금창리 지하핵 의혹 시설 94  
 긍정 감화 교육 250  
 기간공업 3개년 계획 197  
 기간공업과 농업 3년 연속계획 205  
 기계화군단 150  
 기념비 미술 266  
 기술 및 경제 협조에 관한 협정 113  
 김매기 전투 241  
 김일성-김정일주의 15, 33, 34, 35, 39, 43, 44, 54, 74, 75, 77  
 김일성-김정일주의화 44, 77  
 김일성 민족 328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62, 63, 146, 253, 275, 276, 298, 299, 301, 327  
 김일성 유일 체제 31, 35, 37  
 김일성종합대학 239, 242, 243  
 김일성 헌법 34, 328  
 김정숙사범대학 255  
 김정일 애국주의 44, 75  
 김정일예술학원 243  
 김책공업종합대학 243  
 김형직사범대학 255

## L

나선특구 개발 계획 222  
 나진·선봉 경제특구 220

남북국방장관회담 161  
 남북기본합의서 169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161, 162  
 남북정상회담 161  
 남조선노동당 52  
 남조선신민당 52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29  
 남조선 혁명 129, 258  
 남조선 혁명론 167  
 남포중앙체육학원 243  
 남포혁명학원 245  
 내각전원회의 44  
 노농적위군 130, 153  
 노동계급화 234, 287  
 노동단련대 332  
 노동단련형 337  
 노동당 46, 47, 53, 64, 65, 94, 299, 302, 304  
 노동당 규약 15, 34, 36, 39, 40, 42, 44, 48, 49, 50, 62, 79, 128  
 노동당 중앙위원회 30, 33, 47, 92, 139, 140, 186, 234, 274  
 노동당 총비서 34, 48, 72  
 노동 미사일 157  
 노동신문 40, 79, 219, 274, 276, 278  
 녹화근위대 251  
 농가생산책임제 206  
 농민시장 212, 213  
 농업근로자동맹 299, 300, 302, 303, 327  
 농축우라눔 해개발 155  
 농태기 311

## C

단군릉 327  
 단군문학 262  
 달리기장사 213  
 당 대표자회 31, 32, 33, 35, 43, 44, 48, 50, 56, 57, 59, 76, 77, 78  
 당 분조 145  
 당 비서국 58, 59  
 당 세포 60, 145, 302  
 당 세포비서 55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32, 44, 79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44, 79  
 당 정치국 58, 59  
 당 중앙군사위원회 32, 57, 58, 59, 62, 76, 140  
 당 중앙위원회 56, 58, 59, 60, 78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58  
 대기숙박업 324  
 대량살상무기 99, 134, 137, 143, 154, 158, 168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 157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102, 155, 156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 105, 112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106, 109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105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 106  
 대안의 사업체계 182  
 대약진운동 184  
 대열훈련 148  
 대외문화연락위원회 88, 90  
 대적성국 교역법 156

대청해전 168  
대포동 2호 157  
데탕트 93  
독립국가연합(CIS) 113  
돈주 214  
동시행동 원칙 100  
되거리장사 213  
듀브나 핵 연구소 154  
등짐장사 213  
땀기발 306

## ㄹ

러시아 정교회 318

## ㄴ

마르크스-레닌주의 15, 31, 32, 35, 36, 46,  
54, 84, 273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49  
만경대혁명학원 243, 244  
만년화 267  
만수대 예술단 264  
만수대텔레비죤 278  
매대장사 213  
메뚜기 장사꾼 216  
모기장식 개방 220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 252  
목적주의 문예관 256  
무력통일 노선 162  
무리배치 337  
무상 의무교육 231  
문예 이론 258

문학예술총동맹 260, 338  
문화 상대주의 339  
문화주택 309  
물량지표 181, 214  
미·북 제네바 합의 98, 154  
미·일 동맹 112  
민속명절 312, 314  
민족공동체 11  
민족보위국 127  
민족보위성 141  
민족화해협의회 63  
민주기지 노선 47  
민주여성동맹 287, 299, 300, 303, 327  
민주조선 274, 275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46, 55

## ㄷ

반동 10원칙 90  
반동회의 90  
반사회주의적 요소 330  
반제국주의 84  
반제민전 277  
반제·반미 공동전선 118  
반테러 공동성명 95  
반토굴형 숙소 148  
방사포 135  
방사화학실험실 156  
배합전략 136  
백두산 3대 장군 248, 262, 263, 269  
백두혈통 266  
법무생활지도위원회 329  
베를린 합의 94, 99

벼랑 끝 전술 85, 95, 98  
병종별 기동훈련 148  
보위사령부 130, 139  
보천보 전자악단 264  
보통 교육 240  
보통교육법 233, 244  
보통교육성 235  
봄 전투 241  
봉수교회 318  
부서제도 145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114, 115  
북·러 공동선언 114  
북·러 모스크바 선언 114  
북·러 무역경제 113  
북방한계선 163, 168  
북조선 5도 행정국 28  
북조선공산당 28, 51, 52  
북조선노동당 28, 52  
북조선인민위원회 28, 127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8, 242, 275, 287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 240  
북·중 경제기술 협조 협정 95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109  
북·중 우호 협력 조약 161  
북·중 정상회담 108  
북청농업개발구 223  
북한이탈주민 180, 202, 288, 314  
북한인권 결의안 339, 340  
북한인권조사위원회 340  
북한인권특별보고관 339, 340  
북한 체제 13, 14  
북한 형법 320

분조관리제 205, 206, 330  
분초급당 위원회 60  
불가침부속합의서 169  
붉은기 사상 39, 41  
붉은청년근위대 130, 153, 253  
비교우위 발전론 184  
비교우위 발전 전략 226  
비대칭 전력 168  
비동맹국 외교 89, 90, 92, 118, 119  
비동맹회의 92  
빈곤의 함정 196

## 人

4·6 담화 43  
4대 경제특구 221, 225  
4대 군사노선 60, 130, 132, 133, 134, 140  
4대 제일주의 43  
4대 특구 220  
4세대 전쟁 137  
사상생활 지도 55  
사회민주당 63  
사회적 소비 207  
사회적 소유 178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6, 32, 38, 54, 72, 292  
사회주의 계획경제 20, 17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32, 233, 237, 248, 250  
사회주의 노동법 287  
사회주의 대가정 18, 19, 292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215  
사회주의 우호 무역 195, 208  
사회주의적 발전법칙 185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258, 259  
 사회주의적 소유 16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177  
 사회주의 체제 14, 236, 237, 240, 256, 289, 327, 328  
 사회주의 헌법 15, 31, 47, 48, 64, 68, 233  
 산업연관 관계 193, 197, 212, 218  
 3대 세습 체제 32, 35, 50, 72, 75, 189, 197, 294  
 3대 재산권 180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40, 287  
 3대혁명 붉은기 중대 쟁취운동 143  
 3대혁명소조 183  
 3대혁명소조운동 71, 326  
 3대혁명 소조원 262  
 3대혁명소조 활동 333  
 3위 1체 체제 260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201  
 새날혁명학원 245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225, 226  
 생물무기 158  
 생활총화 19, 55, 303, 304, 305, 330  
 서정 가요 263  
 선군경제 건설 노선 188, 190, 212, 218  
 선군사상 15, 35, 42, 43  
 선군영도 41  
 선군절 314  
 선군정치 32, 35, 39, 40, 41, 43, 49, 50, 63, 73, 78, 129, 130, 264, 268, 330  
 선군정치론 39, 73  
 선군혁명 노선 188  
 선군혁명문학 262  
 선군혁명 문학예술 257  
 선군혁명 문학예술론 268  
 선군후로 73  
 선전 가요 263  
 선전선동부 55, 274, 276, 277  
 선제 기습 공격 134  
 세계청년학생축전 193, 308  
 세포조직 51  
 소년단 253, 298, 299, 300  
 소년단 위원회 301  
 소련최고회의 66  
 소련파 29, 30  
 소비에트화 27, 52  
 소조활동 253  
 속도전 326  
 속도전 이론 259  
 속도전 청년돌격대 130  
 속도창조운동 72  
 속전속결 전략 134  
 송가 263  
 수령결사옹위정신 327  
 수령 독재 체제 15, 34, 71  
 수령론 32, 38, 40, 54, 71  
 수령 절대주의 31, 47  
 수령중심주의 295  
 수령형상문학 262  
 수요강연회 303  
 수입물자교류시장 215  
 숨은 영웅 형상문학 257  
 스커드 미사일 135  
 스탈린 격하운동 30, 36  
 스탈린주의 14, 35  
 스탈린 헌법 67

습격방어 훈련 148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114  
시장사회주의 체제 177  
시장화 현상 212, 214, 218, 219  
식량 전매제 18  
신계사 318  
신문이론 273  
신사고 271  
신의주 특별행정구 185, 221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221  
신천박물관 319  
실리사회주의 노선 215  
실리 외교 92  
심부화 현상 202  
10·3 합의 85, 102  
10·4 선언 341  
10년복무연한제 142  
10월 8일 모범교수자 252  
12년제 의무교육 66, 233, 237, 238, 240, 244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19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116  
아웅산 폭탄테러 163  
IAEA 핵 안전 협정 99  
악의 축 99  
애국미 306  
액상지표 181  
양극 체제 93  
여퇴정대 128  
어린이 교육보육교양법 237  
업간체조 252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 197, 203  
여성동맹 304  
연안파 29, 30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1, 112, 163, 168  
연평해전 163  
연합중앙위원회 52  
영변 5MWe 원자로 102, 156  
영생주의론 259  
영예군인 326  
영통사 318  
영화연감 267  
영화예술론 267  
예술소조 260  
오중흙 제7연대 쟁취운동 143  
5·16 군사정변 37, 91  
5·24 대북조치 171  
5개년 경제개발계획 222  
5대 혁명 가극 257  
5대 혁명 연극 257  
5장 6기 310  
5호담당제 330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32, 35, 37  
온성섬 관광개발구 223  
와우도 수출가공구 223  
왕재산 경음악단 264  
우라늄 농축시설 105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105  
우리사상 제일주의 43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206, 219, 225  
우리식 사회주의 38, 39, 72, 74, 293, 327, 328, 339  
우익 민족주의 진영 29  
원산청년발전소 203

위장평화 공세 163, 164  
 유선방송중계소 277  
 유엔 결의안 제1874호 156  
 유엔 식량농업기구 205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19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109  
 유엔 연례핵군축회의 155  
 유엔 인권선언 331  
 유엔 인권위원회 117  
 유일 관리제 182  
 유일 독재 체제 13  
 유일 사상 체계 34, 48  
 유일 영도 체계 34, 37, 182  
 유일 지도 사상 57  
 유훈통치 16, 32, 33, 40, 49, 77, 95  
 6·15 공동선언 341  
 6·25 전쟁 29, 30, 47, 89, 98, 160, 162, 165,  
 166, 168, 191, 265  
 6개년 계획 191  
 6개월 농사제 205  
 6자회담 85, 86, 96, 100, 108, 112, 116, 117,  
 155, 160  
 이라크전 137  
 이원적 선군경제건설 전략 197  
 2·13 합의 85, 102, 111, 119, 156  
 2·29 합의 105, 109  
 인덕정치 268  
 인민경제계획법 182  
 인민군 협주단 264  
 인민무력부 63, 127, 139, 141, 330  
 인민무력성 141  
 인민반 304, 330  
 인민반장 298, 334

인민보안부 130, 153, 286, 287, 325, 328,  
 329  
 인민생활공채 208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72  
 인민위원회 28, 242, 334  
 인민학교 236  
 인민회의 28  
 일당 독재 체제 15  
 일반 공급 대상자 307  
 일·북 국장급 회담 112  
 일·북 평양선언 110  
 일용분공장 187  
 일용직장 187  
 1인 독재 체제 78, 79, 146  
 1인 지배 체제 72  
 입사증 309

## ㄸ

자강일보 274  
 자력갱생 212  
 자력갱생론 184  
 자립경제 노선 199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92, 183, 184  
 자아비판 297  
 자원절약형 도상 훈련 151  
 자주 외교 89, 91  
 자주포 135  
 잠수정 침투 사건 163  
 장거리 미사일 발사 86, 104, 105, 109, 117,  
 119, 163  
 장마당 179, 213, 306, 307  
 장충성당 318



재판소 64  
 전국인민대표대회 66  
 전면핵심협금지조약 155  
 전민군사복무제 142  
 전방위 외교 95  
 전위대 조직 53  
 전체주의 체제 18, 31, 33  
 전형화 이론 259  
 전·후방 동시 공격 134  
 정무원 48, 64, 68  
 정책사원 319  
 정전협정 89, 90, 98, 169, 266  
 정치국 상무위원 58  
 정치국 상무위원회 58, 59  
 정치범수용소 333, 334  
 정치사상 교육 231, 248, 249  
 정치지도원 141, 145  
 제1중학교 243  
 제1차 7개년 계획 191, 242  
 제1차 핵실험 85, 102, 107, 111  
 제2경제 187  
 제2경제위원회 187  
 제2차 7개년 계획 191, 242  
 제2차 연평해전 168  
 제2차 핵실험 85, 86, 104, 108, 112, 115, 117, 119, 156, 221  
 제3차 7개년 계획 93, 191, 193  
 제3차 핵실험 86, 106, 109, 115, 119, 156, 222, 225  
 제네바 합의 9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3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95, 113, 114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159  
 조선 가요 263  
 조선경제개발협회 223  
 조선공산당 27, 51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51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27, 51  
 조선그리스도교연맹 318  
 조선농업근로자동맹 63  
 조선말대사전 312  
 조선민족제일주의 292, 327  
 조선민주여성동맹 63  
 조선불교도연맹 318  
 조선신민당 52  
 조선신보 21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63, 87, 88  
 조선의용군 165  
 조선종교인협의회(KCR) 318, 319  
 조선중앙방송 277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77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276  
 조선중앙연감 179, 267, 316  
 조선중앙텔레비죤 278  
 조선중앙통신 275, 278  
 조선직업총동맹 63, 88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318  
 조선천주교인협회 318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257, 258  
 조·소 군사원조 협정 113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91, 95, 113, 159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91, 159  
 조직지도부 55, 59, 71

종자론 74, 259  
 종파사건 29  
 종합시장 17, 18, 179, 215, 216  
 주체농법 204  
 주체문예이론 259, 262  
 주체사상 15, 30, 31, 32, 35, 36, 38, 39, 42, 71, 73, 237, 270, 276, 278, 292, 327  
 주체사회주의 34  
 주체연호 313  
 주체정치경제학 248  
 주체철학 248  
 주탄종유 202  
 준군사부대 153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183, 185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 186, 188, 199  
 중·소 국경 분쟁 91  
 중앙 공급 대상자 307  
 중앙군사위원회 60, 139  
 중앙인민위원회 31, 32, 49, 64, 68, 9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7, 18  
 중앙확대집행위원회 27  
 G8 정상회담 100  
 지방인민재판소 69  
 지배인 유일 관리제 182  
 직관 교육 250  
 직업동맹(직맹) 303  
 직업총동맹 299, 300, 302, 303, 327  
 직통생 242, 298  
 진영 외교 89  
 집단적 경제관리 방식 182  
 집단주의 294, 299  
 집단주의 원칙 18  
 집단주의적 영웅주의 261

집단주의 정신 270  
 집단체조 265  
 집체훈련 148  
 쫓대바지 254

## ㄸ

차판장사 213  
 창지투(창춘·지란·투먼) 개발계획 108  
 채무 불이행 국가 93  
 천도교청우당 63  
 천리마운동 30, 287, 326  
 천안함 폭침 사건 86, 108, 112, 117, 163, 168  
 철도신문 274  
 철학사전 317  
 청년동맹 251, 254, 300, 301, 302  
 청년동맹 위원회 302  
 청년전위 274, 275, 276  
 청산리방법 30, 182, 326  
 청산리정신 30  
 초급당 위원회 60  
 초모대상자 142  
 총대가정론 73  
 총대철학 42  
 총정치국 62, 63, 139, 140  
 총참모부 139, 141  
 총폭탄 정신 293, 327  
 최고검찰소 69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67  
 최고인민회의 28, 29, 31, 33, 46, 48, 49, 50, 64, 65, 66, 69, 77, 88, 93, 24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8, 49, 65, 66, 67, 69, 87, 88, 275

최고재판소 69  
추모문학 262  
칠골교회 318  
7:1 조치 18, 189, 197, 206, 208, 215, 219,  
221, 225

## E

태양민족문학 262  
태양절 313, 328  
토지 개혁 256, 289  
토지정리사업 205  
통속화 이론 259  
통일 대통로 136  
통일전선부 276, 277  
통일전선전술 163  
통일지상주의 11  
특별검찰소 69  
특별독재대상 구역 333  
특별재판소 69

## II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67  
88특별여단 27  
평성시장 216  
평양방송 277, 278  
평양신문 274  
평양외국어대학 249  
평양외국어학원 243, 244  
평양유선방송 277  
평양음악학원 243  
평양학생소년궁전 249

평정서 302  
평화 체제 12  
평화협정 93, 98, 169  
폐연료봉 재처리 104, 105  
포전담당책임제 18, 205, 206, 219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84  
프롤레타리아 독재 28, 46, 272

## ㅎ

학생소년궁전 251  
학생소년단 251  
학생소년회관 25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155  
한반도 종단철도(TKR) 114  
한·중 수교 95  
함북일보 274  
합영법 93, 193  
항공절 128  
항일혁명미술 266  
해군군관학교 128  
해군절 128  
해주혁명학원 245  
핵비확산조약(NPT) 98, 155  
핵실험 22, 95, 163  
핵 연료봉 제조 공장 102, 156  
핵 재처리 시설 102  
행군훈련 148  
혁명 가요 263  
혁명사적지 251  
혁명연극 270  
혁명적 낙관주의 233, 261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 47

혁명적 수령관 32, 37, 38

혁명적 수령론 32, 38

혁명전적지 251

혁명화 234

협동적 소유 178, 179

형사소송법 333

호위사령부 139

화면반주 음악실 311

화생무기 158

화선입당 302

화전양면전략 164, 166

화폐 개혁 18, 205, 208, 217, 306, 336

화학무기 158

확산방지구상 100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222

황색바람 254

화천발전소 201, 203

##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각 연도

- \_\_\_\_\_, 『2000 북한개요』, 1999.
- \_\_\_\_\_, 『2004 북한개요』, 2003.
- \_\_\_\_\_,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비교』, 2006.
- \_\_\_\_\_, 『남북한 교육 비교』, 2006.
- \_\_\_\_\_, 『북한의 대남전략』, 2010.
- \_\_\_\_\_,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1.
- \_\_\_\_\_,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11.
- \_\_\_\_\_,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2011.
- \_\_\_\_\_,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2.
- \_\_\_\_\_,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2012.
- \_\_\_\_\_, 『북한 지식 사전』, 2013.
- \_\_\_\_\_, 『북한의 양면성』, 2013.
- \_\_\_\_\_,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2013.
- \_\_\_\_\_,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2014.
- \_\_\_\_\_,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4.
- \_\_\_\_\_, 『북한권력기구도』, 201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 연도

- \_\_\_\_\_, 『월간북한동향』, 각 연도
- \_\_\_\_\_, 『통일정책연구』, 각 연도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각 연도
- \_\_\_\_\_,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 \_\_\_\_\_,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007.
- \_\_\_\_\_, 『북핵문제의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2009.
- \_\_\_\_\_, 『2009 북한개요』, 2009.
- \_\_\_\_\_, 『북한주민의 삶의 질 : 실태와 인식』, 2011.

\_\_\_\_\_,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2.

\_\_\_\_\_,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_\_\_\_\_, 『201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201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각 연도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계간), 각 연도

\_\_\_\_\_, 『2012 국제정세전망』, 2012.

**국방부**, 『국방백서』, 격 연도(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2008.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계간), 각 연도

\_\_\_\_\_,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군』, 2008.

\_\_\_\_\_,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2008.

\_\_\_\_\_,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2009.

\_\_\_\_\_,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1.

**국방대학교**, 『정보시대 전쟁의 이해』, 2004.

\_\_\_\_\_, 『2012년도 안보정세 전망』, 2011.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각 연도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 연도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년~2002년』, 2003.

\_\_\_\_\_, 『북한총람, 2003년~2010년』, 2011.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 연도

2014

# 북한 이해

---

**발행처**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발행일** 2014년 8월

**디자인·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비매품





